

第288回國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附錄)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3月30日(火)

場 所 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성윤환 위원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사업 수행의 결과평가 통해 구체적인 대안 내놓아야

□현황

○국무총리실에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는 2008년 12월부터 4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118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지만, 논의된 안건의 구체적인 결과와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2009년부터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금년에 10만 5000여 명을 선발하였으나, 시작한 지 3주도 안되어 선발자의 15%인 1만 5000여 명이 중도 포기하였음.

○일자리창출을 위해 구성된 TF에서 작년부터 시행되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TF의 활동을 촉구함.

□문제점 및 주요 질의

○2009년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시행 첫째, 33만 9000명 모집에 24%인 8만 2000여 명이 중도탈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음. 하지만 금년 또한 10만 5000여 명을 선발하였으나 시작한 지 3주도 안되어 선발자의 15%인 1만 5000여 명이 중도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작년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시행정의 문제, 노동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한시적인 임시방편이라는 비판, 상품권의 사용 및 유통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에서 본 사업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과 관리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는지 의문이 듦.

□질의자료

○국무차장은 희망근로사업 첫째 24%에 달하는 인원이 중도탈락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희망근로 사업의 참여 인원 중 4분의 1이나 되는 인원이 왜 중도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 첫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볼 때 시행 3주만에 14%나 되는 인원이 중도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서는 희망근로 지원자를 선발할 때 예비후보자들을 뽑아 왔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곧 바로 충원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의 안일한 대처를 볼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의지보다는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이라고밖에는 판단이 안됩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희망근로 포기자들이 속출하는 이유로 작년보다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급여가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년 시행 이후에 희망근로사업 지원자의 연령계층 분류 및 사업수행분야와 노동강도에 대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말 그대로 희망근로사업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수요조사와 수행가능 연령대를

체크 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TF 팀에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동부)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고용지원 시급히 서둘러야

□현황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로써 2010년 통계기준 약 712만 명이며, 베이비 붐 세대 총 712만 명 중 311만 명이 임금근로자로 추정

○베이비 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이 금년 정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올해 약 40만 명을 시작으로 향후 9년간 지속적인 퇴직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국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사회가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으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양산될 수 있음.

□문제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72~73%로 예측되지만, 55세 정년으로 인해 55~64세의 인구를 제외한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7~62% 수준으로 하향되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을 축소시키는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인구로 유입되는 규모는 547명으로 은퇴자에 비해 165만 명이 적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 부족액은 7조 7,210억 원으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되고 있음.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베이비붐세대는 노후 준비 소홀로 인해 그동안 축적했던 자산(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질의자료

○노동부 업무자료를 보면,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고용지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 유도, 고용연장 방안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 시작 등 베이비 붐 세대가 미치는 사회적인 심각성에 대한 해결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관은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져올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적 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파악하고 계십니까?

○베이비 붐 세대의 고용지원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단순현상이 아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축소, 부동산 시장의 가격하락,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는 물론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예산 지출로 인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임을 인지하여 노동부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고용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수행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인턴 사업, 취지도 의지도 실적도 모두 실종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인턴 사업의 기본 취지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에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장차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의 행정인턴 제도는 그러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실적도 모두 사라진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꼴임.

○이미 지난해부터 행정인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단순업무 수행과 기간 만료 후 민간 부문과의 취업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더욱이 2009년에는 계약기간 11개월 동안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고 98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5개월의 기간 동안 주당 30시간을 근무하고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음.

○현재의 행정인턴 제도는 더욱 짧아진 계약기간, 낮은 급여,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업무의 수행 등으로 인해 이미 청년층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행정인턴을 모집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예가 속출하고 있고, 오히려 인턴모집과 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음.

☞ 행안부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은 상반기 계획 대비 86.6%, 지방자치단체는 87.7%밖에 채용하지 못했다고 나타나 있음.

□질의요지

○올해 행정인턴의 계약기간 및 급여수준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1,574억 원이던 관련 예산이 올해 511억 원으로, 1,000억 이상 감소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까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행정인턴제도가 취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와 낮은 급여로 인하여 청년층에게 외면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청년층은 행정인턴제도에 대해 시간낭비만 할 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정책목표 설정부터 잘못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행정인턴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무책임한 실업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인턴들을 위한 사전 적정업무 발굴과 우량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서 수습과정을 짧게 해 직무분야별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업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행정인턴제도는 현장에서 수차례 추가모집을 하여도 모집정원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도 달성할 수 없고, 낮은 급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젊은이들에게 장래에 대한 희망조차 줄 수 없다면, 단순히 몇 명을 채용했다느니 하는 숫자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제도자체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성가족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09년 기준 1,042만 명.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

○지난 7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여성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28만 6000명이 증가한 1,042만 명. 이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8000명의 2배에 달함.

○비경제활동의 사유를 보면 육아/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난 29일 노동부가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63.7%)’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질의 : 백희영 장관) 경제위기와 고용침체

의 여파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여파를 주고 있음.

09년 조사결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육아부담으로 나타남. 육아부담의 해소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큰 해결책이 될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가?

☞ (질의 : 백희영 장관)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여성취업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한국의 조직문화에서 그것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확산 및 정착시킬 필요가 절실하므로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김용구 위원

(국무총리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하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국가 제일의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질의1) 특히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가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예산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별 일자리창출 실적 및 평가 자료가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정책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 (질의2)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 통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부 내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기재부입니까? 아니면 노동부입니까?

☞ (질의3)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별, 지자체별 일자리창출 계획대비 목표달성 정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목표 미달의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질의4)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 통합관리체제 구축

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내투자 1%가 늘면 3만 5,000개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외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 (질의5)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각종 규제완화 내용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는 무엇입니까?

☞ (질의6)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규제 개혁지침과 지침의 추진성과는 무엇입니까?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답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종사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급증하는데 중소기업은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실업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대기업과 가진 자를 위한 경제정책, 4대강 등 건설공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2009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했고 최종 조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삭감되었습니다.

☞ (질의7) 이렇게 중소기업청 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 정부가 말하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질의8)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지 않고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중소기업에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현재 대기업은 현금 쌓기에 바쁘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요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무차별적 문어발식 진출 등 횡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경영행태를 비판할 정도로 그 정도는 심각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말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정책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 (질의9)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 (질의10) 또 중·대기업의 상생강화와 중소기업의 생존 영역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무차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노동부)

노동부장관에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4.9%, 10.1%로 작년 12월에 비해 각각 1.4%, 2.5%나 상승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또,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7년부터 42.6%→41.6%→40.5%로 매년 급락하고 전체 고용률 58.6%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미국 51.2%, 캐나다 59.6%, 호주 64.3% 등에 비해 매우 낮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층의 증가로 체감실업은 지표상의 실업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 (질의1) 장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추진해 왔고 동 법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2009.10.9부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질의2)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효기간 내 사업별 청년실업해소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는 했습니까? 5년 동안 추진한 성과는 어떠합니까?

☞ (질의3) 장관, 동 법의 유효기간 내 또는 만료 이후 정책평가, 성과분석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의4)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한시법인 특별법까지 만들어 5년 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성과분석이나 정책평가가 없다면 그 연장선상에

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09.10.9)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질의5) 동법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조세감면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의6) 또한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비용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연도별 지원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의7)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8.2.29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폐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질의8)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동법을 개정하여 시한 연장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지난 1. 26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① 두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② 폐지된 위원회를 부활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③ 향후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또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방편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겠지만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 (질의9) 청년은 만성실업, 중고령은 고용불안, 생계형 자영업자는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퇴출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우려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여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부는 자치단체장(기초, 광역) 후보공천 시 일자리 목표를 공약하도록 하고 임기 중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 (질의10) 대통령도 후보시절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자체장이 공약을 하고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시성 정책 아닙니까?

☞ (질의11) 동 제도의 도입의 실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께 물겠습니다.

2010년 3월4일 제3차고용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중앙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1)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지자체에 지원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집행내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질의2) 정부는 2010 고용회복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를 통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또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방편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겠지만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 (질의3) 희망근로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난 2월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4.9%, 10.1%로 작년 12월에 비해 각각 1.4%, 2.5%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실업자 수는 4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실업대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급증하고 노동인력의 미스매치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질의4) 지자체별 청년실업 현황과 지자체의 노동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부처 간 공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성식 위원

(국무총리실)

1.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지원을 위해 구성된 TF팀 중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의 구성 및 회의내역, 안건 및 첨부서류 사본, 회의결과 내역

2. 부처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기적 점검·평가 후 개선·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부처별 자체점검, 각 TF별 점검, 총리실 주관 종합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은? 또한 각 단계별 점검항목 및 총리실의 종합평가 기준, 각 단계별 점검결과와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은? (업무보고 p. 2)

3. 재원 배분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배분방식의 적정성의 기준은? 또한 고용창출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대상사업의 범위 및 선정 기준은? 고

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의미인지? 2010년 예산사업을 기준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하반기별 예산배분계획 및 고용창출 효과에 의해 변경가능한 예산배분 계획은?(업무보고 p. 3)

4. 현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현황 및 재분류 세부내역 및 분류기준은?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시 유사·중복사업의 기준과 소관부처의 결정 기준은?(업무보고 p. 3)

5.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의 구체적 내역은?(업무보고 p. 3)

6. 사회적 기업 인증범위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방안(현행과 개선방안 비교)은?(업무보고 p. 3)

7. 규제개혁 대상 1,071개의 목록과 규제개혁 대상선정 기준과 사유, 주요 내용 및 규제개혁 방안은?(업무보고 p. 5)

(행정안전부)

1. 고용지원 등과 관련된 지자체의 지역센터 등의 설치현황과 업무분장, 현재 추진 중인 역할은? 또한 노동부와 중기청의 지역센터 등의 설치현황 및 업무분장 내용, 협력관계는?

2. 희망근로사업의 2009년 광역 시도별 8개 분야 146개 사업별 고용실적 및 2010년 현재 분야·사업별 고용실적?(업무보고 p. 3)

3.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에 대한 희망근로자 취업지원 절차 및 임금 등 고용을 위한 제반조건, 현재까지 실적 및 임금 등 제반조건은?(업무보고 p. 3)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지역 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는?

4.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원 중 지자체 경상경비 및 축제예산 절감분의 조성내역은? 이에 따른 지자체의 고용계획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은?(업무보고 p. 4)

5. 행정인턴 채용 중 부처별 취약계층 우선선발 현황은? 부처별·학력별 선발현황? 2009년의 행정인턴의 직무내용과 이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사항은? 이를 토대로 개선된 2010년 행정인턴의 직무내용은?(업무보고 p. 6)

6. 일자리 관련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매칭되는 국비 지원은 별도 기재)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 2009년·2010년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7.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지장자치단체와 그 재원의 조성내역 및 2010년 사업계획,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한 지자체조합 현황 및 위탁기관 현황은?

8.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의 지자체별 구성 현황 및 업무분장,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다른 일자리 관련 지역거점 센터와의 업무분장 및 협력체계는? 일자리 성과창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한데, 이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내역은?(업무보고 p. 10)

9.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 내역, 안건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10. 2010년 지자체별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현재까지 집행내역,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추경의 재원 및 편성계획내역은?(업무보고 p. 10)

(보건복지부)

1. 복지서비스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현황 및 향후 전망,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요국과 비교해 복지서비스업 세부분야 중 우리나라가 취약한 직종과 원인,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업무보고 p. 7)

2.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대책 중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 활성화 및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은?

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지역 선정기준, 규모 등 세부사업내역은?

4. 체계적인 자활근로를 확대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및 2010년 예산편성 현황은? 소규모 자활공동체의 기업화·규모화를 위한 복지부의 지원내역 및 부처 간 협의사항, 협의실적은? 자활공동체에 위탁가능한 정부지원사업 내역과 소관부처, 현재까지 부처 간 협의사항 및 협의실적은? 2010년 현재 자활공동체의 현황은?(업무보고 p. 13)

5. 중증장애인 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하겠다는데, 일자리 제공업체 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내역(업체 또는 장애인)은? 현재까지 실적은?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의 세부내역은?(업무보고 p. 13)

6. 청년 경력형성 일자리를 제공할하겠다는데, 청년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내역과 업무분장, 관련 지원단체/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는? 청년벤처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데, 인센티브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은?(업무보고 p. 13)

7.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 마케팅 지원 내역과 2010년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은? 한국 의료대표상품 개발계획 및 현재까지 실적

은? 2009년까지 해외환자의 국가별 유치내역과 2010년 목표 환자 수의 근거는?(업무보고 p. 15)

8.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한 제도의 활용현황과 성과평가, 향후 개선방안은? 이에 대한 주요국(OECD국가를 중심으로)의 사례와 함께 그 효과는? 영아(0~1세아)를 가진 남성에게 대한 일정기간(1~2개월) 강제 유급휴직제도 도입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저출산대책으로서의 파급효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기업 및 동료의 인식개선, 재정 및 기업의 부담, 현재의 보육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기 바람. 또한 이와 같은 남성 유급휴직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는?

9. 복지 관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해 복지 관련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노동부는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해 추진한 정책수단을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기 바람.

(노동부)

1. 고용지원 등과 관련된 지역센터 등의 설치현황과 업무분장, 현재 추진 중인 역할은? 또한 지자체와 중기청의 지역센터 등의 설치현황 및 업무분장, 협력체계 내용은?

2.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정권별(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기본원칙 및 방향, 목표, 각 정권에서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개수와 이에 맞추어 제시한 정책수단의 추진경과와 실적은? 또한 각 정권별로 일자리 수 등 계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3. 1998년 이후 각 정권별(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분야별(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관련 사회안전망 등)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타겟계층(소득, 연령, 산업, 직종, 종사자지위 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부의 정책수단과 타 부처와의 협의내역, 현 시점에서의 정책수단에 대한 성과와 평가는? 각 정권별·노동정책 분야별 정책수립과 집행결과에 따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은? 이에 대한 대책은?

4. 고용통계는 시계열 자료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특정 계층의 직업 이동에 대한 지표, 임금·소득·자산 계층별 이동에 대한 지표 등의 패널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외

사례와 함께 노동부가 시행 중인 통계지표는? 향후 추진 계획은?

5. 한국은행(2009.10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이력현상이 존재하며, 특히 제조업 및 정규직, 40~50대 근로계층이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이력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중심으로 밝혀 주기 바람.

6.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정책심의회 개최현황 및 참석인원, 안건 및 첨부서류, 회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7. 청년·일자리 TF의 구성 및 회의내역, 안건 및 첨부서류 사본, 회의결과 내역

8. 민간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부, 교과부 등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업무보고(p. 6~7) 등에서와 같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등과의 정보교류만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특히 사회적 인식개선, 인턴제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높은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구인난 현상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9.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1998년 이후 변경내역은?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현황과 성과평가, 향후 개선방안(수당문제, 남자와 여성근로자의 제도활용 차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불이익 등)은? 이에 대한 주요국(OECD국가를 중심으로)의 사례와 함께 그 효과는? 영아(0~1세아)를 가진 남성에게 대한 일정기간(1~2개월) 강제 유급휴직제도 도입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저출산대책으로서의 파급효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기업 및 동료의 인식개선, 재정 및 기업의 부담, 현재의 보육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기 바람. 또한 이와 같은 남성 유급휴직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는?

10.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규정과 1998년 이후 변경내역, 1998년 이후 의무고용률 현황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1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없는 성장'이라

3) 최근 5년간 장애유형(등급)별 장애인 일반고용 취업자 수

※참고 : 장애등급 (중증, 경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분류

(단위 : 명)

연도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2005															
2006															
2007															
2008															
2009															

(행정안전부)

- 행정인턴 사업이 올해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따라서 2010년 현재 각 지자체와 중앙 행정기관에 채용된 행정인턴 현황과 그중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과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노동부는 청년실업 해결, 그리고 청년들과 중소기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워크넷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워크넷의 1일 평균접속자 수, 구인인원, 구직인원, 워크넷을 이용한 취업자 수 등을 연도별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이용자 변동 추이>

(단위 : 명)

연도	1일 평균 접속자 수	구인인원 수	구직인원 수	취업자 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				

○정희수 위원

(행정안전부)

◆행안부, 일자리 위한 1조 예산, 중복사업 수두룩!

산업구조 변화 따른 일자리 활성화 방안 재고 필요!

- 최근 산업구조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추세!

- 행안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은 이런 현실 무시!

- 통계상 일자리늘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행안

부는 사업내용 재검토해야!

□최근 고용동향은 제조업의 자본집약적 산업 구조로의 재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된 모습.

- 고용률은 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 하여 59.5%→58.6%로 하락

(다음 페이지에 계속)

<고용률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02	04	05	06	07	08	09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597	418	299	295	282	145	-72
고용률	60.0	59.8	59.7	59.7	59.8	59.5	58.6
경제성장률	7.2	4.6	4.0	5.2	5.1	2.2	0.2

자료 : 통계청

- 산업구조는 수출위주의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추세
 • 제조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전통산업은 감소
 • 지식기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산업 등은 증가하는 경향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04	05	06	07	08	09
제조업	18.5	18.1	17.5	17.1	16.8	16.3
도소매·음식·숙박	26.0	25.4	24.9	24.4	24.1	23.6
전문과학기술, 교육, 의료 등 (교육, 보건, 복지, 사업지원)	15.2 (12.5)	15.8 (13.1)	16.8 (13.8)	17.6 (14.6)	18.5 (15.3)	19.6 (16.1)

자료 : 통계청

□ 즉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 또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공부문 일자리 활성화 방안'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추진하는 '공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일자리 활성화 방안>

사업명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사업기간	10.3~6(4개월)	10.7~12(6개월)	10.9~12(4개월)
총사업비	5,727억 원	4,688억 원	208억 원
사업규모	참여인원 10만 명	일자리 5만 개 조성	1시군구 1개시범사업
사업내용	*10대 친서민·생산적 사업* <친서민 사업> ①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②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③취약계층 지원사업 ④동네마당 조성사업	<공동사업> •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집수리 •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 공공시설물 정비(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등)	•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 시범사업 평가 후 안정적인 주민주도형 사업모델로 발전

사업명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생산적 사업> ⑤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⑥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⑦공공시설물 개·보수 ⑧공공부문 정보화사업 ⑨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⑩주민숙원사업	<특화사업> • 대도시형 : 자전거수거·수리센터 운영, 도시숲 조성 • 중소도시형 : 자전거길 조성, 동네마당 조성 • 농산어촌형 : 녹색길 조성, 마을갯길 개선 • 접경지역형 : DMZ자원조사	

-10만 명이 참여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4개월간 5,727억 원의 사업비를 지방개량, 동네마당 조성,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
 -4,688억 원을 들여 일자리 5만 개를 조성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한 사업내용을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연장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음.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산업구조가 이동한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고용률 증가·실업률 감소 등의 통계 발표를 위해 집행.

-즉 ‘좋은 나쁜 일자리 총량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질의】

Q).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 (08년 대비 09년 취업자 증감 : △7.2만 명)하였고, 고용률(08년 59.5% → 09년 58.6%) 및 경제활동참가율(08년 61.5% → 09년 60.8%)도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등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적극적 일자리 대책을 통해 고용악화를 완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하지만 좋은 나쁜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흐름을

무시한 채, 통계상 일자리늘리기에 급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행정안전부는 1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3년연속 적자, 적자금액만 2조 712억 원!

-실업급여 지급액 05년 17,520억 원에서 09년 41,164억 원으로 2.4배 증가!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05년 52,829억 원에서 09년 35,284억 원으로 33% 감소!

-현재 추세로 실업급여 지출 시 고용보험법상의 적립배율 못 지켜!

-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05년 9,743명에서 09년 25,992명으로 2.7배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업자(08.12 787천 명→10.2 1,169천 명)가 크게 늘어 실업률(08.12 3.3%→10.2 4.9%) 또한 대폭 상승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08.12 7.6%→10.2 10.0%) 심각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05년 1조 7,520억 원에서 09년 4조 1,164억 원으로 2.4배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도 05년 696,544명에서 09년 1,301,132명으로 1.9배 증가

<최근5년간 실업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
실업급여지급액	1,751,974	2,074,004	2,434,032	2,865,256	4,116,404	637,124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
실업급여수급자	696,544	767,314	854,400	990,061	1,301,132	498,388

주 :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한 '실업지원 급여'를 통상 실업급여라 함.

자료 : 노동부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액이 05년 1조 9,054억 원에서 09년 4조 5,279억 원 늘어 적립금은 05년 5조 2,829억 원에서 09년 3조 5,284억 원으로 감소

-고용보험 기금 지출 항목 중 정부가 재정상

황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규정된 대로 따라야 하므로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07년부터 2조 7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적립금 규모는 축소

<최근5년간 고용보험기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a)	22,254	25,412	26,063	28,029	29,897
지출(b)	19,054	22,843	27,132	32,290	45,279
수입(a)-지출(b)	3,200	2,569	△1,069	△4,261	△15,382
적립금	52,829	55,379	54,328	50,667	35,284

자료 : 노동부

-현행 고용보험법상 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지출액의 1.5배~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그러나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쯤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적립배율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최근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자	부정수급자	부정수급비율(%)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액	환수실적	
							환수액	환수율
2005	1,751,974	696,544	9,743	1.39	3,845	9,051	7,470	82.5
2006	2,074,004	767,314	11,754	1.53	4,207	8,759	7,198	82.2
2007	2,434,032	854,400	15,559	1.82	10,764	20,407	9,391	46.0
2008	2,865,256	990,061	19,133	1.93	8,673	16,073	10,038	62.5
2009	4,116,404	1,301,132	25,992	2.00	9,771	17,327	9,271	53.5
계	13,241,670	4,609,451	82,181	1.78	37,260	71,617	43,368	60.6

주 : 환수율 = 환수액 / 징수결정액

자료 : 노동부

- 부정수급자는 05년 9,743명에서 09년 25,992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정수급액도 05년 38억 4500만 원에서 09년 97억 7100만 원으로 상승하였음.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총액만도 372억 6000만 원임.

-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징수 결정액은 총 542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40억 9700만 원이며 미 환수액은 201억 9300만 원임.

【질의】

Q). 실업자 증가로 작년에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 1,164억 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2.4배 증가한 금액임.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005년 5조 2,829억 원에서 2009년 3조 5,284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고용보험법상 고용 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지출액의 1.5배~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년쯤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적립배율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실업급여 지급액은 늘고 고용보험기금은 고갈되어 가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미환수액만 20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장관의 부정수급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김광림 위원

(행정안전부)

◆일손부족 지역, 희망근로 예산 감액

□행정안전부, 보고자료 p.3 하단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산업단지의 지역 일손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감액해서 배정했다고 언급

* 울산, 안산, 당진 등 국가산단 소재 11개 지자체

○실업률 등 해당 지역의 고용여건이 고려돼 희망근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 산업단지의 일손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감액 배정하는 것은 문제.

※농촌 일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일손지원단 가동

질의 1) 행안부 차관님, 예산 감액 배정사유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질의 2) 행안부·노동부 각각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 일자리 공시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산을 줄여서 배정하면 공공일자리가 줄어들어 평가에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노동부)

◆시군구 고용조사 신뢰성

□행정안전부, 보고자료 p.11에서 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창출실적을 평가해 500억 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힘.

□노동부도 보고자료 p.15에서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공시제'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 예산편성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힘.

질의 1) 행안부 차관님, 노동부장관님, 두 대책의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결국 시군구 단위 고용조사로 나타나는 취업자 수 증감과 같은 고용통계가 핵심 평가기준이 될 것

○문제는 현재 통계청 주관 시군구 고용조사가 연1회 실시에 그침

- 올해 최소 2회 이상 조사가 되어 개선실적에 대한 평가가 가능

⇒ 행안부와 노동부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통계조사를 확대하겠다고 오늘 보고자료에 언급

질의 2) 노동부가 소관부처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시군구 고용조사를 추가적으로 몇 번 더 할 계획이십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조사는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통계청이 횡수를 늘려 담당합니까? 지자체로 넘기게 됩니까?

□본 위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회 조사에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30억이 소요됨.

□그런데 현재 자체적으로 소속 시군구별로 고용조사를 수행할 계획을 밝힌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31개 시군구에 대한 고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회당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음

- 16개 시도별 자체수행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1회 90억* 소요 추정

⇒ 통계청보다 예산 3배 ↑
 ○조사표본 수도 2만 가구 / 16개 시도별 자체 수행할 경우 32만 가구*
 ⇒ 현행 통계청(17만 가구)보다 조사표본 2배 ↑(응답부담 ↑)
 ○시군구별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기관이 동일할 필요
 ○특히 시군구별 고용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실적 등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
 질의 4) 노동부장관님, 시군구별 고용조사 담당기관에 대한 협의 시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견해는?
 ◆지역일자리 대책과 고용전망
 □정부는 1월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취업자 수 전망을
 ○올해 경제전망에서 밝혔던 당초 20만 명에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성과로 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25만 명 증가로 수정 발표
 □이후 서울시, 경기도, 경북도 등 지방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대책을 발표
 ○서울시 : 사업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450억 원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3.18)
 ○경기도 : 올해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예산 244억 원을 세출축소해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는 추경예산(안) 발표(3.9) / 현재 도의회 심의 중
 ○경상북도 : 올해 예산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경상경비를 12.6%(95억 원) 절감하는 등 총 497억 원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3.15)
 □행정안전부도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35%를 재원으로,
 ○올해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 원 전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해 5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3.26)
 질의 1) 행안부 차관님, 서울·경기도 등 현재 까지 각 시도 추경예산으로 발표된 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자체 예산

3000억을 절감해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3만 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질의 2) 행안부 차관님, 각 시도의 추경사업과 행안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5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1. 21일 수정·발표된 취업자 수 전망 25만 명에 포함돼 있습니까?
 * 지방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포함 / 행안부 대책은 미포함
 모두 연간으로 환산하면 늘어나는 일자리 개수는 어느 규모입니까?
 * 단순개수, 연간 환산 개수
 실제로 정부 고용전망을 얼마나 상향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실)
 ◆일자리 대책 표시방법 불일치
 □취업자 수, 실업자 수와 같은 고용통계와 정부 정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의 표시방법 차이에 대한 질의
 □통계청에서 매월 15일에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포함된 각종 통계와,
 ○정부와 각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고용전망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산
 * 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등
 □그러나 각 부처가 발표하는 일자리 정책들은 일자리 개수를 중심
 ○3개월 일자리 4개와 12개월 일자리 1개를 단순비교할 우려
 질의 1) 총리실장님, 부처에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때와 총리실에서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때 표시하는 일자리 개수를 단순 합계 대신 연간 일자리 수로 환산된 수치*로 표시해 줄 필요, 견해는?
○강석호 위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시도별 노인인구 고려한 예산 배정 필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은 노인분들께 교통안전, 급식지원, 환경정화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2009년 1,432억 3200만 원 투입하여 지원인원은 19만 3,612명이며, 2010년도 1,432억 3200만 원 투입으로 19만 9,094명에게 일자리 제공 계획임.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백만 원, 명)

부처명	세부사업명	08		09 본예산		09 추경		10 본예산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20]보건복지가족부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83,328	115,734	115,512	158,612	143,232	193,612	143,232	199,094

⇒ 장관님,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은 몇 명 정도인가?

대략 65세 이상 미취업노인(70%) 355만 명 중 약 24.3% 인 86만 명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음.(아래 표 참조)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

○08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전체 노인(507만 명)의약 30%가 경제활동 참여(152만 명)

-종사직종 : 농림·어업, 숙련종사(60.5%), 단순노무종사(24.4%)

○미취업노인(70%인 355만 명)의 24.3%(86만 명), 단순노무종사(24.4%)

- (산출근거) 미취업 노인(70.0%) × 미취업 사유 중(건강하나)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24.3%) = 86만 명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미취업노인의 미취업사유로는

-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 47.8%

- (건강하나)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 24.3%

- 일하고 싶지 않아서 : 8.7%

-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서' : 5.3%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 3.3%

- 자녀들이 반대해서 : 1.5%, 기타 3.1%로 나타남.

※기준 추정치 : 60만 명(인용 : 2004년 실태조사)

○근거 : 미취업노인(69.2%)×미취업 사유 중(건강하나) 일자리가 없어서(17.1%) = 60만 명

□경상북도의 예를 들어보면, 2009년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65세 이상노인은 약 41만 2228명으로 경북 도민 226만 9,876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서울 다음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살고 있음.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영천시 등 14개 시

군이 초고령사회이며, 경주시 등 5개 시군은 고령사회. 그리고 포항시 등 3개 시군이 고령화 사회로서 체계적인 고령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고령화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14% 미만

○고령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20% 미만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그런데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약 186억 원, 서울 약 157억 원, 전남 131억 원 등으로 노인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경상북도는 약 107억 원으로 보조금 지급으로 보면 여섯 번째임.

▷장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경상북도 같은 농어촌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고, 노인일자리는 농어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경북과 같이 노인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지급은 낮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 특히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7년 동안 지급금액이 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6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2009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명)

행정구역별	구분	인구	비율	지원금액	인원배정	노인인구 순위
전국	계	49,773,145		143,232,070	199,094	
	65세이상	5,267,708	10.6%			
서울특별시	계	10,208,302		15,704,455	33,560	2(2)
	65세이상	935,757	9.2%			
부산광역시	계	3,543,030		10,982,897	14,201	4(5)
	65세이상	381,771	10.8%			
대구광역시	계	2,489,781		8,135,522	10,296	9(11)
	65세이상	242,364	9.7%			
인천광역시	계	2,710,579		8,166,372	10,472	10(10)
	65세이상	225,683	8.3%			
광주광역시	계	1,433,640		4,646,397	5,844	14(14)
	65세이상	124,083	8.7%			
대전광역시	계	1,484,180		4,803,847	6,123	13(13)
	65세이상	124,520	8.4%			
울산광역시	계	1,114,866		2,782,417	3,524	15(15)
	65세이상	73,301	6.6%			
경기도	계	11,460,610		18,624,284	26,330	1(1)
	65세이상	965,172	8.4%			
강원도	계	1,512,870		8,305,400	10,595	11(9)
	65세이상	217,230	14.4%			
충청북도	계	1,527,478		5,822,425	7,347	12(12)
	65세이상	198,115	13.0%			
충청남도	계	2,037,582		8,549,405	10,564	7(8)
	65세이상	301,248	14.8%			
전라북도	계	1,854,508		11,333,190	14,277	8(4)
	65세이상	277,682	15.0%			
전라남도	계	1,913,004		13,185,045	16,634	6(3)
	65세이상	343,861	18.0%			
경상북도	계	2,669,876		10,786,267	13,613	3(6)
	65세이상	412,228	15.4%			
경상남도	계	3,250,176		10,613,947	13,376	5(7)
	65세이상	377,987	11.6%			
제주도	계	562,663		790,200	2,338	16(16)
	65세이상	66,706	11.9%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노인인구 수 순위 옆 ()는 지원금액 순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개선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 305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2,7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 함.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세부사업명	09 본예산		09 추정		10 본예산(안)	
	예산 (백만 원)	지원인원 (명)	예산 (백만 원)	지원인원 (명)	예산 (백만 원)	지원인원 (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30,545	2,700	-	-	30,545	2,700

※예산투입은 중앙정부와 지방 각 50 대 50 비율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건강보험하위 20% 등을 대상으로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간호원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임.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양상담 등 건강정보 제공으로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도모

⇒ 장관, 이 사업에 있어 방문담당자 1인당 몇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가?

전국 지역방문담당자별 1인당 약 451명을 담당하고 있음. 이 중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은 약 300~380명 정도 담당하지만 전북 751명, 경남 577명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뒷면 표

참조)

특히 농어촌의 경우 지역이 넓어 지역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있음.

⇒ 농어촌지역 담당자들은 방문에 따른 자차 운전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 및 공가처리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치단체별로 차를 보급해 주는 지역이 있는 반면, 개인 승용차 이용도 있음.

※상해보험 단체 가입 등 고려 필요

□그리고 이 담당자들의 임금체계가 일당제와 호봉제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어 일당제로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음. 이러한 부문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평균 임금 167만 원(경력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 시도별 취약계층 수 및 1인당 관리가구 수 >

(단위 : 명)

시군구	취약가구 (A=B+C)	기초생활수급자 가구(B)	건보하위20% 가구 수(C)	등록관리 가구 수	시군별 방문인력	1인당 관리가수
전국	4,623,007	882,925	3,740,082	1,182,675	2,624	451
서울	807,074	121,829	685,245	108,432	293	370
부산	365,505	83,138	282,367	68,154	218	313
대구	248,832	55,691	193,141	38,578	95	406
인천	233,834	40,338	193,496	36,524	116	315
광주	151,223	31,865	119,358	24,258	53	458
대전	137,645	24,998	112,647	22,586	57	396
울산	80,803	11,468	69,335	21,116	55	384
경기	932,773	124,497	808,276	180,487	490	368
강원	169,362	39,113	130,249	70,019	161	435
충북	158,081	32,677	125,404	66,143	124	533

시군구	취약가구 (A=B+C)	기초생활수급자 가구(B)	건보하위20% 가구 수(C)	등록관리 가구 수	시군별 방문인력	1인당 관리가수
충남	203,940	42,485	161,455	105,535	157	672
전북	225,972	61,564	164,408	91,679	122	751
전남	237,874	63,680	174,194	108,910	214	509
경북	291,885	73,588	218,297	107,986	228	474
경남	311,507	63,590	247,917	110,878	192	577
제주	66,697	12,404	54,293	21,390	49	437

1) 기초생활수급권자 : 2009년 12월 기준(보건복지부 자료 재가공)

2) 건보하위 20% 가구 : 2009년 1월 기준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현금급여기준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최저생계비*120/100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 252,172원씩 증가(7인 최저생계비 2,119,607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노동부)

◆일자리창출 정부의 대응정책 느리다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모아시스템은 현재 노동부가 주최가 되어 추진하고 있지요. 관계부처합동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 3. 4)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정보·통계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일모아 시스템관리대상(중앙정부사업 159개)을 중앙·지방일자리사업을 2010년 5월까지 통합 등록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맞는가?

○장관! 이 내용은 지난 2009년 4월 30일 일자리창출특위 속기록을 보면 노동부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대책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을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또는 부처합동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사업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작년 4월에 하겠다고 한 일모아 시스템 통합 관리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 5월 달에 통합 등록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지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지금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 (81개)

※자료 첨부함

2008년 기준 주요국의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에 있어서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만 보면 △독일은 452명, △영국 443명, △덴마크 453명, △우리나라는 7,887명을 커버하고 있음. 맞지요?

고용지원센터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 고용지원센터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함.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주체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일자리 창출 40만 개 목표에서 올해 2010년에는 5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취업애로계층 일자리사업 지속지원으로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고려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그러나 현재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이고 중앙의존적이고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미흡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09.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일자리창출 효과는 결국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고용지원 및 일자리창출 관련 중앙정부의 기능을 가능한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으로, 가장 명확하게 효과가 드러날 수 있고 지방분권의 추진 맥락과 패를 같이 할 수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¹⁾인 지

1) 중앙정부의 중급 및 하급 행정기관으로 일반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별도로 설치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 즉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방노동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을 정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의 기능 중 지방사무화할 수 있는 기능은 전면적으로 이양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경제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원강화, 지역실정에 맞게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여건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서비스 제공 등 현지성을 제고 할 수 있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중복기능의 통합수행으로 인력·예산 절감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방노동청 기능이양>

○먼저 지방노동청 기능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가능한 정비대상 사무로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과 아울러 지방노동청의 △노사 지원, △고용평등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원센터지원 기능 중 △실업급여, △실업자교육,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기능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여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노동부본청으로 기능을 가져가게 하여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면 노동관련 기능이 중앙과 지방이 명확히 역할 분담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즉 이상의 노동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중 자치단체로 이관할 기능은 이양하고 나머지는 중앙본청으로 이관할 경우에 지방노동청, 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는 폐지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치단체의 노동관련 기능은 보다 자율성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기 바람.

(국무총리실)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라?

□이명박 정부의 2010년도 취업자를 25만 명 이상 증가시켜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임. 국무총리실에서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채용인원은 25만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할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명으로 계획 대비 42.6% 달성하였으며, 3월부터 희망근로 사업이 시행되면 80%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 총리, 2010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5000명 증가하였으나, 실업자 수도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희망근로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견해는?

본 위원은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키우지 못하는 결과가 올 것임.

□정부도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에 대하여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층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본 위원 생각은 지난 3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구성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 20개 대기업 사장단이 참여하고 2017년까지 고용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임.

고용 통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대기업은 줄어들고 있음.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총리께서 대기업 고용 창출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함.

◆중소기업 규제로 투자기회 상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6~19일(4일간) 전국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보통’ 55.4%, ‘불만족’ 1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총리, 정부가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것은 알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직도 규제 때문에 투자 기회를 상실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그리고 이 조사에는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 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나,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기회 상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규제 개혁만으로도 일정 수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과제가 일자리 창출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중소기업 규제로 투자기회 상실 21.8%

- 중소기업중앙회 229개사 설문조사, 규제개혁 만족 25.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21.8%에 달하며,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보통’ 55.4%, ‘불만족’ 19.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 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나,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기회 상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규제 개혁만으로도 일정 수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인력(30.4%), 입지·건축(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MB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별첨 : 조사결과 요약 및 규제애로 사례 각 1부.

<별첨 1>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조사개요

- 분야별 만족도

구분	규제개혁 노력	규제개혁 성과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공무원의 자세변화
만족도	37.4%	18.9%	17.1%	29.5%

○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하는 주요 이유
- 현장창구에서 제도개선 이행 미흡(28.1%), 핵심규제 미개선(22.5%)

○ 공무원과 업무 협의 시 가장 큰 애로사항
- 소극적 법령해석 및 운영(28.6%), 복잡한 절차 및 처리 지연(27.7%)

○ 정부의 중점 규제개혁 방향
- 규제행정 간소화, 신속화(36.7%), 개별기업 중심 현장애로 해소(25.2%)

<중소기업 규제애로>

○ 지난 2년간 규제에 의한 투자기회 상실 경험 : 21.8%(응답업체 216개 중 47개 업체)

- 투자기회 상실로 투자하지 못한 총 금액 : 평균 6억 원(40개 업체)

- 투자기회 상실로 고용하지 못한 총 인원 : 평균 12명(37개 업체)

○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
- 노동·인력(30.4%), 입지·건축(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별첨 2>

중소기업 규제애로 사례

<사례 1> 과도한 입지·건축 규제

○ A사 : 투자하지 못한 금액 12억 원, 고용하지 못한 인원 10명

-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했으나 지방 공단에서 대기배출시설 업체의 입주를 꺼려, 2회에 걸친 지방이전 계획을 포기

○ B사 : 투자하지 못한 금액 1억 원, 고용하지 못한 인원 1명

- 공장부지가 협소해 증축을 하고자 하나 유기용제 취급 시설의 경우 주위 3m 이상 공지 확보 규정으로 인해 증축 불가능

- 중소기업은 지가부담, 입지규제 등으로 충분

○ 조사기간 : 2010. 2. 16~2. 19(4일간)

○ 조사대상 : 전국 229개 중소기업

조사결과

<규제개혁 만족도>

○ 규제개혁 전반적 만족도 : 만족 25.4%, 보통 55.4%, 불만족 19.2%

한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벽면 방화성능 강화 등을 전제로 규제 완화 필요

<사례 2> 과도한 노동·인력 규제

○ C사

-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에서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및 대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등 법이 정하는 각종 선임의무 이행에 많은 부담이 따름

<사례 3> 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연

○ D사

- 07년 초 공단부지를 분양받아 09. 9월부터 입주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공장을 착공, 10. 1월에 입주(임시)하였으나, 도로 미완성(비포장), 전기 공급 및 정화조(통합) 시공도 안 되어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2개월간 공장가동을 못함.

○ E사

- 00산업단지에 09. 11월 분양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신축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몇 번이나 달라지는 등 현재까지 공장 신축을 못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원화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 1. 13일 제정되어 4. 4일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 시행령이 어제(3.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음.

그런데 이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입법내용을 변경하였음.

입법내용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관리부처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서 공동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입법내용 변경을 통하여 산업·발전(지식경제부), 건물·교통(국토해양부), 농업·축산(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로 업무로 분장하고 환경부가 총괄하도록 규정함.

□시행령 예법예고 내용 변경 전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관련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지식경제부·환경부가 공동 관리하는 업무를 한 부처로 일원화 해달라는 것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기업에게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

⇒ 총리, 입법 내용을 변경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입법내용에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산업 일부 단체에서 일원화 요구를 하였는데, 지급처럼 산업별로 업무를 분장한 것은 관리대상·관리지표·정책수단 등이 행정편의주의로 입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특히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추진으로 초래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행정안전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실업자, 휴·폐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 및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행하고 있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2010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희망근로	금액	572,700	445,600	127,100
프로젝트	비율	100%	77.80%	22.20%

행정안전부 차관!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희망근로사업으로 5,97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참여자 접수결과 3만 520명이 신청하여 선발예정인원 5,974명 대비 510%의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서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희망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할 것임.

⇒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달라.

○희망근로사업의 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임금 지급방식은 임금 중 상품권 비율은 30%를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광역 시도에서 일괄 제작·발행하여 자치단체에 배정하는데 맞는지?

⇒ 자치단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희망근로상품권은 광역 시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 자치단체가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제작·발행하고 있지요?

⇒ 차관!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제작·발행하는 곳이 몇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행정안전부는 정확히 모르고 있음)

본 위원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조사해 보니 232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조폐공사에 의뢰해 상품권을 제작·발행하는 자치단체는 146개였음.

⇒ 232개 지자체별로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상품권을 제작·발행하는 지자체는 146개이며 나아가 지역에서 쿠폰식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합치면 더 많다고 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봄. 희망근로상품권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하면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인쇄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희망근로상품권은 따로 인쇄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따로 발행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봄. 이에 대해서 행안부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우수기업 지방세 감면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는 고용우수기업에 있어서 지방세 감면 관련,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봄. 광역 시도에서 감면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자체신청→행안부허가→입법예고→의회의결→공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됨.

⇒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용우수기업 지방세 감면 관련하여 표준조례 안을 마련하여, 일괄 통보하면 기한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고용우수기업도 빨리 혜택을 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통보할 의지가 없

는지 밝혀 주기 바람.

○지역일자리(행안부)사업을 전담할 조직·인력이 필요함.

<경상북도 일자리 전담인력 현황>

(종전) -7명		⇒	(변경) -7명	
업무	인원		업무	인원
• 희망근로	3	• 희망근로	3	
• 고용정책	4	• 고용정책	4	
		• 일자리 총괄	-	
		• 지역일자리	-	
		• 일자리센터	-	

⇒ 인력 보강은 없이 지역일자리사업과 일자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침만 하달하는데, 지역에서는 해야 할 업무는 산더미인데, 적은 인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봄.

⇒ 일자리 전담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답변서)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2010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2만 5000명 증가하였으나, 실업자 수도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희망근로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견해는?

○실업자가 증가한 것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취업시준을 맞은 청년층의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

○고용사정 악화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희망근로 등 단기·임시 일자리라도 비상대책 수단으로서 필요한 대책임.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사업 종료 후에는 민간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상담, 취업알선 등을 병행 지원하고 있음.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 산업 선진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것은 알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직도 규제 때문에 투자

기회를 상실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큰 만큼,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한시적 규제유예(09.5), 신성장동력 분야 규제개혁(09.11), 금년도 1,071개 규제개혁과제 선정(10.2) 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부문의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완화, 창업투자회사 투자업종 확대 및 행위제한 완화 등

○또한 금년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부문별 관리기관을 소관부처로 하고 총괄기관을 환경부로 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입법내용을 변경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개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예고

-관리업체별 규제기관을 분야별로 단일화(Single Window) 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 분야별 소관부처에서 「온실가스 목표설정→이행→보고→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고, 총괄기관인 환경부에서 메타 평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관리업체 명세서 공개

○앞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여 업계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business friendly)

(김광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부처에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때와 총리실에서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때 표시하는 일자리 개수를 단순합계 대신 연간 일자리 수로 환산된 수치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견해는?

○그간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를 발표할 때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사업별 일자리 개수를 단순 합계 한 것은 사실임.

○향후 일자리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산정 시 단순합계와 함께 사업기간이 고려된 연간단위의 일자리 수를 병기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겠음.

* 1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단순합계는 58만 개이지만, 연간단위로 환산하면 39만 개 정도임.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을 위해 구성된 TF 팀 중 「고용 및 사회안전망대책TF」의 구성 및 회의내역, 안전 및 첨부서류 사본, 회의결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회의는 국무총리실국무차장이 주재하고, 주요부처 국장들이 참석하여 일자리대책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
-08.12.23 제1차 회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44차 회의를 개최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개최현황 : 별첨

별첨: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개최 현황	
회차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1회 (08.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위기 대응 고용대책 TF 운영계획 (총리실) ○주요 고용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노동부) ○재정지원 청년 인턴사업 집행계획 및 추진현황 ○일자리창출 TF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기재부)
2회 (0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위기 대응 범정부 고용대책 추진 방안 (총리실) ○부처별 일자리 창출 대책 (각 부처)
3회 (09.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예산조기 집행 추진상황 (기재부) ○재정지원 청년 인턴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개선방안 등 ○해외취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노동부)
4회 (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실적 및 관리방안 (복지부)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노동부)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방안(노동부) ○일자리 나누기 모범사례 및 확산방안 (노동부)
5회 (09.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위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대책 (법무부, 노동부) ○노인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방안 (복지부)
6회 (09.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 (노동부, 복지부, 중기청) ○민생안정 현장점검 결과 보고 (총리실) ○인턴제도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민간분야 일자리나누기 추진실적 및 확산방안(노동부), 홍보방안(문광부)
7회 (0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 추가대책(노동부) ○민생안정 지원체계 점검결과 후속조치(총리실) ○기타 토론회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사례 보고(여성부)
8회 (09.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건설근로자 해외건설시장 고용 확대 방안 (국토부) ○빈일자리 고용 알선대책 추진현황 (노동부, 중기청) ○실업급여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노동부)
9회 (09.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학생 창업 활성화 대책(중기청) ○여성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여성부)

회차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일자리 대책 추진현황(행정안전부)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점검계획안(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대책 관련 후속조치 추진계획(총리실)
10회 (09.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대책 평가체계 구축방안 (노동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복지부) ○공공·금융부문 인턴 추진현황 (총리실)
11회 (09.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노동부, 행안부, 중기청)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노동부) ○청년·학생 벤처 붐 조성 방안 (중기청) ○사회복지전달체계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총리실)
12회 (09.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행안부) ○지식경제부 소관 고용대책 추진현황 보고 (지경부) ○대학생 창업 지원 실태 점검 결과 (총리실)
13회 (09.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 및 계획 (복지부) ○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노동부) ○자영업자 지원대책 및 청년층 기업가정신 확산방안 홍보계획 (중기청) ○퇴직 인력을 활용한 경제개발경험 수출 상품화 방안 『Gray Expert Project』 (지경부)
14회 (0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관련 추경규모 및 집행계획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조직 개선 방안 (행안부) ○일자리 대책 평가계획(안) (노동연구원) ○일모아 시스템 관리 대상사업 확대 및 조기입력 방안 (노동부)
15회 (09.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대책 평가 방안 (노동부) ○일자리대책 관련,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총리실)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계획(안) (복지부)
16회 (09.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울시스템 및 징계제도 개선 등 복지보조금 횡령 방지대책 (행안부) ○노동부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입력현황 및 개선대책 (노동부)
17회 (0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 (행안부) ○퇴직전문가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지경부, 외교부) ○일자리대책 평가 세부추진계획 (노동연구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 (총리실)
18회 (09.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인력수급 연계강화 추진계획(안) (교과부, 노동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금융위)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사중복 평가 및 조정계획 (총리실, 기재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자리대책 추진 유공자 포상계획 (행안부, 노동부)
19회 (09.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 지원대책 연계강화 방안 (중기청) ○교과부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교과부) ○일모아시스템 부처별 입력현황 및 개선계획 (노동부)
20회 (09.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행안부) ○퇴직인력 해외진출 지원 방안 (지경부, 외교부) ○마이크로크레딧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복지부)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총리실)

회차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21회 (09.7.7)	○비정규직 동향 및 고용지원대책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 (총리실)
22회 (09.7.14)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사중복 평가 및 조정안 (직업능력개발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사업 개선방안 (노동부) ○미취업대졸생지원사업(Stay-in School) 추진현황 (교과부)
23회 (09.7.21)	○일자리대책 평가 추진상황 보고 (노동연구원) - 청년 인턴, 일자리 나누기 ○고령자 일자리 대책 (노동부) ○일을 통한 적극적 빈곤탈출 (복지부)
24회 (09.7.28)	○일자리대책 평가 추진상황 보고 (노동연구원) - 희망근로프로젝트, 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분야
25회 (09.8.4)	○글로벌리더 해외인턴사업 활성화 방안 (교육부) ○일모아시스템 입력현황 및 활용계획 (노동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복지부)
26회 (09.8.18)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사·중복 평가 및 조정안 (총리실, 기재부, 직능원)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지자체 상담·안내 시스템 연계 (복지부)
27회 (09.9.1)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기재부)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토부)
28회 (09.9.8)	○교과부 소관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교과부)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추진계획 (총리실)
29회 (09.9.15)	○외국인근로자 관련 현안 및 대책 (노동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관련 현안보고 (복지부) ○노동부 소관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노동부)
30회 (09.9.22)	○청년인턴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행안부, 재정부, 노동부, 금융위) ○공공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노동부) ○민생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복지부)
31회 (09.9.29)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 추진상황 (행안부)
32회 (09.10.15)	○2010년 청년창업대책 추진계획 (중기청) ○플랜트 해외인턴제도 개선방안 (지경부)
33회 (09.10.20)	○2010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방안 (노동부)
34회 (09.11.3)	○10년도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지경부, 외교부) ○시군구 복지진달체계 개선대책(복지부, 행안부)
35회 (09.11.17)	○중소제조업 인력유입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중기청) ○동절기 서민·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점검계획(총리실) ○산학연계형 직업·기술 교육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노동부 등 4개 부처)
36회 (09.12.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체계적 지원·관리방안 (노동부) ○10년도 희망근로 추진계획 (행안부)

회차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37회 (09.12.19)	○일자리대책 평가 결과(I) (노동연구원) (i) 청년인턴 사업 평가, (ii) 희망근로프로젝트 평가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 해외취업 지원방안 (노동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성과 및 10년도 정책추진방향(복지부)
38회 (09.12.29)	○일자리대책 평가 결과(II) (노동연구원) (i)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ii)고용안전망, (iii) 일자리 나누기 ○10년도 청년인턴 운영계획 및 취업교육 강화방안 (행안부 등)
39회 (10.1.12)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 운영 및 위탁훈련기관 평가계획(노동부)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추진현황 (복지부)
40회 (10.1.2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현황 및 정착방안 (복지부) ○지자체 고용대책 활성화 방안(노동부)
41회 (10.2.9)	○부처 간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계획(안) (총리실)
42회 (10.2.23)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효율성 제고방안 (복지부)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탈락자 취업지원 대책 (행안부)
43회 (10.3.9)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지경부, 외교부 공동보고)
44회 (10.3.23)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망 구축 및 향후 추진계획 (노동부)

현재까지 부처별 자체점검, 각 TF별 점검, 총리실 주관 종합평가 실시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은? 또한 각 단계별 점검항목 및 총리실의 종합평가 기준, 각 단계별 점검결과와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은?

- 분기별 부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TF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총리실 종합평가는 반기별(6, 12월)로 실시할 계획
- 부처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은 각 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 추진
 - 총리실 종합평가를 위한 구체적 점검항목 및 기준 등은 4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
- 점검·평가 결과는 각 TF 등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개선·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

재원 배분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배분방식의 적정성 기준은? 또한 고용창출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대상사업의 범위 및 선정기준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의미인지? 2010년 예산사업을 기준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하반기별 예산배분계획 및 고용창출 효과에 의해 변경 가능한 예산배분 계획은?

- 재원 배분방식,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검토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 금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현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현황, 재분류 세부내역 및 분류기준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시 유사·중복사업의 기준과 소관부처의 결정기준은?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음.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의

구체적 내역은?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06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10년에는 9개 부처 45개 사회서비스 사업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14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

○기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자바우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 효율화, 일자리 친화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간병, 장애인장기요양 등 유망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인증범위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방안(현행과 비교)은?

○10년 인증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공동체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증범위 확대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이 용이하도록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식소유지분비율을 폐지

△다양한 사회적기업 유형 인정 위해 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을 로컬푸드, 문화재 보호, 예술공연, 대안에너지, 공정무역, 기업사회공헌 등으로 구체적 제시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취약계층*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부자가정, 결혼이민여성,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인정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성장단계별·유형별로 지원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임

* 연차별 차등지급(1인당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단계별 : 초기단계(인건비, 우선구매·세제감면 등 병행) → 안정단계(재정지원 최소화, 경영지원 통한 생존전략 추구)

△유형별 :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으로 분류하여 인건비 수준 결정, 장기적으로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

○아울러 금년도 3월부터 사업개발비(노동부

185억 원+지자체 46억 원)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을 늘리고 있음.

규제개혁 대상 1,071개의 목록과 규제개혁 대상 선정 기준과 사유, 주요내용 및 규제개혁 방안은?

○2010년에는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어 1,071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음.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374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제가 257개, 미래대비를 위한 과제가 440개임.

○1,071개 과제목록과 주요내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견인하는 규제개혁”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I. 2009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정비 추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963건의 규제를 정비

* 국회 계류된 76개 규제개혁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완료된 규제개혁과제는 1,087건으로 증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기회복 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추진(09.5)

○진입규제 정비(09.9), 신성장동력 규제개혁방안(09.11)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활동에 부담이 큰 규제는 억제하고 국민건강·안전 관련 규제는 품질을 제고하는 등 규제심사의 내실화 추진

○957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중요규제로 분류된 171건 중 110건(64.3%) 개선·철회권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규제대안분석을 강화하는 등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하는 한편, 규제관련 영향평가를 통합(09.12)하여 각 부처의 부담을 경감

□규제에 대한 「개별적·부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기반 구축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새로운 유형의 일몰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 제고

* 1단계로 경제적 규제(2,184건) 대상으로 558건 일몰 설정

○법령상의 미등록규제를 일제 조사·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 제고

* 전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 2,298건을 발굴·등록

○규제의 생성·변경·소멸 등 규제이력을 관리하고 규제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09.8)

□개선된 과제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의 일선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교육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

◆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09.8월 전경련의 만족도조사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는 49.0%로 09.2월(27.1%)에 비해 20% 이상 상승

* 09.9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0)도 19위로 전년(23위)에 비해 4계단 상승

* 09.12월 OECD는 한국이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규제개혁추진 체계와 역량 부문에서 규제관리 최선두 그룹에 속한 것으로 평가

II. 2010년 규제개혁 여건 및 추진방향

1. 규제개혁 여건

□올해는 경기회복 동력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시기

○민간부문이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의 기초를 이어가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투자여건 개선에 정책수단 집중 필요

* 올해 30대 그룹 투자규모는 87조 원(전년 대비 16.3% 증가), 신규채용규모는 7만 9000명(전년 대비 8.7% 증가) 예상

⇒ 투자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

개혁 적극 추진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극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소요 전망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이어질 때까지 상대적 취약계층 지원 지속 필요

⇒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체감형 규제개선 추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와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미래대비 필요성 대두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성숙한 세계국가진입을 도모해야 할 시점

⇒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기극복 이후 경제도약과 국격향상을 위한 미래대비 인프라 구축 추진

2. 규제개혁 추진방향

□2010년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어 과제 발굴·추진

○(투자활성화)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완화

-창업·입지·환경 등 전반적인 기업투자환경을 점검·개선

-서비스산업·전통주력산업 규제완화, 진입규제 정비 등을 통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투자를 유도

○(서민생활안정) 일과 복지를 통한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

○(미래대비)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성숙한 세계국가 진입을 위한 제도선진화를 추진

-교육규제 개선 등 인적자본 확충,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위기 이후 경제도약 기반 마련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규제는 개방화 사회에 걸맞게 개선

◆ 일자리창출과 국격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도출에 주력

◆ 금융여건,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는 총리실 중심으로 과제 추가발굴

III.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2010년 추진과제 현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위해 2010년에 추진할 1,071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기업투자환경개선, 고용창출분야 투자유도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374개)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제(257개)가 59%를 차지

-미래성장기반 구축,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등 미래대비를 위한 과제는 440개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총과제수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	
			미래성장기반 구축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1,071개	374개	257개	115개	325개
비중(%)	35%	24%	11%	30%

○주택·건설·식품의약·환경·금융 분야의 과제가 전체의 절반(50%)을 차지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총과제수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타 부처
1,071개	248개	102개	97개	92개	532개
비중(%)	23.1%	9.5%	9.1%	8.6%	49.7%

□1,071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정과제 추진과 직결되는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총리실에서 집중관리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국격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처 최우선 추진과제 위주로 선정

* 투자활성화 46개, 서민생활안정 26개, 미래대비 28개

1. 투자활성화

◆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분야의 투자유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① 창업관련 제도개선, 기업 부담경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선진화된 기업투자환경 조성

○(창업투자 규제완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숙박·음식점업 등까지 확대하고, 해외투자요건 및 행위제한 등을 완화

○(기업 부담경감) 자유무역지역 및 대덕특구 입주 제한 업종을 완화하여 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 기업부담 경감

○(방송사업자 부담경감) 채무구조가 취약하여 결손이 계속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발전기금을

경감하고,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의 시설이전 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파견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30% 이상 장애인 고용, 그중 5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 (개선) 30%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25% 중증장애인 고용

②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

○(관광산업) 관광단지 내 휴양형 체류시설, 병원 등을 허용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용자조건 완화 등 관광숙박시설 지원확대

* 10년 개관예정 33개소 숙박시설에서 4,800여명 신규고용창출 기대

○(방송통신) 기부금품 모집광고·애니메이션 편성규제 등 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규제를 완화

○(의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근무가능자*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판매대상**을 확대

* 외국 (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 → 외국 간호사·의료기사까지 확대

** 외국인 → 외국의료기관 이용 내국인까지 확대

○(스포츠산업) 스포츠경기장에 대해 영화관, 쇼핑센터 등 각종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완화

*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에 대해서만 허용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자유설치

③ 부품소재업, 물류산업 등 전통주력산업 제도개선

○(부품소재) 플랜트기자재의 신뢰성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항공기·부품 생산에 대한 성능·품질검사를 간소화

○(물류산업) 물류단지 지정·개발절차를 일원화하고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

* 물류단지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는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항만산업) 대형선 야간 입·출항 제한을 완화하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 시 국가 재정지원기준을 마련

④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진입규제 정비

○(LPG수출업 진입요건완화) LPG 저장시설 공동사용을 허용하여 다수의 LPG 수출업체 진입 기회를 확대

* 현재는 저장시설 소유 또는 1년 이상 독점적 입차 필요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완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가능한 제조업체의 수출입 비중기준을 완화(매출액의 50% → 30%)

○(전통주 제조업 시설기준완화)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기준을 완화(탁주·약주·칭주의 경우 6㎡ 이상 → 폐지)

⑤ 국토개발 수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공장 등 신·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연접개발제한) 공장·축사 등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하여 既 개발된 지역은 조례에 기초하여 연접개발 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

○(대규모시설 설치규제 완화) 대규모 단일공장·체육시설 설치 시, 일정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를 허용

* (현행)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 (개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지정기준을 군부대 외곽울타리에서 부대내 핵심시설로 변

경하여 보호구역 축소

○(산림보호구역 규제완화)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를 확대, 일정조건* 하에서 폐광지역 개발사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 개발 허용

* 타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추진 필요, 2만㎡ 미만 및 편입비율 30% 미만

⑥ 환경규제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

○(용도지역별 입지제한개선) 기존 사업장의 합병·증설의 경우 오염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 개별시설별 입지 허용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제한개선) 배출규모에 따른 입지제한을 폐지하고 배출총량 내에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결정

○(지역배출허용총량 완화)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27개소)의 배출허용총량을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제외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제한개선) 폐수처리수준이 수질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제한 완화

* 현재 공업용지 조성사업 6만㎡ 이내, 첨단공장 공장면적 1000㎡ 이내로 제한

2. 서민생활안정

◆ 일과 복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농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① 서민·취약계층의 「일과 복지」를 통한 자립 여건 마련

○(소상공인 지원) 시장정비사업 완료시 대규모점포 등록의무를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대상자에 무등록사업자를 포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자격요건완화) 취약계층 고용비율 조정(50% → 30%) 및 2월 이내 채용요건 삭제

○(직업재활훈련 대상확대)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급여의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자를 확대(장해 1급~9급 → 1급~12급)

* 수혜대상이 1만 8000명 증가, 재활훈련을 통해 약 3,100여 명 고용창출

②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고용보험) 취약계층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수혜대상이 3만 4000명 증가(7만 8000명→11만 2000명)

○(건강보험)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

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 적용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농지소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농어를 수급자로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 중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노노케어 가정 등에 대하여 현금보상

③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확보

○(임대지원사업 확대)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체 시군으로 매입·전세임대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공급물량 5% 범위 내)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확대)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7000만 원→8000만 원)

○(주택 공급요건완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을 다양화하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무주택 서민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추가지정

④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

○(재난복구비용 현실화) 농작물 및 농어업시설 등의 피해에 대해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상향조정

○(어업인 금융지원)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을 완화하고, 일선수협이 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완화

○(소득증대지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해양레저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 축산물 식품판매업 영업범위를 확대

○(농어민 복지) 질병 농가 등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을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

* 질병·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09)13천 가구 → (10)15천 가구

3. 미래대비

◆ 인적자본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격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미래성장기반 구축>

① 대학 선진화와 산업인력양성 제도개선을 통해 인적자본 확충

○(대학의 자율성확보)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학교법인 재산처분에 대한 자율권 강화

* 해당국가의 대학설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설립요건 완화 또는 배제

○(산업인력양성) 대학 연구시설 내 실험실공장 설치주체를 확대하고, 해외기술인력 지원사업의 대상확대 및 절차 간소화

○(해외전문인력유입)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외국예술인력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

*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 2급 이상 또는 면접을 통한 검증

* 연소득 1인당 GNI 3배 이상 → 2배 이상

②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 제도개선 추진

○(전기자동차 상용화)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및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도 마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하천수 온도차에너지 등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소충전소 기준을 마련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① 다문화·개방화 사회에 걸맞게 각종 차별제도 개선

○(외국인체류자 제도개선) 보호시설내 보호외국인에 대해 물품제한을 완화하고 공동청원을 인정하는 등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영주 외국인에 대해 귀화필기시험을 면제

○(소수자 배려) 생물학적 성전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전자적인 증명시스템 미비로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 불가

○(사회통합지원) 사회통합 운영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20개소→42개소)하고, 운영비·강사료 등 현실화

②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자동차 관련 제도개선) 자동차 인터넷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시군구별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민원절차 간소화) 지적측량 처리기간(7→5일) 및 조사기간(5→4일) 등을 단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허가절차 시스템을 구축

*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허가·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행정비용 37억 원 절감),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면제 대상품목 확대(86억 원 절감)

○(행정제재완화) 과도한 과태료·과징금 완화 및 영업정지 등 이중적 처벌 제도 개선

* 사전승인 없이 항공노선 폐지시 벌금·과태료 → 과태료만 부과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업·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 폐지

*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 등

IV.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 규제개혁효과가 가시화되도록 법령개정은 신속하게 추진

◆ 국정과제추진과 직결되는 규제개혁과제 지속 발굴하고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체감도 제고

1. 규제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686개 법령은 「규제개혁 법령」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입법 지원

○특히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 관련 70개 법령의 경우 개별 관리카드 등을 통해 중점관리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수단 현황>

구 분	합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전체과제 관련 법령안	686개	120개	138개	428개
핵심규제개혁과제 관련 법령안	70개	11개	21개	38개

□연내 완료대상과제의 53.3%(537개)를 상반기 중 추진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는 57개를 상반기에 추진

<시기별 규제개혁과제 추진계획>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년
전체과제 (1,071개)	159개 (15.8%)	378개 (37.5%)	113개 (11.2%)	357개 (35.5%)	64개 (-)
핵심규제개혁과제 (100개)	21개	36개	12개	30개	1개

2.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개혁의 추진동력 유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저출산대책’, ‘금융규제 합리화’,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생활규제개선’ 등 핵심국정과제 관련 전략과제를 추가 발굴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핵심국정과제 추진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무총리 주재 회의(2월 말~3월초)를 거쳐 확정·추진

□경제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소하는 절

차를 제도화

* (가칭)중소기업 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격월) 정례화

○국가경쟁력강화위(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와 협조하여 경제단체, 주한 외국상의, 개별기업 등의 건의사항 수렴·반영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과제 수렴·반영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확대적용과 행정규칙상의 미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일몰 적용(09)에 이어, 2010년에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 일몰 적용 추진

○법령상의 미등록규제 정비(09)에 이어, 2010년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상의 미등록규제에 대해 조사·정비 추진

* 우선 3개 부처청의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규제등록·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나머지 부처로 확대

3.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감도 제고

□부처별로 소관과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독려

○부처별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공개

○부처별로 소관과제에 대하여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건축·토지이용·환경 등 주요분야를 선정하여 테마별 점검 실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부처별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릴레이 홍보 실시(10. 2월초~2월 중순)

○주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정책설명회, 홍보물 배포 등 부처의 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는 방법으로 홍보 실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규제개혁 성과 홍보 추진

* G20 정상회의 부대행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시스템 및 주요 규제개혁성과 홍보

[붙임]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 목록 및 내용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1 투자활성화				
1	○단일공장 등 대규모시설 개발행위허가면적제한 배제 - (현행) 대규모 단일공장·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 등이 도로·상하수도 등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면적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 *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및 절차 이행으로 신속한 공장건립·확장 등 적기투자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애로 - (개선) 단일시설물 설치시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계획에 대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배제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 허용	공장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대한 설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장건립 소요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지자체의 기업유치 및 민간유치 활성화에 기여 *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4~6개월의 기간 단축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12말)	국토해양부
2	○보전적성등급 토지의 개발용도 확대 - (현행) 300m 내외의 집수구역 등 보전적성 평가대상 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 * 환경처리 대책여부에 관계없이 지침으로 개발이 불허되어 빈발한 민원 발생 - (개선) 보전적성평가지역의 경우에도 입지여건, 지형적 특성 등이 고려된 보전대책 강구시, 평가결과에 따라 입안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토록 함	보전대상지역의 경우에도 합리적 평가 통해 개발 가능성을 확대하여(ex : 공장 및 체육시설 확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토지적성평가 지침개정 (10. 6말)	국토해양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3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설치제한 완화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 공항 및 그 인근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산업단지가 있는 군의 군청 또는 읍사무소 소재지 -(개선)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 설치제한 규정 완화 또는 폐지 검토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유로운 영업권 보장 통해 대여사업 활성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0. 11말)	국토해양부
4	○동물용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현행)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영업소, 창고), 관리약사와 함께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자산요건 폐지	신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시장진입으로 경쟁 촉진 및 간접적 투자증대효과 예상 * 전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450여 개의 연 매출액은 3,500억 원으로, 매년 10개 업소 신규허가시 약 78억 원의 투자효과 추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10. 6말)	농림수산식품부
5	○중저가 숙박시설 융자지원 개선 -(현행) 관광숙박시설은 대규모 투입자금, 오랜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민간기업의 자체자금 조달이 어려움 -(개선) 중저가 숙박시설 관광기금 융자조건, 금리완화 * 최대 4년거치 5년상환 → 5년거치 5년상환 / 공자금리-0.75% → 공자금리 -1.25% * 혜택대상 : 1박에 10만 원 이하인 여관, 모텔,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08년) 24,807실 → (12년) 35,000실	관계부처 협의 (10.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6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 -(현행) 경륜·경정사업(경주사업)은 지자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시행가능 * 경주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위탁사업자를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제한 -(개선) 경륜·경정사업의 수탁자 범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 * 경륜장 3개소 (광명,창원,부산), 장외 : 21개소 경정사업 1개소 (미사리)	민간위탁을 통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경영효율화로 사업 수지 개선 * 위탁예상업무(투표권 판매, 질서유지 등)의 성격 감안시 경비 및 안내·매표 서비스 용역업, 전산 자동화기기 유지·보수업 등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10. 6말)	문화체육관광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7	○기부금품 모집광고 제한적 허용 -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광고 금지 - (개선) 기부문화 선진화 및 기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동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제	기부문화 선진화·기부 활성화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08년 국내 기부금 총액 9조5천억 원, 07년 국내 광고산업규모는 GDP의 1.05%인 9조 4천억 원)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10. 6말)	방송통신위원회
8	○중계유선 변경허가 사항의 신고제 전환 - (현행)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가 시설이전 등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신규허가와 같은 효과가 있는 방송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시설이전 변경 등은 모두 신고제로 전환	민원처리기간 단축(90일→1일), 행정처리 비용 절감(출장, 확인, 심의 등), 영세사업자 비용 절감(건당 수수료 50,000원)	방송법 개정 (09. 9말)	방송통신위원회
9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허용범위 확대 -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가 나오는 방송광고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후에는 방영 금지 - (개선) 방송광고 내용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도 방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동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제	애니메이션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방송광고 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어린이 프로그램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광고주 증가 예상 * 07년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 3,112 억 원, 07년 지상파 방송3사 기준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주 60개사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10. 6말)	방송통신위원회
10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 완화 - (현행)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전체프로그램 중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주시청 시간대에 방송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개선) 방송사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의무편성비율 산정시 가점 부여	주시청 시간대에 애니메이션 방영기회 확대를 통한 애니메이션 제작 진흥(07년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 규모 2741억)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10. 12말)	방송통신위원회
11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요건 완화 - (현행) 국민 20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 (개선)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내국인고용요건 완화(20인 이상→10인 이상)	내국인 고용창출 유도 * 동 제도 시행(07.6) 이후 활용자는 총 15명에 불과, 금번 개선으로 연간 10여 명 활용 예상	체류외국인 관리 지침 개정 (10. 3말)	법무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1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현행) 입주대상 업종이 제조업, 물류업 등에 한정되어 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없어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 저해 * 세계시장규모(08년) : 콘텐츠업(1.7조 달러), 소프트웨어업(0.9조 달러) -(개선) 입주업종에 지식서비스(콘텐츠업·소프트웨어업 등) 추가하고 입주자격 완화	저렴한 임대료, 세금 감면 등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증대 * 임대료 : 건물가액의 10/1000 수준 * 세제혜택 :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투자비율에 따라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0. 상반기)	지식경제부
13	○대덕특구 입주 제한업종 규제완화 -(현행) 도금, 도장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에 대하여는 생산공정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라도 입주를 제한 *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 -(개선) 오염물질배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한 업체에 한하여는 허용	제조업체에서 도금, 도장의 직접 처리로 업무일원화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 * 대전광역시 소재 특장차 2개 업체의 경우 업체별 연간 2,000만 원 절감효과 발생 예상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지경부 고시) 개정 (10. 6말)	지식경제부
14	○외국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현행)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근무가능 대상자를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로 제한 -(개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이외 간호사·의료기사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를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및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 2013년 개원 예정인 인천송도국제병원의 경우 직접투자 규모는 7천억 원으로 예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0. 상반기)	지식경제부
15	○외국인전용 약국 판매대상 확대 -(현행)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제한하여 외국병원 운영상 제약으로 작용 -(개선)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게까지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 및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0. 상반기)	지식경제부
16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 확대 -(현행) 현행 법령상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를 Positive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은행의 전문인력 및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겸영업무 수행이 불가 * 은행의 겸영업무 :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 -(개선) 은행의 겸영업무 허용범위를 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	은행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도모	은행법시행령 개정 (10. 12말)	금융위원회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17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관련 금산법상 승인규제 개선 - (현행)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 필요 * 이에 따라 형식은 회사이지만 실질은 투자도관체(vehicle) 및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행위까지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 있음 - (개선) 투자도관체 및 금융상품 투자성격의 행위는 금산법상 승인을 간소화하고, 그간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모아 명확한 해석지침을 공표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방지	금산법 제24조 운영 관련 개선방안 마련 (10.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 및 해석지침 공표 (10. 하반기)	금융위원회
18	○일반기업의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완화 - (현행)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상장법인 또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에 한하여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로 인정 - (개선) 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가 아닌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보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되고 ABS 시장 활성화에 기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10. 하반기)	금융위원회
19	○광고물 등 제한·금지에 대한 기준 마련 - (현행) 시군구청장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수량·위치 등 표시방법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명확한 제한기준이 없음 - (개선) 광고물 설치·제한시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민원감소 및 통일성 제고	광고물 제한·금지의 합리성·통일성 제고 * 주유소의 경우 지자체마다 상이한 제한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급변 기준마련으로 민원 해소 가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10. 6말)	행정안전부
20	○파견대상업무 조정 - (현행) 파견대상업무가 32개로 제한 - (개선)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확대 추진	고용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 유연성 확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6말)	노동부
21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정기준 완화 -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은 ①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②장애인근로자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 - (개선) 장애인이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인원의 100분의 25이상을 중증장애인 고용비율로 합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요인 해소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 (10. 3말)	노동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22	○창투사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 - (현행)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금지 - (개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 허용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분야의 400억 신규벤처투자(10년도 예상 벤처투자 금액 8,000억 중 5% 규모) 예상 * 360개 일자리 창출, 1,960억 원의 매출증가 예상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0. 12말)	중소기업청
23	○창투사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 (현행)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금액 제한(자본금의 40%까지 제한) - (개선) 해외투자 요건 완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및 해외투자자금 유치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0. 12말)	중소기업청
24	○즉석판매 제조·가공 대상 식품 전면 확대 - (현행) 이유식, 냉동식품 등 12개 식품군은 즉석판매 제조·가공 대상 식품에서 제외 *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 떡, 고춧가루, 참기름 등 영업장 내에서 제조한 후 즉석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 (개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모든 식품으로 범위 확대	2만 8000개 업소 신규 진입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현재 17개 식품군 약 7만 9,000개 업소 영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0. 12말)	식약청
25	○국가유공자 등 보훈특별고용제도의 개선 - (현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3명까지로 규정 - (개선) 국가유공자 자녀는 장애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을 1명으로 축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녀 제외(지원횟수 2회로 제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장기근속 유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 3말)	국가보훈처
26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확대 - (현행) 교사자격증이 없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정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 교육대학원에서 수료 시 3년 소요 - (개선) 교사자격증이 없는 특정분야의 외부전문가가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사양성특별과정의 설치근거 마련	교사자격증 취득 비용 및 기간(3년 → 1년)단축 * 연간 100명 교육시 약 19억 원 감축(학기당 350만 원 × 6학기 → 학기당 100만 원 × 2학기)	초중등교육법 개정(10. 2말)	교육과학기술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27	○해외 자비유학 자격의 합리화 방안마련 - (현행) 자비유학자격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필요. 예체능계 중학생은 학교장의 추천 필요 *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규제이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문화된 규정 - (개선) 여론조사,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학생의 학습권 개선 및 교육개방 추세의 현실 반영 * 초·중학교 연간 유학생의 약 77%인 2만 1000여 명이 미인정 조기유학인 현실 개선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10. 12말)	교육과학기술부
28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 (현행) 부대 주둔지(군사분계선~25km 이외 지역) 보호구역 지정 시 부대 최외곽경계선(울타리)을 기준하여 일정거리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 (개선) 군부대의 외곽울타리를 기준으로 지정하던 것을 부대 내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조정 * 핵심시설 : 지휘통제시설, 탄약고, 유류저장 시설, 중요장비저장소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약 56억 평)의 10~20% 면적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을 개선, 국민재산권 보장에 기여	운영상 조치(10. 6말)	국방부
29	○탄약고 주변지역 활용방안 마련 - (현행) 탄약 저장시설 보호구역은 주택, 체육 시설 및 공원묘지 등 신축 제한 - (개선) 건축물이 없고, 소수인원이 출입하는 비주거시설에 대한 선별적 허용(야외 체육시설, 묘지 등)	탄약고 주변지역 비주거 시설 선별 허용으로 국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	탄약 및 폭발물 안전 기준 개정(10. 12말)	국방부
3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 이용기준 마련 - (현행) 군사시설 이용 제한 - (개선) 가용한 군 훈련장을 안보교육 차원의 관광자원으로 개방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안보의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상 조치(10. 1말)	국방부
31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연접개발 제한제도 운영 - (현행) 연접개발제한으로 공장 등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골짜기 등에 입지하는 등 난개발 초래 - (개선) ①공장·축사 등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여 기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연접개발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하여 집단화 유도 ②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시설을 기존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건축면적 및 세대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로 개선하여 공장 등의 신·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난개발 방지 및 원활한 기반시설 설치 유도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 12말)	국토해양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3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이 개발제한구역보다도 엄격하여 토지소유자의 불만 야기 - (개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집단거주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상당한 수준*으로 행위제한 완화 검토 * (예)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건폐율(20→40%) 및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20호→10호)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6말)	국토해양부
33	○관광지내 시설지구별 시설범위 확대 - (현행) 관광지내 6개 시설지구(숙박·상가·휴양문화시설 지구 등)별로 설치가능한 시설범위가 제한 * positive방식에 의한 예시사항을 지자체에서 열거사항으로 제한적 적용 - (개선) Negative 방식 도입 등 시설지구내 설치가능한 시설범위 확대적용 방안을 마련 * 관광단지 등에 휴양시설과 병원이 복합된 복합관광시설 도입, 교육시설 도입 등	다양한 복합관광 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 투자 촉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0. 12말)	문화체육관광부
34	○복합형 관광(단)지 제도화 -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내 설치가능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운영 *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 등 6종 운영 - (개선) 관광단지 내 휴양형 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 * 관광단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 설치 등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매력도 증진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현재 관광지 230개소, 관광단지 26개소	관광진흥법 개정 (10.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35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현행)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상수원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골프장 입지 불가 * 09. 7. 1. 대중골프장에 한해 상수원 및 특별대책지역 관련 입지제한 완화 - (개선) 회원제 골프장에도 상수원, 특별대책지역(한강수계 제외) 관련 입지제한 완화 * 금강수계, 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 제외) 인근 회원제 골프장 설치 활성화 예상	골프장 12개소 추가 설치 전망, 건설단계 생산유발효과 약 2조 4,000억 원 기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0. 6말)	문화체육관광부
36	○지방계약 관련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 (현행)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의 부담 경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0. 2말)	행정안전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 (개선)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3000만 원 이하 공사→5000만 원 이하 공사)	* 98년(2000만 원 이하→3000만 원) 완화한 이후 10여년만에 면제대상 확대		
37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분쟁 등 조정범위 확대 - (현행)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 (개선)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 * 종합공사 : 70억 원 이상→30억 원 이상 전문공사 : 7억 원 이상→3억 원 이상 등	지방계약 당사자의 소송부담 완화, 남소 등에 따른 사회적비용 감소 * 종합공사의 경우 200여 건 조정신청 예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0. 2말)	행정안전부
38	○용도지역별 사업장규모의 입지제한 개선 - (현행) 계획관리지역 등은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10톤 이상)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인수합병 등을 제한 - (개선) 기존사업장의 인수합병, 증설 등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시설별 입지 허용	오염물질 배출총량 증가 없는 기존공장의 적기 증설 및 인수합병 가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 마련 (10. 12말) * 개선방안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검토·추진	환경부
39	○특별대책지역 내 규모에 따른 사업장 입지제한 개선 - (현행)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및 여수 산단)에서 총량 관리 대상물질(NOx, SOx 및 PM10)의 배출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은 설치 제한 - (개선) 배출규모에 따른 입지제한을 폐지하고 허가할 수 있는 일정 배출총량을 정하여 허가권자가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결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기개선대책 추진 및 지자체의 자발적인 대기개선 노력 유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10. 12말)	환경부
40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대형사업장 총량제외 - (현행)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07.6.30)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장별로 5년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하여야 함 * 인천지역의 경우 지역배출허용총량 부족을 이유로 02년부터 총량제 실시이전까지 신·증설된 대형사업장(영흥화력 3~4호기 등 3개사)에 대한 5년간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피	지역배출허용총량 신축적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에 기여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변경(10. 12말)	환경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개선) 대형사업장(27개소)의 배출허용총량을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제외 등 통합관리방안 마련			
41	○대기총량관리사업장 배출이전 한도 확대 -(현행)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가능량을 첫째 할당량의 20%까지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5년째에는 50%까지 거래 허용 -(개선) 배출량 저감 우수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4~5차년도 이전한도를 확대(50%→70%)	배출권거래 활성화에 기여(약 4억 원의 편익 발생)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0. 12말)	환경부
42	○대기기본부과금 면제 및 역부과금 제도도입 -(현행) 대기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배출량 등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 -(개선)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부착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 면제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성가에 따른 누진적 인센티브 제공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관리개선 동기부여 및 자율관리체계 확립 유도 (연간 32억 원 부담경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 12말)	환경부
43	○대기배출허용기준 특례기준 적용확대 -(현행) 대기총량관리사업장 일부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20~3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개선) 총량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 특례기준 단계별 확대	기업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연간 79억 원 절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0. 2말)	환경부
44	○자연보전권역 수질 관리체계 개선 -(현행) 공업용지 조성사업 6만m ² 이내(수정법 시행령), 첨단공장 공장면적 1천m ² 이내(산집법 시행령)로 제한 -(개선)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등 선진적인 환경기준 충족 시 입지 허용(新 인·허가 체계 도입)	수질을 보전하면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 환경기술개발 촉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수정법·산집법 시행령 개정(10. 12말)	환경부
45	○용도지역 공장입지 규제 체계 개선 -(현행) 일부 용도지역*은 폐수배출량 5종(50톤/일) 이상 입지 금지 *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개선) 폐수 배출량에 따른 공장 규제를 오염물질 부하량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	수질을 보전하면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 환경기술개발 촉진	폐수배출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 마련(10. 12말)	환경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46	<p>○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p> <p>-(현행)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지정해제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장기 소요</p> <p>-(개선)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설치 허용</p> <p>* 산책·생태탐방을 위한 노퍽 2미터 이내의 산책로·탐방로 설치, 산림훼손 면적이 적은 전신주·이동통신기지국 설치</p>	<p>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 생략으로 사업추진기간(약40일) 단축 및 사업비 절감</p>	<p>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10. 4말)</p>	<p>산림청</p>
[2] 서민생활안정				
47	<p>○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확대</p> <p>-(현행) 05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에 비해 대출 대상자의 전세보증금 한도가 낮아 저소득가구 주거비 부담 가중</p> <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천만, 수도권 기타·광역시 5000만, 기타지역 4000만</p> <p>-(개선) ①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p> <p>②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기준 개선안 마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p>	<p>전세보증금 한도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p>	<p>기금운용계획 변경 (10. 6말)</p>	<p>국토해양부</p>
48	<p>○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p> <p>-(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기초수급자 등으로 경직되게 운용되면서 입주자 만족도도 낮고, 일반단지과 격리현상 등 부작용 발생</p> <p>-(개선) 신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임대조건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p>	<p>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로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 9말)</p>	<p>국토해양부</p>
49	<p>○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청약자격 확대</p> <p>-(현행) 신혼부부주택은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임신부부는 청약대상에서 제외</p> <p>-(개선) 신혼부부주택 청약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하여 출산한 경우와 동일하게 대우</p>	<p>출산장려 및 신혼부부의 주택공급기회 확대</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10. 9말)</p>	<p>국토해양부</p>
50	<p>○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완화</p> <p>-(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근로자·자영업자임을 증빙해야 하나, 오랜 기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실직·폐업상태인 경우 청약 불가</p>	<p>일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기회 확대</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0. 3말)</p>	<p>국토해양부</p>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개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실직 또는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5년 이상 근로자·자영업자로서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약기회 부여			
51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청약자격 완화 -(현행)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은 무주택자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불가 -(개선) 국민주택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애인 우선공급 시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세대주 요건 완화	시설거주 장애인에게도 특별·우선공급에 대한 청약기회를 부여하여 탈시설화 촉진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유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 6말)	국토해양부
52	○매입·전세임대 지원 대상 및 대상지역 확대 -(현행) 임대수요가 높은 수도권 소규모 도시가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고, 고시원·여인숙 등 주거 사각지대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 필요계층은 입주대상에 미포함 * 현재 주거지원 공급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이며, 취약계층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 대상임 -(개선) ①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지역을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체 시군 지역으로 확대(양주 등 10개 시군 추가) ②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매입·전세임대 주택공급(공급물량의 약5% 범위 내에서 운용)	매입·전세임대 지원 대상 및 대상지역 확대로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 *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지역에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연천·양평·여주·가평의 10개 시군 추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쪽방·비닐하우스 주거지원 지침 개정(10. 6말)	국토해양부
53	○개별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 -(현행) 개별연장급여 지급 요건 ※구직급여일액의 70%(또는 최저임금의 90%)를 60일간 지급 1.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8세미만·65세이상·장애인 또는 1월이상 요양필요 환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있는 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3. 급여기초임금일액(58천 원)·재산(재산세 7만 원 또는 1억 원)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개선)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 부양가족에 “18세 이상 학업중 자녀” 및 “소득 없는 배우자” 추가 • 직업소개 범위에 “심층상담 및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 포함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할 경우 수혜 대상이 약 34천명(78천명→112천명) 증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0. 2.말)	노동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삭제 			
54	<p>○훈련연장급여 우선고려대상자 완화</p> <p>-(현행) 경력·연령 등을 감안하여 재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대상자 중, 우선고려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재산기준을 고려</p> <p>-(개선)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p> <p>* 개별연장급여 재산기준이 기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고시를 동시에 개정하지 않아 구 고시내용을 그대로 적용</p>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업무수행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 개정 (10. 6말)	노동부
55	<p>○사회적 일자리 참여(지원)자격 요건 완화</p> <p>-(현행)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근로자는 최초 지원일(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2월 이내에 채용하여야 하고, 취약계층을 50% 채용하도록 명시</p> <p>-(개선) 2월 이내 채용 요건을 삭제하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 조정(30%)</p>	사업수행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내실 있는 사업수행 기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개정 (10. 1말)	노동부
56	<p>○직업재활훈련 대상자 확대</p> <p>-(현행) 산재보험법상 장해 1급~9급 해당자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직업재활급여로 지급</p> <p>* 훈련비 : 1인당 600만 원 한도, 훈련수당 : 최저임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p> <p>-(개선) 직업재활급여의 직업훈련비 등 지원대상을 현행 장해 1급~9급해당자에서 장해 1급~12급까지로 확대</p>	지원 대상 확대로 조기 직업복귀 및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 (연간 16,000명 추가 지원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10. 6말)	노동부
57	<p>○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현실화</p> <p>-(현행)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나, 다양하고 새로운 농작물이 재배됨에 따라 산정기준단가 품목에서 누락되거나 기준단가가 현실가격과 차이가 발생</p> <p>-(개선) 농어업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개정을 통해 품목추가 및 단가현실화</p> <p>* 09년의 경우 지원대상에 24개 품목 추가(낙지, 농어, 키조개 등) 및 19개 품목에 대해 단가 인상</p>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 부담경감 및 신속한 농어업 경영 재개 도모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고시 개정 (10. 7말)	농림수산식품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58	○일선 수협이 기금보험료 납부기한 완화 - (현행) 일선수협은 예금 등에 관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 납부기한이 농협 등과 비교 시 너무 짧아 형평성 문제 초래 - (개선) 일선수협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예금 및 적금 : 15일→30일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공제료 : 2월→3월	자금운용 수익 증대로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수협 이용자인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09년 수협이 중앙회에 납부한 신용사업 관련 보험료는 약 213억 원, 공제사업 관련 보험료는 약 11억 원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10말)	농림수산식품부
59	○어업인 부담완화를 위한 영어자금 용자금지 제한 완화 - (현행) 부정하게 용자금을 지원 받거나 수산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60일 이상 어업정지 등을 받은 자에게 6개월간 대출을 중지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상습위반자에게는 6개월씩 가산하여 대출 중지 - (개선) 대출중지기간 가산시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하여 적용(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6개월씩 가산)	위반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로 영어자금 지원 원활 *09년 영어자금 지원 규모는 1조 4,818억 원, 수혜자는 7만 2,286명이며, 개선조치 시 상습위반자 1,000여 명 중 약 800여 명이 대출중지기간 가산대상에서 제외 예상	영어자금 운용요령 개정 (10. 3말)	농림수산식품부
60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증수수료 면제 - (현행) 공증촉탁인이 시·읍·면장의 증명서로 수수료 지급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공증인의 재량으로 수수료 면제 가능 -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 반드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공증수수료 부담 경감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약157만 명)도 경제적 부담없이 손쉽게 공증제도 이용 가능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10. 2말)	법무부
61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현행)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현행법령상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됨 - (개선) 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자 적용기준 변경 : 1개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로 연금수급권 보호(약 27천명) - 소득 100만 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종전 9만 원 → 4만5천 원 <연금보험료 부담율> * 지역가입자 : 전액 본인부담(소득의 9%) * 사업장가입자 : 본인 45%, 사업주 45%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10. 12말)	보건복지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6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는 노인은 노인인구의 5.4%에 불과 *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 한국 : 5.4%, 독일 : 11%, 일본 16.8% - (개선) 2012년까지 수혜대상자를 기존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4등급 : 일어서기가 불안정하고,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조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	대상자 확대 - 연평균 대상자 수 (09) 264천명 → (12) 430천명 노인부양 가족 부담 경감 - 경제적 부담 월평균 38만 원 감소 (09.6, 한국갤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11. 6말)	보건복지부
63	○노노(老老)케어 가정에 현금보상 추진 - (현행) 요양보험 대상자 중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 없음 * 도서·벽지지역은 가족요양비 월15만 원 지급(약 900명) - (개선)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케어 가정에 현금보상	요양보험 혜택 확대 및 가족 등에 경제적 보상가능 * 요양보험 대상 노인부부 약 5만 가구 중 수혜대상 약 20%(1만 명, 월30만 원) - 정확한 지급대상범위 및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논의 진행 중 (10.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0. 6말)	보건복지부
64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현행) 중증화상환자는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화상관련 진료비 지속적 증가(06년 655억→08년 .2,159억) - (개선)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하여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5%로 인하	화상환자(2만 명)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의료비 부담경감(약80억 원) - 환자 개인당 40만 원 부담경감 효과 * 74억 원(08년 기준 재정소요액을 5%로 인하한 경우의 금액) × 10.3%(연평균 급여비 증가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10. 6말)	보건복지부
65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 - (현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 등록장애인, 주민등록상 보호자, 재외동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 (개선) 장애인 이동수단인 특별운송수단(장애인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등)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자동차 사용 편의제공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56만 건 (08년 말)의 특별운송수단(장애인특수학교 100곳,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50여곳) 차량 대상 발급 예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10. 12말)	보건복지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66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보증 대상 확대 - (현행) 신용등급이 낮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30% 이상 고금리채무를 은행권의 낮은 금리채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기금에서 보증 지원 - (개선)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보증 대상을 6등급까지 확대 지원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던 6등급 보유한 사람의 이자부담을 완화	신용회복기금 업무처리기준 개정(10. 6말)	금융위원회
67	○간판 추가설치 제한규정 완화 - (현행)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하되,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하도록 규정 *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 (개선) 전·후면의 2개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곡각지점과 동일하게 간판 추가설치 허용	간판 추가설치 허용으로 영업자 편의 제고 * 연간 3~4건씩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반복민원 해소 가능	옥 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10. 6말)	행정안전부
68	○전광류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 (현행)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 - (개선) 네온류·전광류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	영업자 부담완화 및 편의제고 * 허가 시 필요서류 (5종) → 신고 시(2종)으로 감축	옥 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10. 6말)	행정안전부
69	○선박에 상업광고 허용 - (현행) 유람선 등 선박에는 자기광고만 허용 * 사업용 자동차, 비행선, 도시철도 차량 등은 타인광고도 허용 - (개선) 선박에도 자기광고뿐 아니라 타인광고(상업광고) 허용	수상교통수단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 * 약 60개 여객선 관련 업체에서 선박 광고 가능	옥 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10. 6말)	행정안전부
70	○대규모점포 등록의무 완화 - (현행) 시장정비사업 완료후 6월 이내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 (개선) 일정기간 대규모 점포 개설을 의무화하되, 그 이후 등록을 해제	의무적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완화로 시장정비사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특별법 개정 (10. 6말)	중소기업청
7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 대상자 확대 - (현행)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대상을 사업자 등록을 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 - (개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에게도 가입자격 부여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확대 * 노점상, 트럭 운전자 등 무등록 사업자 36만여 명 혜택 추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운용요강 개정 (10. 6말)	중소기업청
7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규정 완화 - (현행) 정책자금 신청 시 정식평가에 앞서 매출액 등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 탈락하는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 - (개선) 예비평가제도를 폐지,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중심으로 평가시스템 개편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10년 9,500여 개 기업에 대해 평균 3억 원 지원 예상 (10년 예산 3.1조 감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업평가 운용지침 개정(10. 2말)	중소기업청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p>③ 미래대비</p>				
73	<p>○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회사 제외 - (현행)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 (개선)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p>	<p>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 촉진 및 지적재산권 사업화에 기여 * 현재 성균관대(삼성), 포항공대(포스코), 울산대(현대중공업), 중앙대(두산) 총 4곳에서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중</p>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6말)</p>	<p>공정거래위원회</p>
74	<p>○ 대학(원)생의 실험실공장 설립 허용 - (현행) 대학 연구시설내 실험실 공장 설치주체가 교수·연구원에 한정되어 대학(원)생은 설치 불가 - (개선) 대학(원)생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p>	<p>대학(원)생의 연구성과물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 * 대학원생 창업자 (250명 내외)중 약 10%가 실험실 공장을 활용, 창업할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기업별 약 3명, 총 75명 고용창출 예상</p>	<p>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10. 6말)</p>	<p>중소기업청</p>
75	<p>○ 국내대학의 해외분교설치 요건완화 - (현행) 국내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대학 설립과 동일한 4대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 교과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개선) 현지 국가의 대학설립요건을 충족하여 인가를 받으면 국내 설립요건을 완화 또는 배제</p>	<p>고등교육의 해외진출로 교육수출에 따른 국제화 및 고용효과 유발 * 분교설치예정 : 서울대, 고려대 등 LA 분교, 한양대 파키스탄분교, 숭실대 베트남 분교, 한국정보통신대 리투아니아 분교</p>	<p>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10. 6말)</p>	<p>교육과학기술부</p>
76	<p>○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기준 마련 - (현행)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채용하기 위한 구조·장치 변경신청시, 승인기준이 불명확·불비하여 변경 어려움 * 구조변경시 총중량변경이 수반되나 총중량 증가 시 구조·장치 변경을 불허</p>	<p>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기여 * 전기자동차 본격 양산 2년 단축 유도 (2013년→2011년)</p>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세부기준관련 고시(신설) (10. 7말)</p>	<p>국토해양부</p>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개선) 내연기관자동차→전기자동차로 변경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장치변경 기준·절차 마련			
77	○도로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용 -(현행)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용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 활성화 저해 -(개선) 도로관리상 소요전력 생산과 관련된 시설은 도로부속물에 포함하고, 도로관리청 아닌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에 포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도로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통해 사업 활성화	도로법 시행령 개정 (10. 7말)	국토해양부
78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현행) 저속전기자동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자동차 관련 기준 적용으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곤란 -(개선) 저속운행 특성을 고려해 충돌·충격시험 및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지정·운행허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	세계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있고 가격이 저렴한 저속전기자동차 내수기반 확보 및 보급활성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 4말)	국토해양부
79	○장기체류 외국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부여요건 완화 -(현행) 5년이상 장기체류한 외국 전문인력이 영주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개선) 한국어 능력요건 완화(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2급이상), 연소득 요건 완화(1인당 GNI 3배 이상→ 2배 이상)	우수 외국인재 유치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09년 말 기준, 외국 전문인력은 약 5만 명, 이 중 5년 이상 장기체류자로서 영주자격 부여요건 완화 대상자는 약 2천여 명(추정)	체류외국인관리지침 개정 (10. 9말)	법무부
80	○우수 예술·예능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현행) 예술홍행(E-6) 자격 외국인은 영주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영주자격 대상: 주재(D-7) 및 특정활동 자격(E-7), 거주자격(F-2)으로 5년이상 장기체류자 -(개선)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예술홍행(E-6) 자격자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	국내 예술·문화진흥 및 국제교류 활성화 *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 종사 외국인 약 400여 명에게 희망 시 영주자격 부여 가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10. 12말)	법무부
81	○의료분야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현행) 인쇄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허용하고 있으나, 방송광고를 금지 -(개선)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광고 허용 *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및 '방송광고 횟수 제한' 등 보완대책 병행 추진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마케팅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의료법 개정 (10. 상반기)	보건복지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8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반영방안 마련 - (현행)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이 완성단계로 진입하였음에도 전기차 충전관련 전기요금 정책이 미비 -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도 신설 검토 및 요금 차등을 통해 輕부하 시간대 충전 유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관련 선제적제도 정비로 보급활성화에 기여 * 계량기 관련 11개 기업에 391억 원 투자, 121명 고용 창출 예상	전기차 충전요금제 설계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 (10. 6말)	지식경제부
83	○연료전지 중복 인증제도 개선 - (현행) 법정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비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 시행하나, 설비인증을 위한 심사항목이 법정검사와 중복(43개 항목)되어 이중비용 발생 - (개선) 상호인증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필한 심사항목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정	기업비용 절감 * 하나의 모델당 절감되는 성능검사비용 1,000만 원 추정	KGS코드(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에너지관리공단) 개정(10. 6말)	지식경제부
84	○수소충전소 기준 마련 - (현행)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이 없이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능 * 현재는 연구개발용 수소자동차충전소에 대한 기준만 고시(연구용 충전소만 설치 가능) -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 및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코드) 제정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제도정비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 2015년까지 수소충전소 20개소 설치, 2015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3000여대 보급 전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코드) 제정 (10. 12말)	지식경제부
85	○적격투자자(QIB) 제도 도입 - (현행)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채권은 투자자보호 필요성은 적지만, 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어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에 애로 - (개선) 적격 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채권의 경우, 공시의무(신고서 제출 등)를 완화	기관투자자 대상의 채권발행의 경우, 발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	채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0. 12말)	금융위원회
86	○옥외광고업 등록 자격기준 완화 - (현행) 옥외광고업 등록 시 인정되는 기술자격 중 디자인 분야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로만 제한하고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 산업디자인 등 세부분야별로 옥외광고업 등록 시 인정되는 기술자격의 범위를 확대	옥외광고업 등록자격 범위 완화, 디자인분야 등의 창업 및 일자리 기회 확대 *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인정 가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10. 6말)	행정안전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87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 시행 - (현행) 복잡한 절차 및 방문처리 중심 행정절차로 자동차 등록 시 국민불편 발생 - (개선) 자동차 등록사무의 온라인처리제를 도입	무방문·무서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국민 편의 제고 *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구비서류 67종 감소(현행 76종 → 9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10. 6말)	국토해양부
88	○이륜자동차전국번호판 도입 - (현행) 이륜자동차의 시군별 관리체계에 따라 주소변경 시 번호판교체 등 부담발생 - (개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 체계로 개선	주소변경 시에도 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하여 국민부담 감소 * 182만 여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자 수혜 기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 12말)	국토해양부
89	○이동식 자동차 검사제도 시행 - (현행)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면 검사장비를 갖춘 검사소를 방문하여 수검해야만 함 * 스웨덴·호주 등은 검사소 없는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이동검사제 시행 중 - (개선) 이동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벽·오지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사제를 실시	벽·오지 주민의 자동차검사 수검 시 불편 해소 * 연간 5,000여 명 수혜기대(일평균 20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 3말)	국토해양부
90	○장애인차량 하이패스차로 이용 허용 - (현행)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통행료 감면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 이용 불가 - (개선) 통행료감면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자동감면시스템 도입	장애인 등의 하이패스이용 불편 해소 * 현재 통행료 감면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95만 명 수혜기대	시스템개발·보급(10. 3말)	국토해양부
91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개선 -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고, 재발급 시에도 당초 발급 시도에서만 재발급하여 국민 불편 가중 - (개선) 거주지발급 및 우편송부제 도입	자격증발급 방식 다양화로 국민 편의 제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10. 9말)	국토해양부
92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개선 - (현행) 중개사무소 확보관련 규정의 미비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 후 투기적 부동산 중개행위 발생 - (개선) 일시 영업 후 이동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제한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7말)	국토해양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93	○지적측량 민원 처리기간 단축 - (현행)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이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 이원화 - (개선) 교통발달 등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측량기간을 5일로 통일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으로 지적측량의뢰인 편의 제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6말)	국토해양부
94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사업시행자의 실제 소요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개선) 택지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소요비용에 포함하고, 소요비용에 포함되는 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범위를 확대	실투입비용 인정범위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에 따른 주택공급 촉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0. 3말)	국토해양부
95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현행)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부족하여 전국 이민자들의 폭넓은 참여 제한 - (개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대(20개소→42개소)하고, 운영비 등 지원 현실화(12억 원→28억 원)	다문화가정 등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 * 운영기관 1개소 확대시 최소 3~6명의 관련 인력 일자리 창출	운영기관 지정·공고 (10. 2말)	법무부
96	○국내 영주 외국인에 대한 귀화필기 시험 면제 - (현행) 국내 영주 외국인중 장기 거주자 등은 국민에 준하는 소양을 갖추고 있음에도 귀화시 필기시험 면제 등의 제도가 없음 - (개선) 국내 출생후 20년 이상 국내 장기거주자, 2대에 걸친 국내출생자 등에 대해 필기시험 면제	국내 영주 화교 등에 대해 국적취득절차 편의 제고 * 현재 화교 등 국내 장기거주자는 약2만여 명, 이 중 연간 200여 명에게 시험 면제 가능 예상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 (10. 6말)	법무부
97	○인적사항 변경자를 위한 출입국기록 프로그램 개발 - (현행) 인적사항 변경 시 출입국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록이 틀리거나 누락된 경우만 정정·추가 가능 - (개선) 개명 등 인적사항이 합법적으로 변경된 경우 출입국기록 정정이 가능하도록 출입국정보시스템 개편	인적사항 변경자에 대한 출입국 증명의 편의 제고 * 개명, 성별변경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반영 가능 (매년 10여건 민원 상담 제기사항)	출입국 기록 관리 및 정보화 업무처리지침 개정 (10. 2말) 정보시스템 개편(10. 6말)	법무부
98	○외국인의 기초수급 신청범위 확대 - (현행)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매우 제한적	포용적·통합적 외국인 정책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수행하여 국격을 향상	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10. 12말)	보건복지부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개선)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확대 범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후 임신을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현재 혼인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14만 명) 중 수급권자는 7000명(09.12월)		
99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시 취업 등 가구 특성을 고려치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개선) 맞벌이가구에 대해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맞벌이가구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25%)를 감액하여 소득에 합산	보육서비스 이용이 불가피한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를 통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성제고 -지원아동수 : 18천명 -예산 : 96억 원 -1인당 부담경감 : 월 52천 원~172천 원	지원지침마련 '2010년 보육사업안내' 반영 (10. 6말)	보건복지부
100	○경미한 의료기기 변경사항을 건별보고에서 연차보고로 전환 -(현행) 색상, 포장단위 등 경미한 사항도 변경시마다 보고 -(개선) 경미한 변경 사항은 연말에 종합하여 보고(연차보고)	인건비 등 행정비용 37억 원 절감 * 의료기기 변경사항 보고건수 연간 약 18,000건 감소 기대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0. 6말)	식약청

(성윤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희망근로사업 첫해 24%에 달하는 인원이 중도탈락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희망근로사업의 참여 인원 중 4분의 1이나 되는 인원이 왜 중도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사업참여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다수 참여 및 여름철(7~8월) 휴서기 등의 원인으로 포기자가 발생하였음.

○또한 희망근로가 단순 취로사업이 아닌 생산적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당초 쉬운 일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근로자들이 이탈한 것으로 봄.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볼 때 시행 3주만에 14%나

되는 인원이 중도탈락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사업 초기에 생산적 사업에 따른 노동 강도, 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주 3일 또는 1일 4시간)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되었으나,

○최근(3.16일)에는 중도포기자가 1일 300명 수준으로 감소되어 희망근로사업이 정착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지자체에서는 희망근로 지원자를 선발할 때 예비후보자들을 뽑아봤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곧 바로 충원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의 안일한 대처를 볼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의 지보다는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이라고밖에

는 판단이 안됩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근로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업 수요 등에 근거하여 예산 및 인원을 배정하였고
-대기자는 심사과정을 거쳐 참여자격을 충족한 사람들을 선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희망근로 포기자들이 속출하는 이유로 작년보다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급여가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년 시행 이후에 희망근로사업 지원자의 연령계층 분류 및 사업수행 분야와 노동강도에 대해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2009년도 희망근로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09. 11.26 기준)는 총 231,609명 중 65세이상 고령자는 71,470명(30.9%)임.
○참여자의 사업수행분야 및 노동 강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음.

말 그대로 희망근로사업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수요조사와 수행가능 연령대를 체크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TF팀에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희망근로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및 인원은 배정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신청자를 접수하여 사업별 노동강도 등을 종합한 심사기준 접수표에 의거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실효성 있고 생산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행안부 및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별 관리 및 참여자 근무상황 관리를 통해 희망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특히 현정부 들어 추진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가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고용안전망, 일자리나누기 사업, 청년인턴 사업 등 5개 중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한국노동연구원에 일자리사업 평가를 의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통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기재부입니까? 아니면 노동부입니까?

○일자리 창출정책의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정부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총리실)’, ‘실물경제 TF(재정부)’, ‘교육·인력양성 TF(교육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현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별, 지자체별 일자리창출 계획대비 목표달성 정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목표 미달의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09년부터 부처별로 집계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처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목표에 미달
* 22개 부처 일자리 목표 달성 : 104%
-목표달성 : 17개 부처
-목표 미달 부처 : 교과부 92.3%, 국방부 91.2%, 문화체육관광부 98.9%, 문화재청 98.0%, 식품의약품안전청 98.5%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 통합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일자리대책 의제 발굴 → 확정 → 점검 등 체계적으로 대응
○총리실에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대책TF」,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 및 지원해 나가고 있음.

* 고용대책 TF 외에 「실물경제 TF(재정부)」, 「교육·인력양성 TF(교과부)」를 구성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교육제도 개선 등 지원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각종 규제완화 내용 및 일자리창출 관련 규제개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핵심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폭넓은 기존규제 정비를 추진하였음.

* 2008년 908건, 2009년 963건의 규제를 정비

* 대규모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편, 산업단지 규제개선, 창업절차 간소화 등 핵심정책성 규제 정비

○또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경기 회복 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였고,

-진입규제 정비, 신성장동력 분야 규제개혁,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 실질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였음.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며,

-경제단체 등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음.

* 전경련 규제개혁만족도 조사결과

규제개혁 성과만족도 : 8.9%(08)→27.1%(09)→39.1%(1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규제개혁지침과 지침의 추진성과는 무엇입니까?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정비방향을 선정하여 규제정비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부 전체적인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정부는 규제정비지침 마련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2008년 908건, 2009년 963건의 규제를 정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며,

-경제단체 등에서도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10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이 09년에 비해 대폭 삭감된 사유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한 유동성지원 부분을 조정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09년 11.9조 원(추경포함)에서 10년 6조 원으로 감소하였음.

* 중소기업 예산 : (08) 5.6 →(09본예산) 7.8→(09추경) 11.9 →(10안) 6.0조 원

* 유동성지원 : (08) 3.5 →(09본예산) 5.4→(09추경) 9.2 →(10안) 3.2조 원

-이는 금융시장 정상화 추이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회복을 감안한 조치임.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유동성지원 부분을 제외한다면, 중소기업에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09년(추경포함)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것임.

* 중소기업 예산(유동성 지원제외시) : (09추경) 2.7조 원 →(10안) 2.8조 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지 않고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중소기업에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봄.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분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또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미래유망분야 투자, 기술혁신 역량 배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그간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 결과, 어음결제비율이 감소하는 등 하도급 거래상황이 상당부분 개선

* 하도급법 준수 비율 : (00) 18.1% → (05) 41.5% → (09) 57.1%

* 어음 결제비율 : (00) 45.8% → (05) 11.5%
→ (09) 6.8%

○그러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유용 등 전통적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화가 여전히 잔존

-중소기업을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 비용전가의 대상으로 인식

○엄정한 하도급법 집행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확산을 통해 하도급거래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

-상습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재를 강화

-상생협약*을 공기업, 유통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그 효과가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산 되도록 유도

* 10.3월 말 현재 131개 대기업이 52,789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납품단가 인상 등 총 3조 353억 원의 협력사 지원 효과 발생

대·중소기업의 상생강화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무차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장구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산해 나가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하겠음.

* 구매조건부 R&D 사업 : (09)160개 과제, 450억 원 → (10)200개 과제, 600억 원

-반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할 것임.

○중소기업 진출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나,

-사후조치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대기업의 진입 속도와 시기를 조절하고, 중소기업자가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중소기업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시기를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3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근거: 상생법)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정희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행정안전부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산업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일자리 숫자 늘리기 위해 급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의 견해는?

○정부(기재부 주관)는 규제합리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 고도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당수 사업내용이 동네마당 조성, 다문화 이민자 영어교사 활용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명품 녹색길 조성, 생태관광 자원화 등의 사업은 지역의 명품자원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었으면 하는데 행안부는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중앙정부의 추경편성 여부 등은 국가의 재정여건, 경제상황 등 종합적인 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2. 희망근로 상품권 관련
① 희망근로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방법은?

○희망근로 상품권은 광역시도에서 시군구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일괄 계약·발행하여 수요량에 따라 시군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도 또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한국조폐공사와 계약·발행하고 있습니다.

② 지자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

○2009년 기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30개 지자체에서 7,262천장(총금액 790,720천 원)을 제작·발행하였습니다.

③ 각 지자체별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도 희망근로 상품권을 별도 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발행 이유는?

○전국 30개 자치단체에서 자체 상품권이 유통 중이지만, 소규모이며 발행단가도 높고, 유통기한이 길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 VS 자치단체 상품권 : 발행액(3,840억 원 : 7.9억 원), 발행단가(평균 66원 : 113원), 유통기한(3개월 : 3-5년)

3. 지역일자리사업을 전담할 조직·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차원의 대책은?

○정부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전담할 조직·인력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지역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통해 조직·인력 보장을 독려하여

-지자체에 자체인력 재배치 및 조정을 통하여 인력·기능을 보강하여 일자리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일손부족 지역, 희망근로 예산감액
 ① 산업단지 지역에서의 희망근로 예산감액 배정사유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의견을 들었는지?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안) 수립 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시도에서의 시군구 예산배정은 시도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감액 후 특별한 지역현안 발생지역 및 09년도 희망근로 평가 우수단체, 차상위계층 신청자가 많았던 지역 등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산을 줄여 배정하면 불리하지 않는지?

○10년도에는 산업밀집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산업밀집지역의 희망근로 예산을 감축 배정한 바 있으나

-희망근로예산의 감축배정으로 인한 공공일자리 감소로 인해 피평가 지자체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 감축배정 인원을 감안하여 평가)

2. 시군구 고용조사 신뢰성
 ① 지역일자리 창출실적 평가의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10년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기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향은 결과치로서의 일자리 창출실적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및 과정도 평가에 반영하여 전 자치단체의 일자리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평가 항목은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 지역일자리 사업 기반구축 노력, 안정적 일자리 창출성과,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 최종 성과, 청년실업대책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안)는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② 시군구 고용조사의 신뢰성 담보 방안은?

○통계 전문성과 Know-How를 지닌 통계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조사표 및 조사방법을 지원 받아 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3. 지역일자리 대책과 고용전망
 ① 서울·경기도 등 현재까지 각 시도 추경 예산으로 발표된 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경예산으로 발표된 일자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0. 4. 7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

시도	추경예산	일자리 수
광주광역시	6,287	670
경기도	53,797	5,790
강원도	26,000	3,600
충청남도	39,000	2,800
경상북도	49,716	5,350

※상생발전기금은 제외한 금액임.

② 시도 추경사업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5만 4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는 1. 21일 발표된 취업전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늘어나는 일자리 수 규모는?

○1. 21 발표된 취업전망은 25만 명은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가 포함된 수치이며,
 - 우리 부는 금년도 지자체 경상경비 절감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자리사업 전액 투입으로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신규창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고용지원 등과 관련된 지자체 지역센터 등의 설치현황과 업무분장, 현재 추진 중인 역할, 노동부 지원센터 등과의 협력관계는?

○지자체 일자리센터는 취업상담·알선, 사후

관리와 각종 취업정보 제공, 구인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취업지원·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 교육·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관계는 취업알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 취업정보 공유로 일자리업무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및 노동부 센터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 1.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현황 1부
- 2. 고용지원센터(노동부) 현황 1부

붙임1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운영 현황
-----	-------------------

구분	시도 분청	시군구청(취업정보센터 포함)			
		시군구(합계)	운영 중	설치예정	계획없음
합계	· 7개 시도 운영 중 · 8개 시도 설치예정	230개	119개	33개	78개
서울	· 운영 중(09.1)	25	25	-	-
부산	· 운영 중(10.3)	16	16	-	-
대구	· 설치예정(10. 5)	8	-	8	-
인천	· 운영 중(09. 3)	10	6	-	4
대전	· 설치예정(10. 4)	5	-	1	4
광주	· 설치예정(10. 3. 30)	5	5	-	-
울산	· 설치예정(10. 4)	5	3	2	-
경기	· 운영 중(10.2)	31	31	-	-
강원	· 설치예정(10.4)	18	4	-	14
충북	· 계획없음	12	10	-	2
충남	· 운영예정(10.3)	16	5	-	11
전북	· 운영 중(07.2)	14	5	1	8
전남	· 운영 중(07) * 확대 설치 예정(10.4)	22	5	-	17
경북	· 설치예정(10.4)	23	3	20	-
경남	· 설치예정(10.4)	20	1	1	18
제주	· 운영 중(06.7)	-	-	-	-

붙임2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현황		
구분	합계	종합센터	일반센터	출장센터
합 계	81	47	24	10
서울	7	서울,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부산	3	부산, 부산동부, 부산북부		
대구	4	대구, 대구북부	경산, 대구강북	
인천	2	경인, 인천북부		
광주	1	광주		
대전	1	대전		
울산	1	울산		
경기	16	수원, 평택,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고양, 성남	용인, 김포, 광명, 시흥, 구리, 광주	평택 안성, 성남 이천
강원	7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영월	속초	태백 삼척
충북	4	청주, 충주	옥천, 제천	
충남	6	천안, 보령	공주, 서산	공주 논산, 공주 연기
전북	7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익산 김제, 군산 부안
전남	4	목포, 순천	여수	목포 강진
경북	8	포항, 구미, 영주, 안동	경주, 김천, 문경	포항 울진
경남	10	창원, 김해, 진주, 통영,	마산, 진해, 하동, 거제, 양산	김해 밀양
제주	0			

2. 2009년 희망근로 146개 사업 고용실적 및 2010년 현재 사업별 고용실적은?

○2009년 희망근로 사업 고용실적은 총 255,236 명입니다.

-2010년 사업 분야 및 사업별 고용실적

(기준 : 2010.3.3)

분야	친서민 사업		생산적 사업	
	사업명	인원	사업명	인원
합계		23,514		64,171
사업명	주거취약지역시설개선	9,625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3,066
	슬레이트지붕(집수리)	2,743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사업	813
	취약계층지원사업	4,874	공공시설물 개보수 (자전거관련 등)	18,419
	동네마당 조성사업	6,272	공공부문정보화 사업	2,897
			소기업 건설현장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창출 사업	1,545
			주민숙원사업	27,431

3. 소기업 등에 대한 희망근로자 취업지원 절차 및 임금 등 고용조건, 현재까지 실적, 지역 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는?

- 소기업 희망근로자 취업절차는
 - 구인기업과 기업취업 희망자 간에 자치단체별로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 개별 면접을 한 후
 - * 대상기업 : 노동부 빈일자리 기업 및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업
 - 자치단체와 기업 간 MOU체결, 월 60만 원 이내 지원하며
 - 희망근로 사업이후 정규직 전환 또는 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3. 22일 현재 기업취업 실적은 508개 기업 1,329명입니다.
- 희망근로자의 안정적 취업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기업체에 대

○ 취업계층 우선선발현황(10. 2월 말 기준)

구 분	채용인원	취약계층				
		계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	기타
중앙행정기관	2,146	264 (12.3%)	108 (5.0%)	28 (1.3%)	51 (2.4%)	77 (3.6%)

※기타 :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5-2 부처별·학력별 선발현황?

- 부처별 선발현황(10. 4. 1 기준)
- 학력별 선발현황(10. 2월 말 기준)

구 분	채용인원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중앙행정기관	2,146 (100%)	45 (2.1%)	219 (10.2%)	1,842 (85.8%)	40 (1.9%)

붙임 :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선발 현황 1부

5-3 09년의 행정인턴의 직무내용과 이에 대한 예로사항, 건의사항은? 이를 토대로 개선된 10년 행정인턴의 직무내용은?

○ 2009년도 행정인턴제 운영에 있어 일부 언론 등에서 단순업무 부여 및 취업 연계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적정업무 수행 및 취업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해 협약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4.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원 중 지자체 경상경비 및 절감분의 조성내역, 지자체 고용 계획, 상생발전기금 활용방안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원 중 지자체 경상경비 절감분은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축제, 행사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 구체적인 조성내역 및 고용계획은 추경일정과 함께 현재 지자체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상생발전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확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5-1 행정인턴 채용 중 부처별 취약계층 우선 선발 현황은?

- 중앙행정기관 선발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각 기관의 업무수요와 인턴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업무 분야별로 선발·배치하고,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 젊은 감각 등이 요구되는 전산·홍보·외국어 등의 사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정보보안 서비스 등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사회적 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에서의 수습

(2개월) 기회, 분야별 직무특강 등을 통해 취업 지원 및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선발현황(10. 4. 1 기준)

기관명	모집인원	선발인원	비고
계	3,000	2,771	
감사원	10	8	
경찰청	900	673	
공정거래위원회	8	8	
관세청	60	28	
교육과학기술부	120	122	
국가보훈처	15	16	
국가인권위원회	3	3	
국무총리실	8	8	
국민권익위원회	8	9	
국방부	20	22	
국세청	210	237	
국토해양부	122	140	
금융위원회	3	3	
기상청	15	8	
기획재정부	13	13	
노동부	130	116	
농림수산식품부	61	68	
농촌진흥청	30	36	
대검찰청	120	122	
문화재청	12	12	
문화체육관광부	30	30	
민주평통사무처	3	2	
방송통신위원회	22	14	
방위사업청	11	13	
법무부	208	211	
법제처	4	3	
병무청	23	21	
보건복지가족부	45	32	
산림청	23	27	
소방방재청	9	9	
식품의약품안전청	40	46	
여성부	2	2	
외교통상부	59	66	
조달청	17	16	
중소기업청	10	8	
지식경제부	375	367	
통계청	30	29	
통일부	8	8	

기관명	모집인원	선발인원	비고
특허청	20	17	
해양경찰청	120	120	
행정안전부	45	51	
행복청	3	2	
환경부	25	25	

6. 일자리 관련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 2009년·2010년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010년에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향후 지원계획은 없으며, 공공기관 인턴제 역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09년, 2010년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별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시도별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기관 인턴제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서울	185,970,335	50,556,000	3,031,880	3,013,980
부산	125,069,215	41,876,000	2,863,320	1,039,440
대구	82,772,090	34,789,000	1,840,760	699,060
인천	80,900,350	26,520,000	3,069,360	825,120
광주	46,043,500	19,312,000	1,023,880	420,200
대전	43,462,865	14,035,000	979,910	439,300
울산	31,200,425	11,480,000	687,900	339,980
경기	301,322,625	92,122,000	4,816,050	2,780,960
강원	42,479,185	12,757,000	2,474,870	1,019,940
충북	42,128,500	16,245,000	1,432,010	771,640
충남	58,628,110	22,109,000	4,315,150	1,054,320
전북	52,660,625	21,386,000	1,891,510	1,000,840
전남	57,224,160	21,272,000	1,806,320	1,249,140
경북	72,319,925	27,589,000	3,332,190	1,516,540
경남	91,277,750	28,930,000	2,887,830	1,382,840
제주	12,990,340	3,922,000	920,060	324,700

7.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자치단체와 그财源의 조성내역 및 2010년 사업계획,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한 자치단체 조합 현황 및 위탁기관 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1개를 설치하고, 16개 시도는 상생기금 관리·운

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생기금의 재원은 매년 수도권 시도의 지방 소비세의 35%(10년~19년, 10년간)로 조성되며, 금년에 3,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설립 규약(안)에 대한 16개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초에 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합설립절차 : 조합규약(안) 확정 → 16개 시도의회 의결 → 행안부장관 승인

-따라서 조합이 설립되는 5월부터 수도권 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여 기금이 조성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따라 수도권 시도는 분기별로 상생기금에 재원을 출연

○상생기금의 용도는 운용주체인 조합이 설립(5월초)된 후 조합회의에서 결정됩니다.

* 조합의 조직 : 조합회의(의결기구), 조합장(집행기관)

** 조합회의 :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

○다만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이고, 자치단체에서도 제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3.4, 전국 지자체장 회의) 시 금년에 한해 상생기금을 일자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고용상황의 심각성과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고려, 상생기금을 지역일자리사업에 전액 사용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8. 지역일자리 추진단의 지자체별 구성 현황 및 업무분장, 다른 거점센터와의 업무분장 및 협력체계, 일자리 성과창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지역일자리 추진단은 16개 시도 모두에 설치되었으며 현황 및 업무분장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역일자리 추진단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역별 고용정책심의회, 노사민정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성과창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며, 행안부에서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붙임 : 시도 일자리추진단 현황

붙임	시도 일자리추진단 구성 현황
----	-----------------

(10. 4. 1 기준)

(단위 : 명)

시도	구성 일시	인 원					주 요 업 무	비고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이하		
계		165	8	16	34	107		
서울	10.3.19	14	1	1	3	9	희망근로, 전략회의, 공동체일자리, 취업박람회, 공공근로, 인턴 등	
부산	10.1.28	5		1	1	3	희망근로, 공동체 일자리, 전략회의, 일자리센터, 취업박람회, 인턴사업 등	
대구	10. 2.9	9		1	2	6	희망근로, 공동체 일자리, CB,일자리센터인턴사업 등	
인천	10. 2. 1	8		1	2	5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전략회의, 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등	
광주	10.3.24	8	2	1	2	3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공공근로, 인턴 등	
대전	10.2.20	9	1	1	2	5	희망근로, 일자리전략회의, 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인턴 등	

시도	구성 일시	인 원					주 요 업 무	비고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이하		
울산	10.1.21	7	1	1	1	4	희망근로, 전략회의, 공동체일자리, 인턴, 일자리센터, 취업박람회 등	
경기	10. 2.1	25		1	6	18	전략회의, 공동체일자리, 희망근로,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	
강원	10.1.29	7		1	1	5	희망근로, 공동체일자리, 일자리전략회의, 취업알선, 공공근로, 인턴 등	
충북	10. 1.12	9	1	1	1	6	희망근로, 전략회의, 공동체일자리, 취업알선, 취업박람회, 공공근로, 인턴 등	
충남	10.1.18	10	1	1	1	7	희망근로, 공동체일자리, 취업알선, 전략회의, 인턴, 공공근로 등	
전북	10.1.25	20		1	4	15	희망근로, 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공공근로, 인턴, 일자리센터취업알선 등	
전남	10.2. 1	8		1	2	5	희망근로, 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센터, 공공근로 등	
경북	10.1.29	11	1	1	3	6	희망근로,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공공근로, 인턴 등	
경남	10.1.15	10		1	2	7	희망근로, 일자리창출전략회의,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인턴 등	
제주	10.1.28	5		1	1	3	희망근로, 전략회의, 공동체일자리, 취업알선, 인턴, 공공근로 등	

9. 지역일자리창출 전략회의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 내역, 안건 및 첨부서류

○지역일자리 창출전략회의는 3차례(1차-1.21, 2차-2.19, 3차-3.26)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행안부에서 주재하며 시도 부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대상입니다.

- 회의별 안건은
 - (1차) 20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추진계획
 - (2차) 20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추진계획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 (3차) 지역생발전기금 활용 일자리 조성계획 및 지자체 평가계획입니다.

○첨부서류는 붙임파일과 같습니다.
 붙임 : 1. 20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추진계획
 2. 20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

- 3.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일자리 조성 계획
- 4.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 계획

10. 2010년 지자체별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추경의 재원 및 편성계획 내역은?

○2010년 지자체별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추경의 재원은 축제, 행사 등 경상경비 절감분이며 지자체 중 부산, 강원, 경북이 4월에 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붙임 : 2010년 지자체별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 현황

붙임 | 2010년 지자체별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예산	일자리창출 사업예산
서울	21,257,300	388,626

구분	총예산	일자리창출 사업예산
부산	5,501,915	313,350
대구	5,210,140	198,400
인천	4,131,100	130,949
광주	2,931,437	273,778
대전	2,685,327	155,597
울산	1,632,681	148,636
경기	10,165,353	730,934
강원	2,898,000	151,150
충북	2,737,875	211,157
충남	3,923,540	235,716
전북	3,540,558	476,400
전남	4,386,253	428,380
경북	5,140,500	544,717
경남	4,751,972	210,013
제주	2,749,785	177,011

* SOC사업비 제외(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포함), 기초자치단체 제외

(성윤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행정인턴 관련

행정인턴 계약기간 및 급여수준의 대폭 감소는 지난해 대비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 예산 감소 이유는?

○행정인턴십은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에 대응하여 구직 청년들의 고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경제회복 전망,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관련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2. 행정인턴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와 낮은 급여로 청년층에게 외면 받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금년에는 인턴 자체에 안주하기보다는 인턴십을 통해 궁극적으로 취업역량을 높이고자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자기계발 및 취업준비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업무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 전공 등을 고려하고 세부 업무분야별로 인턴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정보보안 서비스 등 현장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 현장수습(2개월), 분야별 취업교육 등 기업수요를 받

영한 교육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청년층은 행정인턴제도가 시간낭비라는 인식인데,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정책목표 설정부터 잘못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행정인턴제가 임시적인 일자리라는 한계는 있으나, 구직 청년들에게 구직단념을 막고 직장 체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준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업무 부여와 취업교육 강화를 중점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행정인턴들을 위한 사전 적정업무 발굴과 우량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수습과정을 밟게 해 직무분야별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업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금년에는 행정인턴을 필요자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수요와 인턴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업무분야별로 선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젊은 감각 등이 요구되는 전산·홍보·외국어 등의 사업 분야에 배치하고 있으며,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정보보안 서비스 등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에서의 실무수습(2개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 등의 협조를 받아 실무수습 대상 기업의 수요를 조사 중에 있으며, 4월 중으로 기업-인턴 간 매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어마을 체험, 봉사활동, 취업특강 등을 운영 중입니다.

5.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도 달성할 수 없고, 낮은 급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젊은이들에게 장래에 대한 희망조차 줄 수 없다면, 제도자체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행정인턴제는 구직청년들의 고용 공백을 막고, 직장체험 및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일자리 창출 성과

사업명	재원	예산 (백만 원)	채용계획 (명)	채용현황 (명)	채용비율 (%)	비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지방비 (77.8/22.2)	1,707,000	250,000	259,943	103.9	2009년
		572,700	100,000	-	-	2010년
공공기관 인턴 (지자체)	국비/지방비 (25/75)	37,373	9,810	13,890	141.6	2009년
	국비/지방비(추경) (50/50)	(18,348)				
	국비/지방비 (50/50)	17,878	9,360	-	-	2010년

- 2009년 희망근로 사업 및 지자체 행정인턴 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현재 국고보조금 정산을 추진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는 2010 고용회복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를 통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 행안부·16개 시도 및 230개 전 시군구에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구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공동

(김용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관련 지자체에 지원된 예산, 집행내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 창출 관련 지자체에 예산 지원된 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행정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체일자리를 3만 개 이상 조성할 계획입니다.

3. 희망근로사업 추진성과 분석결과 일자리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총 25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위기하 고용지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09년 1~10월까지 고용동향(통계청)에 의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6월 이후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취업자 증감 (전년동월대비, 만 명)>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체 취업자	△10.3	△14.2	△19.5	△18.8	△21.9	0.4	△7.6	0.3	7.1	1.0
-공공행정 부문	0.3	2.9	6.9	7.2	8.9	26.8	31.9	32.1	32.6	33.2

4. 지자체별 청년실업 현황과 지자체의 노동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부처 간 공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자체별 청년실업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통계청에서 시도별·연령별 실업률을 분기별로 발표

○지자체의 노동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은
 -지역일자리센터와 취업정보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각 지자체별로 지역 및 고용 특성에 맞춘 지역별 취업박람회, 구인기업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등을 운영 중입니다.

○부처 간 공조에 있어서는
 -노동부와는 읍면동까지 Work-net 사용권한 및 조회항목 확대와 중앙·지방 일자리 「일모아 시스템」에 통합등록 운영을 공동 추진 중이며,
 -통계청·기재부 등과 고용통계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붙임 : 시도 청년실업 현황

붙임	시도 청년실업 현황
----	------------

시도 연령별 청년실업 현황									
(단위 : 천명, %)									
시도 별	연령 별	2009년도 실업자				2009년도 실업률			
		1/4	2/4	3/4	4/4	1/4	2/4	3/4	4/4
계	15~29세	368	351	350	320	8.6	8	8.1	7.6
서울특별시	15~29세	94	85	88	79	8.9	7.8	8.4	7.8
부산광역시	15~29세	26	23	22	26	9.5	8.4	8.4	10.1
대구광역시	15~29세	22	19	21	19	11.1	9.3	9.9	9.1
인천광역시	15~29세	22	26	19	21	8.5	9.5	7	7.7
광주광역시	15~29세	12	10	8	9	9.4	7.8	6.3	7.5
대전광역시	15~29세	13	11	12	9	9.6	7.9	8.7	6.7
울산광역시	15~29세	11	9	8	6	10.3	9.5	7.8	5.7
경기도	15~29세	88	93	104	89	8	8.3	9.2	8
강원도	15~29세	6	7	7	4	6.5	7.3	6.9	3.7
충청북도	15~29세	7	8	6	7	6.5	7	5	6.4
충청남도	15~29세	12	13	12	12	8.8	8.6	7.3	7.6
전라북도	15~29세	9	8	8	6	8.7	8.5	8.7	6.5
전라남도	15~29세	6	5	5	5	6.5	4.9	5.1	5.3
경상북도	15~29세	18	15	14	13	9.2	7.7	7.2	6.5
경상남도	15~29세	20	18	15	15	8.1	7	6.3	6.8
제주도	15~29세	2	2	2	2	3.9	3.5	4.4	4.1

* 출처 : 통계청 KOSIS (<http://kosis.kr>)

(흥희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행정인턴 사업이 올해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따라서 2010년 현재 각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된 행정인턴 현황과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과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선발현황(10. 4. 1 기준)

구 분	모집인원	선발현황	비 고
중앙행정기관	3,000	2,771	92.4%
지자체	7,020	6,419	91.4%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취약계층 선발현황(10. 2월 말 기준)

구 분	채용인원	취약계층				
		계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	기타
중앙행정기관	2,146	264 (12.3%)	108 (5.0%)	28 (1.3%)	51 (2.4%)	77 (3.6%)
지자체	5,806	419 (7.2%)	129 (2.2%)	76 (1.3%)	58 (1.0%)	156 (2.7%)

※기타 :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고교 졸업자의 비율(10. 2월 말 기준)

구 분	채용인원	고교졸업자			
		계	인문계	실업계	기타
중앙행정기관	2,146	45 (2.1%)	31 (1.4%)	14 (0.6%)	-
지자체	5,806	144 (2.5%)	66 (1.1%)	59 (1%)	19 (0.3%)

※기타 :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등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성윤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1.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육아부담 해소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패널조사 보고서’(2010.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면, 07~08년 1년의 기간 동안 조사대상 직장 기혼여성 중 27.7%가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출산·육아를 비롯한 가족의 돌봄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재 지역단위 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아 새로이 추진하게 된 가족정책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관련 업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가족의 돌봄 지원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가족의 돌봄부담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정책 협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 일반 기업에 유연근무제를 확산할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가 곤란하고, 가족의 자녀돌봄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무 비율 : OECD 평균 15.5%, 한국 9.3%(08년 기준)

○이러한 현실에서, 유연근무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부문부터 유연근무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총리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20여 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 시범 운영 실시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사례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분석, 개선하여 하반기에는 전 기관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관련 연구 등을 통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기업 워크숍, 컨설팅과 매뉴얼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새일여성인턴 (구, 주부인턴) 3개월 종료 후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 훈련 프로그램으로 09년 ‘새일여성인턴’ 3,880명을 운영하였고,

○09. 12월 기준 3,240명이 인턴 3개월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수료인원 중 3,013명이 직원으로 채용 되었습니다.(수료인원 대비 취업 인원 93%)

○위 새일여성인턴들이 취업한 직장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연계토록 하였고, 취업 인원 3,013명은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고용통계 작성 시 고용형태를 상용, 임시, 일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상용직은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을 말함.

○노동부장관 임태희

(정희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① 고용보험법상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지출액의 1.5배~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년쯤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적립배율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고용보험료율을 올리거나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였다고 해서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하향 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방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확대를 추진

□올해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요율 인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적립금이 법정 적립배율을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함(노사정합의문, 08.10.29)

②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고 고용보험기금은 고갈되어 가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미환수액만 20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실업급여 지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정수급자(%) : 07년 15,559(1.8) → 08년 19,133(1.9) → 09년 25,992(2.0)

- ① 2007년 하반기 이후 부정수급 전담팀을 설치(6개청)하고 전 지방노동관서에 부정수급 조사관(현재 전국 113명)을 배치
- ② 자동경보시스템 개발 운영(07. 7월 구축, 07.12월 개선, 09. 4월 항목추가)
- ③ 08년부터 노동행정연수원에 부정수급 교육 과정 개설(연 2회) 운영
- ④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 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부정수급액 10% → 20%, 1인당 연 500만 원)

○향후에도 현행 경보시스템의 경보 지표를 부정수급사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개연성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서 실업인정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10.2월에 상향조정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나갈 것임(5·10월).

* 06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08.4월(부정수급액의 10→20%, 상한액 100→300만 원) 및 10.2월(상한액 300→500만 원) 신고포상금 증액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① 일모아시스템은 현재 노동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지요.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3.4)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정보·통계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일모아 시스템관리대상(중앙정부사업 159개)을 중앙·지방일자리사업을 2010. 5월까지 통합 등록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맞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3.4)에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앙·지방일자리사업을 통합 등록하여 관리하겠다고 보고함.

○현재 지자체 일자리사업이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적 일자리 정보 제공이 미흡함.

-이에 따라 지자체 일자리사업은 물론, 중앙정부 일부(38개)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대상에 추가를 검토할 계획임.

* 10. 3월 말 현재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159개중) 121개 시스템 통합관리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이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작년 4월에 하겠다고 한 일모아시스템 통합관리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함. 금년 5월달에 통합 등록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로 믿어도 되는지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모아시스템 구축사업은,

-08. 5월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여 09. 1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09. 5월부터 시스템 본격 운영 중

* 10. 3월 말 현재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159개중) 121개를 시스템 통합관리

-그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일자리지원사업 정보 및 모집공고 제공(12만여 건), 중복수혜관리 등에 활용 중

* 직접일자리 452건 참여중복, 실업급여 중복 160건 1억 9500만 원 등 적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자체 일자리사업과 중앙정부 일부 사업의 일모아시스템 통합관리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임.

③ 노동부장관! 지금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

□10. 3월 현재 전국에 81개 고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종합센터 47개소, 일반센터 24개소, 출장센터 10개소

④ 노동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중 지자체로 이관할 기능은 이양하고, 나머지는 중앙본청으로 이관할 경우에 지방노동청, 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는 폐지될 수 있음.
* “취업지원, 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노사지원, 고용평등” 기능은 지자체로, “실업급여, 실업자교육, 근로감독·산업안전” 기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수행(지자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중앙에서 일괄)
이 경우 지자체의 노동관련 기능은 보다 자율성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보험 사업은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모두 국가 또는 관련공단을 통해 관리·집행하고 있으며, 선진국도 지자체에 위임·이양한 경우는 없음.

○OECD 국가들도 예외 없이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기조하에 실업급여 지급업무와 직업훈련·진로지도·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제공(종합 고용서비스)

○따라서 실업급여는 직업훈련·고용지원금·취업지원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봄.

□취업지원 업무는 현재도 국가와 지자체 모두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동 기능을 지자체로 일원화 하는 것 보다는 고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국가·지자체·민간단체 협력모델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

○현재도 지방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통해 취업지원 정보 공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 등을 하고 있음.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감독에 관한 업무는 전국단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도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노동청 및 지청을 두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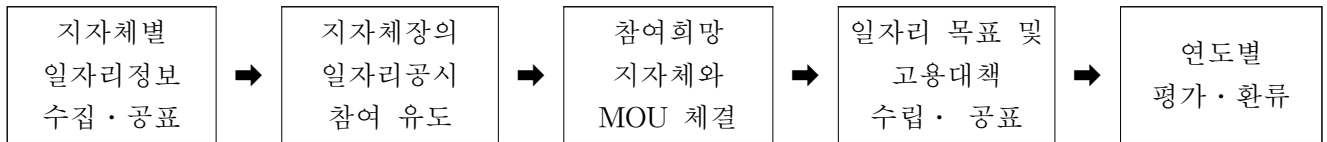
○이와 같이 노동부 업무 대부분이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이고, 행정대상이 전체 근로자, 기업, 일반국민이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노동관서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봄.

(김광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① 행안부는 지자체 일자리창출실적을 평가해 50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노동부는 지역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예산편성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두 대책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지역일자리공시제의 기본취지는 지역 일자리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업무추진 프로세스



②현재 통계청 주관 시군구 고용조사가 연1회 실시에 그침. 행안부와 노동부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통계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보고자료에 언급. 노동부가 소관부처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시군구 고용조사를 추가적으로 몇 번 더 할 계획이십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조

-따라서 참가여부는 지자체의 자율결정사항이며, 노동부는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됨.

○노동부에서는 지자체의 일자리공시제 참여·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실적 파악·평가에 필요한 통계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계지표를 개발하거나 기존지표를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제도시행은 우선 시범실시 후 제도 보안을 거쳐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지역별일자리공시제

○의의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 확보 계획 및 실적을 공시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추진방식

-노동부와 참여희망 지자체 간 MOU 체결하여 진행(자율참여 방식)

-매월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시마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지역 내 일자리 증감 등 고용상황을 공표하여 지자체의 참여 유도

○공시대상

-(일자리 목표) 현재 사용가능한 통계를 토대로 한 취업자 수 증가율, 고용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율 등

-(일자리 대책)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할 사업계획

사는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통계청이 횡수를 늘려 담당합니까? 지자체로 넘기게 됩니까?

□조사 확대 계획

○행안부에서 통계청과 공동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사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부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사업체 대상 고용조사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계획

○조사의 주체

-가구조사는 행안부와 통계청의 협의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은 통계청이 지원하고 현장조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업체조사는 노동부와 경기도의 협의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은 노동부가 지원하고, 현장조사는 경기도가 담당

③ 행안부·노동부장관님, 시군구별 고용조사 담당기관에 대한 협의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견해는?

○지자체의 직접 수행에 따른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통계청과 노동부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지역통계도 중앙기관에서 일관되게 조사하는

것이 좋으나 지역통계 수요를 현행 통계인프라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와 공동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중앙기관 조사 시 소요되는 예산과 지자체별 조사 시 소요되는 예산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

-경기지역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바,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경기도 소요예산에 지자체 수를 곱하여 예산을 추계할 경우 과대 추산될 소지가 있음.

※10년 2월 주민등록 인구 현황 전국 49,835천 명, 경기 11,506천 명(약 23.1%)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① 고용지원 등과 관련한 지역센터 등의 설치 현황과 업무분장, 현재 추진 중인 역할은? 또한 지자체와 중기청의 지역센터 등의 설치현황 및 업무분장, 협력체계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현황 및 주요 역할

○10.3월 현재 81개 고용지원센터(47개 종합센터, 24개 일반센터 및 10개 출장센터)를 설치·운영 중

구분	센터	업 무 내 용
종합센터	47개소	·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기초 서비스 업무 이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수행
일반센터	24개소	·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기초 서비스 업무 수행
출장센터	10개소	· 종합센터 하부조직으로 민원인 접근성을 위해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기초 서비스 업무 수행 (1~3명 근무)

○규모와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6개 지방청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 5개 부서로 구성

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 중

구 분	주요 내용
기획총괄과	- 인사·예산·교육·홍보·보안·시설관리 등 지원 - 직원 평가 및 성과향상 지원 - 안내 창구 운영 및 고객 서비스 향상 지원 -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계획 수립 - 연도별 부정수급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관할 지역내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지역협력과	- 지자체,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총괄 - 지방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지원 협의회 운영 - 직업안정법 운영 - 사회적 일자리 및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

구 분	주요 내용
	- 조사통계 현장조사 보고 - 관할 권역의 노동시장 조사 및 분석 - 관할 권역의 통계·노동시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취업지원과	- 수급자 취업지원,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수급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상담 및 발급 - 일반 구직자 및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 디딤돌 일자리 운영 - 구인업체 및 구직자 개척(기업지원팀 협조) - 채용대행 서비스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시행 -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상담 및 발급 - 빈 일자리 고용알선 - 심층상담 전담제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층 뉴 스타트 프로젝트 운영 -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성취, 취업희망, CAP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대학·전문계고 취업지원, 민간위탁 등 공모사업 수행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종합컨설팅 운영 - 이동·출장센터 운영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장려금 - 고용허가제 운영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모성 보호 사업 집행
직업능력개발과	- 직업훈련 과정 및 시설 인·지정, 관리감독 - 재직자·실업자 등 각종 직업훈련 지원

○고용지원센터는 대국민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취업중심형 고용지원센터』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취약계층 구직자를 중심으로 ‘Off-Line 취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 심층상담 전담제,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0 저소득 실업급여수급자 패키지 등의 사업을 취업주치의(Job Manager)제도를 통해 1:1 서비스 제공(10년, 26개 센터)

* “상설 채용관화” 운영센터에서 다양한 채용행사 진행(10.3월, 41개 센터)

*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을 추진하고,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12개 과정 개설 등 취업지원프로그램도 다양화

-청년 구직자 및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On-Line’ 취업지원 기능 강화에도 역점

△소프트매칭 검색서비스 적용 : 일자리 검색조건이 100% 일치하는 정보뿐 아니라, 임금·직종·근로조건 등이 유사한 순으로 일자리정보 제공

△e-채용마당 구축 :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간 직접 매칭의 장을 제공, 구직자가 우수중소기업 등에 온라인 상에서 직접 입사지원서 제출 가능

△잡영(Job Young) 구축 : 신규대졸자에게 믿을만한 우수중소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

□지자체의 지역센터 설치현황 및 업무분장

○지자체별로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중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설치현황>

(2010. 2. 5 현재)

구분	직영	위탁	합계
합계	110	6	116
서울	서울시(35), 종로구(2), 중구(3), 용산구(2), 성동구(3), 광진구(2), 동대문구(3), 중랑구(1), 성북구(2), 강북구(1), 도봉구(1), 노원구(2), 은평구(3), 서대문구(1), 마포구(2), 양천구(1), 강서구(2), 구로구(2), 금천구(3), 영등포구(3), 관악구(2), 강남구(3), 송파구(3), 강동구(3), 동작구(1), 서초구(1)		26
부산	시청(3), 중구(2), 서구(2), 영도구(2), 부산진구(2), 동래구(2), 남구(2), 북구(2), 해운대구(2), 사하구(3), 금정구(2), 강서구(2), 연제구(2), 수영구(2), 사상구(2), 기장군(2)		16
대구			0
인천	중구(2), 동구(1), 남구(2), 연수구(3), 남동구(2), 부평구(2), 계양구(2), 서구(2)	시청(22)	9
광주	시청(2), 서구(2), 북구(3)		3
대전			0
울산			0
경기	도청(2), 수원시(5), 성남시(4), 고양시(2), 부천시(2), 용인시(3), 안산시(6), 안양시(2), 남양주시(2), 의정부시(2), 평택시(2), 화성시(2), 광명시(4), 광주시(3), 김포시(2), 이천시(2), 구리시(2), 양주시(2), 안성시(3), 포천시(2), 오산시(2), 하남시(3), 의왕시(4), 여주군(3), 동두천시(2), 양평군(2), 과천시(2), 가평군(2), 연천군(2)	시흥시(9=시청3+위탁6)	30
강원	원주시(2)		1
충북	제천시(1), 진천군(1)	청주시(7)	3
충남	천안시(1), 보령시(2), 아산시(5), 서산시(1), 논산시(1), 계룡시(1), 금산군(2), 연기군(1), 서천군(2), 홍성군(1), 예산군(1), 태안군(1), 당진군(3)		13
전북	도청(3), 전주시(2)		2
전남	목포시(2), 순천시(2), 보성군(1), 화순군(1)	도청(3), 나주시(3)	6
경북	영주시(1), 구미시(1)	경주시(3)	3
경남	도청(2), 창원시(2), 김해시(3)		3
제주	도청(30)-구 고용지원센터		1

* 동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한 자료로 공무원 1인 타업무와 겹치하여 단순업무(워크넷 등록, 안내)한 경우 제외함

○ 동 취업정보센터는 주로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구직·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고,
- 서울시(일자리플러스 센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상담 및 창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중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내용
○ 현재 고용지원센터는 구직자 중 심층상담, 직업훈련, 각종 패키지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등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위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는 지역고용심의회와 지역고용지원협의회를 기점으로 취업포털인 Work-Net 공동 사용, 지자체 취업지원 업무담당자 교육,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업무협력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10.2.1), 서울시(10.4.1)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인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②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정권별(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기본원칙 및 방향, 목표, 각 정권에서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개수와 이에 맞추어 제시한 정책수단의 추진경과와 실적은? 또한 각 정권별로 일자리 수 등 계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김대중 정부(1998~2002)는 출범 전인 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맞아 대량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대책 수립·시행에 주력

○실업대책은 IT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 공공근로·실업급여·실직자 대부 등 실업자 생활안정대책, 해고회피 노력 지원 등 고용안정대책,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대책 등으로 구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통해 98년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127만 6000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02년간 연평균 19만 1000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

※취업자 수 증감(천 명) : -1,276(98) → 353(99) → 865(00) → 416(01) → 597(02) ; 5년간 955천 명(연평균 191천명) 증가

□노무현 정부(2003~2008)는 출범 첫해인 03년 '고용없는 성장(3%성장, 취업자 수 3만 명 감소)'에 직면하여 경제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 및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 5% 경제성장을 통한 150만 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중심으로 20~30만 개, 일자리 나누기 등 20~30만 개 일자리 발굴 목표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03.10),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마련(04.2) 등 범정부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노사정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04.2.10),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05.4), 기타 민간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충(06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전략 마련,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그러나 03년 카드사태, 경기회복 부진,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는 연평균 25만 3000명 수준

※취업자 수 증감(천 명) : -30(03) → 418(04) → 299(05) → 295(06) → 282(07) ; 5년간 1,264천 명(연평균 253천명) 증가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업대책의 틀을 크게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

-재정투입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 해소에는 부족

-국가고용지원서비스는 상당히 확충되었으나, 민간고용서비스의 발전은 여전히 미흡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로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

-외환위기 이후에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간제법 제정(06.12) 등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양극화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

□이명박 정부(2008~)는 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 극복에 주력*

○지난해에는 고용위기 상황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당초 30만 개 취업자 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7.2만 개 감소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둠.

-일자리대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를 통해 정책 개선에 환류

○금년에는 일자리 문제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경제운용에 있어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근원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강화

-특히 단기적 대응 이외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

○금년에는 고용회복 전략을 통해 취업자 증가를 '25만 명+a'(당초 전망대비 +5만 명 이상)로 제고하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여 매년 0.1%p 이상 고용률을 제고함으로써 2015년에 위기이전 고용률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 달성을 목표로 함.

③ 1998년 이후 각 정권별(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분야별(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관련 사회안전망 등)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타겟계층(소득, 연령, 산업, 직종, 종사자지위 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부의 정책수단과 타 부처와의 협의 내역, 현 시점에서의 정책수단에 대한 성과와 평가는? 각 정권별·노동정책 분야별 정책수립과 집행결과에 따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은? 이에 대한 대책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맞아 대량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실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대책 추진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대규모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안정기관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지원에 주력하는 등 범정부적 실업대책을 추진

○정권 후반기(2002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실업대책 사업을 마무리하고,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등 대상별로 특성화된 고용안정 대책으로 전환

○국무총리 소속하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와 실업대책추진 실무위원회(위원장:노동부차관)를 설치하여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하였고,

-노동부는 '실업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을 총괄 추진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추진함과 동시에 고용보험(98.10.1 고용보험 1인 이상 적용 확대) 및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

-그러나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이는 참여정부 들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로 대두됨.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

자리만들기 위원회」(04, 국무총리실)을 구성·운영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05.10) 설치·운영

□노무현 정부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회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두었음.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 가속화,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의 방향을 정립하여 추진(03.10)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04.2)

-이외에도 고용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개최(05.4)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마련·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07.7)

-여성, 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대상별 특성에 맞는 대책도 수립·시행

□이명박 정부는 경제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구축을 통한 경제의 고용창출력 회복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여 경제·산업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고,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체계 및 고령자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에는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추진 중임.

○올해 일자리 문제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10.1~)

-고용위기 대응과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에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운영(08.11)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청년, 여성, 고령자,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고용촉진 대책을 추진

○지난해에는 위기상황에서 대폭 확대된 일자리대책에 대한 종합 평가(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일자리대책

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

④ 고용통계는 시계열 자료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특정 계층의 직업이동에 대한 지표, 임금·소득·자산 계층별 이동에 대한 지표 등의 패널조사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외 사례와 함께 노동부가 시행 중인 통계지표는? 향후 추진 계획은?

□특정계층의 직업이동, 임금·소득·자산 계층별 이동 관련 패널조사에 대한 해외 사례

○외국에서는 '68년 PSID(미국) 가구패널조사를 시작으로 고용, 소득 등 노동시장 동태분석이 가능하도록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고용통계 관련 해외사례>

구분	패널규모 (최초)	조사내용	담당기관
PSID (미국) *Panel Survey of Income Dynamics	4800가구 (68년)	초기목적은 미국빈곤상태 및 변이과정 추적이었으나 이후에는 소득, 소비, 가족사, 노동시장활동, 건강, 자산, 은퇴 및 노후생활 등	미시건대학 SRC
BHPS (영국)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5900가구 (91년)	가족구성, 가구동학, 직업이동, 노동시장, 소득과 부의 분배, 주거지, 교육, 고용, 건강, 사회경제적 가치 등	Essex대학 사회경제연구소
GSOEP (독일) *German socio-economic panel	5500가구 (84년)	노동시장·실업, 소득, 조세,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직업훈련, 가구당 경제적 산출량, 기본적 가치 등 주관적 신념 등	독일경제연구소
SLID (캐나다) *The Stud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1만 5000가구 (93년)	가구경제의 동태적 변화, 저소득층 가구의 동태적 변화, 노동시장 이동, 고용 및 실업의 동태적 변화 등	통계청

*대부분의 패널유지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캐나다 패널유지기간 6년

□노동부가 시행 중인 패널조사
○노동시장 내에서의 동태적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특정계층별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가구패널조사인 노동패널, 연령층별 개인패널조사인 고령화연구패널과 청년패널조사, 특정학력층에 대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및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등이 있음[붙임참조].

□향후 추진 계획
○현행 패널조사의 안정화
-대표성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패널유지율 관리
-향후 조사방법을 PAPI방식에서 CAPI방식으

로 변경 추진
○패널조사의 정책수요 대응 강화
-노동정책 수립에 필요할 경우 부가조사 활성화 추진
-노동정책 개발에 필요한 패널조사 신설 추진
(예 : 비정규직 계층에 대한 조사 신설 등)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붙임]

<고용통계 관련 패널조사>

구분	대상	조사내용
한국노동패널 조사	도시지역 5,000가구 구축	전국 도시지역 거주 패널가구 및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해 추적조사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만45세이상 중고령자 1만명(제주 및 시설거주 제외)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 개혁 및 정책 결정을 위해 고령자의 소비 행태, 개인의 은퇴결정, 노동공급 패턴,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변화를 비롯해 제도변화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
청년패널조사	청년층 2007년 기준 만15~29세 1만 명	청년층(15~29세)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청년층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매년 대졸자(전문대 및 4년제) 18천 명 횡단면조사 및 2년 후 추적조사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경로를 추적조사하여 DB로 구축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 5천가구(제주 및 섬지역 제외)	장애인에 대한 장애특성별,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증가하는 장애인구의 고용진입 격차 해소 및 다양한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⑤ 한국은행(2009.10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이력현상이 존재하며, 특히 제조업 및 정규직, 40~50대 근로계층이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이력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중심으로 밝혀 주기 바람.

□외부충격에 의하여 한번 줄어든 일자리는 중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기

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외환위기로 둔화된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외환위기 이후에 그 이전의 추세로 복귀하지 않았고*, 외환위기 이전의 추세보다 그 이후의 추세가 더 둔화되어 있음.

* 외환위기로 4.5% 하락(97년 60.9% → 98년 56.4%)한 고용률은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는 59%대에서 정체되어 있음.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단위 : 천 명, %)

	199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7.0	7.2	2.8	4.6	4.0	5.2	5.1	2.2
경제활동인구	21,288	22,921	22,957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경제활동참가율	62.1	62.0	61.5	62.1	62.0	61.9	61.8	61.5
취업자	20,853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437
(증가율)	2.2	2.8	-0.1	1.9	1.3	1.3	1.2	0.6

	199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수)	439	597	-30	418	299	295	282	145
실업률	2.0	3.3	3.6	3.7	3.7	3.5	3.2	3.1
고용률	60.8	60.0	59.3	59.8	59.7	59.7	59.8	59.5

□노동시장의 이력현상(hysteresis)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가 있으나,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력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제조업, 상근직, 40~50대 근로자들의 경우는 여타 부문에 비해 고용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유연성 및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은 경직적인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유연한 이

중구조가 특징이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중구조 문제의 해소가 큰 정책과제임.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해고절차의 간소화 등 수량적 유연화 이외에 임금, 근로시간 및 기능적 유연화도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⑥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정책심의회 개최현황 및 참석인원, 안건 및 첨부서류, 회의결과 보고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현황 및 참석인원, 안건

구분	일시	참석인원	안 건
제21차	08.7.10 팔레스 호텔	18명	<심의사항>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개편(안) <보고사항>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2008년 상반기 고용동향 및 하반기 전망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계획
제22차	08.12.17 프라자 호텔	19명	<심의사항>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토의사항> ○노동시장 위기관리 대응방안(안) <보고사항>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 개정방향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제23차	09.6.25 프라자 호텔	15명	<심의사항> ○지역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준 고시(안)
제24차	09.8.11 조선 호텔	18명	<심의사항>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보고사항> ○상반기 고용동향 및 하반기 전망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제25차	10.1.6 메리어트	21명	<심의사항>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 계획(안)

구분	일시	참석인원	안 건
	호텔		○10년 고용전망 및 일자리 대책 추진방안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안)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안

□고용정책심의회 회의결과 보고서

○붙임 참고

[붙임]

제21차 고용정책심의회 회의결과

1.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08. 7. 10(목) 07:30~09:40, 팔레스호텔 3층 체리룸(서울시 서초구)

□참석자(위원장 포함 25명 중 18명 참석)

○노사대표 : 한국노총, 민노총, 대한상의 등 3명

○전문가 : 송실대 조우현 교수 등 8명

○관련부처 : 차관 또는 실·국장 등 6명(위원장 제외)

□심의 및 보고안건

【심의안건】

○〈제1호〉 :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제2호〉 :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개편(안)

【보고안건】

○〈제3호〉 :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제4호〉 : 2008년 상반기 고용동향 및 하반기 전망

○〈제5호〉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계획

2. 회의 주요 내용

<1>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김혜순 위원) 지난 10년간 여성 경황률이 3.0%p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5년만에 5%p 증가는 비현실적 목표로 보임.

-기본계획의 제목에 부합되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부각하는 방안 제안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기회확대가 제시되어 있으나 여대생을 위한 취업대책은 부족

○(고용평등정책관) 지난 10년간 고용이 증가하지 못한 이유에는 IMF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되며, 경황참가율 목표는 추세치를 고려하되 의욕적인 정부목표를 제시한 것임.

○(노동연구원 금재호 본부장)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력의 활성화 대책이 부족

-여성 고용의 질적 문제에 앞서 고용량이라도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나 현행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강인순 위원) 여성의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대의 경우 복지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출산·육아 부담 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

○(김상열 위원) 여성고용에 따른 의무사항은 기업의 부담도 증가시켜 결국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의 사회화 확대의 경우 소요 재원을 고용보험으로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은 생산성 증가, 비용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적절한 정책수단임.

-육아휴직 급여 지원수준 향상과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농림수산물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정부가 규제를 통해 여성 고용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함께 사용해보니 생산성이 높더라는 식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 고용을 선택하도록 정책방향을 선회할 것을 주문

-최근 농촌에 외국인 여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

○(정희선 위원) 자영업 부문에서 여성의 종사 비중이 높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족

-또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추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장보

육시설에 대해서는 의무부과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보육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수요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아 휴직 수당의 지원수준을 정할 경우에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하여 둘째나 셋째 아이가 있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검토 요청

○(조성혜 위원) 가족간호 휴직 제도는 근기법상 단기휴가 제도도 없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제도로 보임.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간접고용 차별에 대한 규제가 하도급 업체에서 인력활용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 적극적 고용개선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처벌규정은 적절할 수단으로 볼 수 없어 재검토 필요

○(고용평등정책관)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기금보다 일반회계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강제보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가져갈 계획이며

- 농촌 여성외국인의 고용촉진 대책은 이번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추진

-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정책의 경우 재원의 성격상 출산 인센티브와 연계하기는 곤란

○<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추가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편(안)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어업분야의 경우 과거와 달리 업종이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농림수산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별도로 추가해 줄 것을 요구

○(김혜순 위원) 지역마다 노령화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우선선정직종은 현실과 괴리될 우려가 있음.

○(고용평등정책관) 농림수단직종의 추가와 관련하여 정부 부문은 수요가 없어 제외했으며, 민간 부문에는 포함되어 있음.

○<위원장>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편안은 원안대로 의결

<3> 전문위원회 활동현황

○<위원장> 전문위원회 활동현황은 원안대로 접수

<4> 2008년 상반기 고용동향 및 하반기 전망

○(조우현 위원) 일자리 증가 부진에는 경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며, 특히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의 영향이 큼.

- 비정규직 보호법 영형에 대한 송실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초 비정규직이 320명 있었으며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이들 중 100명이 계약해지된 바 있고, 최근 인력이 부족하여 10명을 시간제로 채용하였으나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하락(→고용량 감소, 근로조건 악화)

○<위원장> 전문위원회 활동현황은 원안대로 접수

<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계획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계좌제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나, 시행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38만 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향후 보육에도 80만 명에게 발급할 예정이므로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여성부차관) 여성다시일하기 센터를 여성부와 노동부가 함께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노동부의 직업상담원이 파견되어 계좌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토목건축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플랜트업 인력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졸업생의 경우에도 전공을 변경하여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계좌제가 시행되도록 협조 요청

○(직업능력정책관) 기존에 비정규직 직업훈련카드제를 고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전산 영역을 뒷받침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복지부 등과 계좌제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음.

○<위원장> 전문위원회 활동현황은 원안대로 접수

3. 마무리 및 폐회

○<위원장> 고용정책심의회를 매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도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

<제22차 고용정책심의회 회의결과>

1.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08. 12. 17(수) 07:30~09:30, 프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서울시 중구 태평로)

□참석자(위원장 포함 25명 중 19명 참석)

○노사대표 : 중기협, 대한상의 등 2명

○전문가 : 송실대 조우현 교수 등 8명
○관련부처 : 차관 또는 실·국장 등 8명(위원장 제외)

□심의·토의·보고 안건

【심의안건】

<제1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토의안건】

<제2호> 노동시장 위기관리 대응방안(안)

【보고안건】

<제3호>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 개정방향

<제4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 회의 주요 내용

<1>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박기성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축 부문이 SOC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높으므로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공공부문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안 검토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를 인가로 변경

○(조우현 위원) 노동부가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조직과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

-공공부문 발주공사만이라도 단단계 하도급을 제한하고 1개월내 현금 결제를 강제한다면 고용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강인순)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고용구조 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고교졸업생에 대한 수요조사, 교육구조 개편 등을 통해 건설 기능직으로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건설업 현장에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기재부 차관보) 건설 산업의 하도급 제한 등의 문제는 노동부 소관사항이 아니며, 공정위와 조달청 소관 사항으로 향후 이를 문제로 인식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음.

-그러나 하도급 제한 문제는 경제상황과 결부해서 봐야 하며 그것이 효율적인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 필요

-한편, 지금과 같이 일자리의 양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자리 질의 개선 또는 고용구조개선이 현안인지 재검토

-건설 서비스업에서 상시고용이 바람직한지의문이므로 일정규모의 상시고용은 부작용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행안부 차관보) 일용근로자가 그날 그날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그린카드 제도의 현실성에 의문 표시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쉼터, 자재보관장소 등의 설치는 근로자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행안부는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에 직접 현금결제를 관련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음.

○(박능후 위원)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치가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계량화가 가능한 목표는 가능한 수치화 필요

○(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정한 후 위원님께 송부·확인받는 것을 전제로 수정 의결함.

<2> 노동시장 위기관리 대응방안(안)

○(김화중 위원)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5조 원은 부족하고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SOC, 창업자금 융자, 각 부처의 숙원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방안 제안

○(김희선 위원) 청년인턴십 사업이 교육훈련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조우현) 현재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는 그 성격이 달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지나야 극복 가능

-노동부가 '위기극복 5개년 계획'을 구상하고 나아가 성장 및 고용전망을 직접 발표하는 등 능동적 자세 요청

-노동부가 작성한 위기관리 대응방안은 일반적인 대책에 불과하므로 이를 ①정규 대책, ②비상 대책, ③한시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비상대책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어 '한일 또는 한중 해저터널 설치'와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한시대책으로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 대해 한시적으로 노동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획기적 대책이 요구됨.

○(강인순) 기업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과거 정부의 IT산업 단기 일자리 창출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래산업 등의 분야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인식 위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쿠퍼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토목 분야에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일부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대책 마련 필요

-또한 한중 또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권대봉 위원) 매년 57만 명의 고급인력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일자리 증가 둔화로 고학력실업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

-인력의 미스매치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병대 출신을 기능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 해외건설업체의 기능인력 양성 참여 유도, 그린잡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 덴마크의 Job Rotation 도입 등을 제안

○(행안부 차관보)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또는 자체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12.23일 시도 부지사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니 노동부 간부가 참석해 주기 바람.

○(장지중 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될 전망이므로 당장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일자리 확대를 희망

○(지정부 산업경제정책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직업훈련과 연계하고,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활용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재부 차관보) 공공근로보다는 생산적인 일자리인 녹색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임.

-향후 비상계획에는 영세자영업자 몰락, 비정규직에 대량 감원, 노숙자 문제, 3D 업종에 외국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고용정책실장) 보고된 자료는 내년도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별도의 위기관

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장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나머지 보고안건 2건은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함.

<제23차 고용정책심의회 회의결과>

1.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09. 6. 25(목) 12:00~13:30, 프라자호텔 22층 루비홀(서울시 중구 태평로)

□참석자(위원장 포함 25명 중 15명 참석)

○노사대표 : 민주노총, 대한상의 등 2명

○전문가 : 덕성여대 정희선 교수 등 7명

○관련부처 : 실장 등 5명(위원장 제외)

□심의 안건

○지역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준 고시(안)

2. 회의 주요 내용

○(정의현)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원금으로 추정 30억임. 이 규정과 관련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 규모는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함.

○(강인순 위원) 지역이 지정이 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인지.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성을 우선 지원 방안은

○(고용정책실장) 이 사업은 대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여성이 다수 사업장도 당연히 지원됨.

○(박종남 위원) 동 고시 지정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의가 없음. 다만, 기업 측에서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으로 소진하다보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걱정됨.

-기금이 소진되면 고용보험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동 제도도 기업의 구조적인 상황과 실업률 등 구체적인 판단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지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고려되어야 함.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은 긴급사업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최근 3년간 평균 20% 이상 증가하였으나, 내년 예산은 금년 대비 8% 인상 계획이며, 금년도 추경금액을 감안하면 감

액된 상황임.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축소할 것임.

-현재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되는 것이며, 지정되는 지역과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이 달라지므로, 고용개발촉진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면 이와 관련하여 재정 추계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고용보험기금 이외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음.

○(위원장)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경제가 악화되어 고용정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지면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도록 할 것임.

-기금을 필요한 사업에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동 고시안이 통과된다고 모든 신청지역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정책심의회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면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고용정책관) 지역지정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계속 시군구의 고용현황을 시물레이션 해왔음. 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시물레이션을 하였으며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시하겠음.

○(박기성 위원) 지역별로 피용자가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고용정책실장)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원에 대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는 어려움.

○(김혜순 위원)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는지

○(고용서비스정책관) 실업률 등의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 지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음.

○(위원장) 동 제도는 경제위기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도 특정지역이 어려워질 때나 특정 업체가 파산할 경우 그 회사, 협력업체와 자영업자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심의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음.

○(김혜순 위원) 시군구 단위로 볼 때 해당될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고용정책실장) 한국고용정보원 DB로 여러 차례 검토한바 현재로서는 해당지역이 없음. 평택이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어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후방 효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동 고시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 등 광범위하게 나타나기는 대단히 어려움.

-지금까지 특정지역이 급격히 악화되는 지역이 없어 그간 운영하지 못한 것임.

○(강인순 위원)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사정을 알 수 있는 통계를 노동부가 주관해서 하반기에라도 실시했으면 좋겠음. 선정 기준을 정하는 안은 찬성하지만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미비하므로 보완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음.

○(고용정책실장) 지역통계가 없음. 국가 통계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담당. 통계청은 가구 단위, 노동부는 수요측면에서 기업체 중심. 통계청이 이미 지역별 통계를 작년엔 생산하기 시작함. 통계청과 협의해서 고용통계 확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후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조성혜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고시안 문구 조정 요구. 제7조제1항에 보면 지자체 장이 노동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1항에도 불구하고”는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임. 이에 제1항에는 지정절차가 들어가야 하고 제2항에서는 “불구하고”는 삭제

○(고용정책관)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음.

○(박성수 위원)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특별지원 내용이 미미함 무급휴직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위원장)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게 됨.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기회임.

-무급휴직의 경우 월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유급휴직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원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유급휴직을 실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무급휴직 제도 우대 지원은 큰 의미가 없음.

○(고용정책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 고시안에서는 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임.

-무급 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관리비성격으로 월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임.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기준을 바꿔 보완해야 할 사항임.

○(정희선 위원) 현재 해당지역이 없다고 하니 안심이 됨.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음등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단체장이 신청하고 노동부에서 내부검토를 거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심의회 개최 빈도는

○(고용정책실장) 단체장 입장에서 그 지역이 고용지역이 악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정을 기피하는 지역도 있음 따라서 신청하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할 것임.

○(위원장) 경제위기 대책 발표 시 고용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요건을 갖춰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고시안 자구 수정 의견은 추가 검토할 예정임.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동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안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 회의결과>

1. 회의 개요

□일시·장소 : 09.8.11(화) 11:00~13:00, 웨스틴 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

□참석자(위원장 포함 24명 중 18명 참석)

○노사대표 : 한국노총, 민노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4명

○전문가 : 단국대 김태기 교수 등 6명

○관련부처 : 차관 또는 실·국장 등 7(위원장 제외)

□심의 및 보고안건

【심의안건】

○ <제1호> :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보고안건】

○ <제2호> : 상반기 고용동향 및 하반기 전망

○ <제3호> :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2. 회의 주요 내용

<1>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이 휴직기간이 불분명한 무급휴

직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측면은 아쉬움

※무급휴직 실시 회사에 대해서만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문제 제기

⇒ (고용정책실장) 무급휴직 시 회사에 대한 지원은 고용유지에 따른 회사의 간접노동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임.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 생계비 대부 제도 등 활용을 통하여 간접적 지원

○(백헌기 위원) 실질적으로 쌍용차 관련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것 같으며 실직자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

⇒ (고용정책실장) 평택지역에 대하여는 전직지원과 더불어 훈련비 및 훈련계좌제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기재부 노대래 차관보) 향후 이 정책이 실제로 고용 창출하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교 필요

-또한 보고서 중 추가지원 부분은 각 부처가 상황에 맞춰 지원할 사항이고 추후 심의회 보고도 불필요하므로 삭제 필요

⇒ (위원장) 추가조치에 대한 심의회 보고계획은 평택지역 상황의 개선을 바라는 정책방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현오석 위원) 고용유지지원금이 구조적 위기 시 지원과 일시적 위기에 따른 지원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

-또한 이직자 채용장려금에 비해 전직지원이 너무 작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균형을 맞출 필요

⇒ (고용정책실장) 동 내용은 평택시의 요구사항이고, 기존 일자리대책에 따른 지원은 담고 있지 않음.

○(유길상 위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만 나타나고 있어 훈련연장급여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언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동 대책활용 시 참고할 필요

-무급휴직자에 대한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검토하면 고용유연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위원장)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는 노조가 수용할 필요 있음.

-또한 각종 급여는 기업의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유연화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할 필요

○(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 무급휴직자 문제는 노사관계의 문제와 직결되어 민감한 사안이며 이번 지원이 평택시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

<2> 상반기 고용동향 및 하반기 전망

○(박기성 위원) 여자영자의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

○(기재부 노대래 차관보) 성장률만 가지고 고용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특히 올 11월에는 대부분의 정부대책이 만료되므로 12월부터의 고용전망이 정책당국에는 필요한 부분임.

○(현오석 위원) 고용회복이 더딜 가능성도 크며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정책 초점을 두고 훈련·취업지원패키지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위원장) 기존에 준비하던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안을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은 바 있음.

-좀 더 현실적인 중기계획이 필요하며, 그대로 따르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필요

○(유길상 위원) 하반기 전망치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빠르게 고용이 회복된다는 전망은 조심스러울 필요

○(여성부 정봉협 여성정책국장) 여성의 고용감소에 대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며, 향후 고용대책 수립시 취약계층 배려가 필요

<3>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기재부 노대래 차관보) 우리 산업구조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과잉공급산업의 업종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창출 및 고용축진은 한계가 있으며, 1인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

-훈련시장의 기능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직업훈련시장이 시장 니즈(needs)에 맞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

○(위원장) 고용의 유연화는 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이사) 고용유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또 다른 이슈는 비정규직 문제로 해고되었거나 해고위험에 처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도 일

자리대책에 포함할 필요

○(위원장)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부 입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막는다는 것이었으나, 언론이 이를 왜곡

-법 개정이 불확실하고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임.

○(민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 이러한 회의에서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어주는 입장이 되어야 함.

-토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면 성실하게 임하겠음.

○(유길상 위원) 외환위기 등 2차례 위기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용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할 것임.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 회의결과>

1. 회의 개요

□일시·장소 : 10.16(수) 11:00~14:00, 메리어트호텔 3층

□참석자(위원장 포함 24명 중 21명 참석)

○노사대표 : 한국노총, 민노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4명

○전문가 : 단국대 김태기 교수 등 13명

○관련부처 : 차관 또는 실·국장 등 6(위원장 제외)

□토의 및 보고안건

○제1호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 계획(안)

○제2호 10년 고용전망 및 일자리 대책 추진방안

○제3호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안)

○제4호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안

2. 회의 주요 내용

<1> 인사말씀

○제1의 국정과제로 일자리가 있으며, 노동부도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업무의 비중을 조정할 생각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육, 직장, 주택이 뽑혔으나, 근원적인 문제는 직장문제임.

-근원적 처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중심으로한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함.

<2>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 계획(안)·10년도 고용전망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안

○통계청의 고용통계 산출 시 좀 더 세부 직종별 일자리 동향과약을 할 필요 (복지부)

⇒ 현 통계보다 세부 직종별 조사통계의 성격 상 무리이며, 고용보험 DB를 통해 가능할지 검토하겠음(고용정책관).

⇒ 노동부-복지부-통계청간 일자리 통계에 관해 협의해 볼 필요 (위원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더 많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MOU 체결 등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 (복지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풀고 사후평가를 통해 공익성을 담보하여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기재부)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간 연계강화 전에 자활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 (이성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의 구성에 관계 부처를 모두 포함시킬 필요(복지부, 기재부, 박성희, 유길상, 여성부, 대한상의)

-준비팀 구성이 노동공급측이 대부분으로, 노동수요측 전문가를 보강할 필요

-연구소 중심인 준비팀에 정부부처의 참여를 보강할 필요

-국가고용전략의 수립에도 여성문제에 대한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준비팀에 여성의 참여나 여성고용문제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

-고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춰 현재 구성된 중견기업위원회를 활용하여 노동수요측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

○국가고용전략의 내용상 인력분야가 제외된 문제가 있음 (기재부)

-보고서 중 전문계고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이 아닌 활성화가 필요하며, 고졸-대졸자 간 임금격차 해소 노력도 필요 (조성혜)

-고용문제의 논의가 노조중심으로 되는 현실에서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 (박성희)

-디지털사회의 진행에 따라 전문지식을 활용할 일이 적어진 과장·차장 등 40대 이후 퇴직문제 관련 재취업·재교육 전략도 고민할 필요 (박성희)

-국가고용전략 내용에서 논란의 가능성이 큰 높은 단계의 내부노동시장 유연화가 빠진 상황으로 이에 대한 방향이라도 설정할 필요 (기재부)

-정부 독점의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에 요금자율화, 민간위탁 규모 확대·단가 현실화 및 성과평가가 연계된 위탁을 통해 경쟁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기관도 평가를 통해 전문

화·대형화 유도 필요 (기재부)

○대졸 실업자에 대한 기술교육에 대한 VIP 지시와 관련하여 직능원이 수행 중인 원자력 기술인력 수요 파악과 연계할 필요(직능원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여성 참여실태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여성부)

○국가고용전략 논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논의가 없는 문제(국토부)

-현실적으로 건설업은 법적 제한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나, 엄격한 법집행 시 건설업 위축이 우려

-건설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

⇒ 올해는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인해 외국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음 (위원장)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 등 그 고유목표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도 연계시켜야 함 (정희선)

⇒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리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 (중기청장)

○고용정책이 돌과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 (김태기)

-서비스업은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바 노동부가 주도해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

-고용프로그램을 검증하여 현실 밀착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지속적으로 마련·시행되고 있는 여성·비정규·청년 등에 대한 대책을 정책을 통한 보호의 우선순위에 비춰 점검할 필요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확일적 인력감축은 피해야 함 (민주노총, 한국노총).

⇒ 공공기관 선진화는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며, 일부 공공기관은 수요에 따라 인력을 증원 (기재부)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낮아지면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바,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 (중기중앙회)

○고용정책이 고용센서스(개인별 실업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 (중기중앙회)

-일자리 중개시스템 구축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시스템에 참여토록 하면 효과적일 것임.

-보육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단 등에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노인·청년 등 정책대상이 원하는 것이나 Trend를 먼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 (이성규)

○기업 측의 인력의 수요를 양과 질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취업희망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정혜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환원은 경제의 회복기조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될 필요 (대한상의)

<3>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안)

○평가 도입 초기이므로 직접 일자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 (기재부)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에 대한 사전적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

○오늘 선정된 정책 외에도 영리병원 도입, 산학클러스터, 대학정원제도 도입 등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 (기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목적의 조세지원제도로 평가는 부적절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고용영향을 평가할 필요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은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된 바, 실무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부 사업으로 범위를 좁혀 평가할 필요 (지경부)

○고용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시 충분히 의견을 들어 구성하기 바람 (위원장)

<4>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안

○동 안건에 대한 논의내용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별도로 메모보고 할 예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문제제기와 기재부 차관보의 의견 등에 대한 내용

<5> 맺음 말씀

○국가고용전략팀 구성은 관계부처의 직접참여 또는 추천 전문가 보강 등을 통해 보완하겠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은 재정투입 효과를 분석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4분기에 정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 노력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공시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정한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

○근원적 처방을 위해 경제정책 등 그동안 당

연시되어 오던 정책전반에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할 생각임.

-대외·조세·재정정책을 일자리 관점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고민

○사적 자치에 맡겨두었던 시장의 불공정성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개선할 때 중소기업에서 일할 맛이 날 것임.

○사회적 일자리·사회서비스 일자리·사회적기업 등 유사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그 성격에 대한 분석이 없음.

-이 문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분야임.

○고용창출 인프라 측면에서 관계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중계사업의 태동도 가능

-이 분야에서 노동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함.

⑦ 청년·일자리 TF의 구성 및 회의내역, 안건 및 첨부서류 사본, 회의결과 내역

□청년·일자리 TF 구성 및 안건

○구성: 노동부 고용정책관(팀장),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장,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고용서비스정책과장·청년고용대책과장(간사)

* 필요 시 미스매치대책 관련 부처 과장, 관계자 등 추가 참석

○운영: 월 1회 개최

○논의 안건

-청년 일자리 전용 홈페이지 구축 추진상황 (한국고용정보원)

-우수 중소기업 정보 DB 구축 추진상황(중소기업청)

-미스매치 해소대책 세부사업계획(각 부처 및 부서)

-청년고용대책추진단 구성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계획(청년고용대책과).

□청년·일자리 TF 회의결과(1~3차)

○붙임 참조

<붙임>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TF』 1차 회의결과 보고
<2010. 1.18, 청년고용대책과>

□회의 개요

○일시/장소: 2010. 1.18/노동부 산업안전국 회의실(과천청사3동 310호)

○참석 : 노동부 고용정책관(주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장(김남정),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조종래),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서기관(정봉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청년고용대책과장

○회의안건

-대졸 취업 준비생 전용 사이트(Job Young) 구축 추진상황

* Job Young 사이트 소개 및 시연(한국고용정보원)

-우수 중소기업 DB 구축 추진상황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홍보계획

□회의 결과

○Job Young 구축 전이라도 현행 워크넷 구인구직 알선시스템을 통해 대졸 청년층 구직등록 및 취업 알선을 적극 추진

-현행 구직 등록표를 활용하여 교과부에서 대학 취업정보실, 구직자의 온라인 직접 구직등록 등 입력 지도

-1월 중 Job Young 오픈하고, 워크넷 요건에 맞는 구직등록 정보를 소팅하여 Job Young에 등재

○직업훈련 수요조사는 현행 구직등록표에 추가하여 부가 직업훈련수요 조사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회원협회를 통한 구인개척사업(12억 원)은 1월 중 계약을 완료, 2월부터 구인개척 실시

* 사업방식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지원가능 방안 협의

○중소기업청 우수기업 정보 DB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2월 말 까지 6만 개 DB 구축 완료

-추가 기업채용정보 및 구인수요는 중소기업청과 노동부가 협조하여 지방중기청,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파악 및 입력

-기업비전 관련 기업관계자 인터뷰 정보, 동종업계 내 성장성·수익성·안전성 관련 부가정보 등 제공 추진

○홍보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참여 및 협조를 받아 비용 절감방안 강구, 터키홍보와 개별홍보 등 홍보방식은 추가 실무협의 실시

○청년 고용대책추진단 구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인력파견 협조

○미스매치 대책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추진실적을 금주부터 주간단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적 점검체계 구축

○취합된 미스매치대책 세부사업계획(국가산업단지 인력부족실태 조사 등 포함)은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배포

○향후 TF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회의는 2월 중순 이내에 개최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TF」 2차 회의결과

<2010. 2.17,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0. 2.17(수) 14:00~15:10/노동부 고용정책실 회의실(과천청사 3동 206호)

○참석 : 노동부 고용정책관(주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정병선),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김대회),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사무관(박종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서기관(편도인),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청년고용대책과장

○회의안건

-대졸(예정)자 구직·훈련 DB 구축 추진상황

-우수 중소기업DB 구축 추진 및 중소기업 채용수요조사 계획

-청년 구인DB 및 Job Young 구축상황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홍보계획

□회의 결과

<대졸(예정)자 구직·훈련수요 DB 구축>

○Job Young을 통해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한 실적을 학교·졸업연도 등을 코드화하여 집계하는 방안 추진

* 교과부에서 한고원에 학교코드 등 관련자료 제공

-기존에 개별적으로 입력된 구직·직업훈련 정보도 입력시점,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적 포함

○대학별 입력실적을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대학평가에 반영 추진

-아울러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4월이후 집행 가능)을 입력요원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활용방안 검토

○각 대학 워크넷 ID 발급 및 구직·훈련 수요조사 입력 독려, 필요 시 전산입력 방법 추가 교육 실시

* 대학 기관입력은 워크넷, 구직자 직접입력은 Job Young 활용 지도

○각 대학별 복수 아이디 발급, 대학담당자 입력실적 열람 등 교과부 요청사항 중 가능한 부분은 전산시스템 개선 등 적극 반영

<중소기업 구인 DB 구축>

○중기청에서 2월 말까지 우수 중소기업정보 5.5만 개 구축, 6월 말까지 각 부처 보유 우수기업 정보(노동부 클린사업 인증기업, 복지부 가족친화기업 등) 구축하여 Job Young 등과 공유

○중기청의 중소기업 채용수요조사* 결과, 노동부 기업채용수요조사결과·조사인원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동 활용

* 지방중기청(11개소)을 통해 정책자금·신용지원 등을 받는 약 17만 개 기업대상 조사 추진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홍보계획>

○노동부·교과부·중기청이 MOU를 체결하여 공모를 통해 턴키방식으로 홍보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각 부처 내부결재를 거쳐 추진

- 논의된 홍보 계획안, MOU안 등에 대한 각 부처 추가 제시 의견은 적극 검토

○청년창업 성공사례(VIP 지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 홍보 아이템은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TF」 3차회의 및 홍보협의회 개최결과

<2010. 3. 26,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청년미스매치대책추진단>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0.3.26일(금), 15:00~18:00/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회의실(과천청사 3동 312-1호)

○참석 :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주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장(사무관 박중환 대참),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사무관 이순석 대참), (주)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유영석), (주)지아이지오 파트너즈(박재수), (주)유브레인(강병진), 한국장학재단 홍보팀장(안대찬), 인력수급정책과장/직업능력정책과장/고용서비스정책과장(사무관 대참), 홍보기획팀장(김영수), 청년고용대책과장(간사), 청년미스매치대책추진단장

* 불참자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회의 안건

-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실천실적 전수 점검

-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종합홍보 우선협상대상자 제안내용 보장·조정

□회의 결과

<“미스매치 해소 대책”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실천실적 전수 점검>

○중기청의 우수 중소기업정보 DB 구축을 Job Young에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효율적인 채용정보 제공 추진

- 우수 중소기업 DB에 CEO의 인물사진, 회사전경, 비전 등 콘텐츠를 보장하는 방안 추가 검토

○미스매치 해소 대책이 09.12월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재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

- 특히 노동부는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을 더욱 배가할 필요

○4월에는 청년고용특위가 개최 예정인바, 3월 말 기준의 실적점검에는 더욱 적극적인 협력 필요

<“미스매치 해소 종합홍보” 우선협상대상자 제안내용 보장·조정>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인식개선관련 홍보를 KBS와 진행할 것이므로 노동부 주관 방송사인 SBS를 포함한 공중파 홍보의 다각화 필요

- 중소기업청은 KBS와 아침마당, 1박 2일, 기업열전 K1 및 별도의 정규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

○적절한 미디어 믹스가 중요한바, 공중파 방송의 경우 비용이 높아 물량이 적을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청년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우수사례 발굴과 이에 대한 홍보가 핵심임을 인식하여 홍보계획에 반영 바람.

- 이달의 히트 챔피언(우수 중소기업 사례) 등 사례발굴 및 홍보 적극 추진

- 실제 모범사례 발굴 시 노동부 운영사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등도 포함되면 좋을 것임.

○노동부에서 별개로 추진 중인 청년고용 종합홍보, “일자리·노사문화” 공동캠페인 등과 통합적인 홍보 컨셉 구축 및 중복내용 조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임.

□향후 계획

○4월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TF” 개최 및 3월 말 실적점검 실시

* 실적점검 결과는 청년고용특위에 보고 예정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종합홍보(안) 보장·조정후 장관보고 예정

⑧ 민간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구직자의 눈높이

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부·교과부 등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업무보고(p. 6~7) 등에서와 같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등과의 정보교류만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특히 사회적 인식개선, 인턴제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높은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구인난 현상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층 고용 문제는 급속한 고학력화에 비해 이들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봄.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가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행*하여 청년층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아진 반면,

* 대학진학률/졸업자 수 : (90) 33.2%, 258만 명, → (08)83.8%, 558만 명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은 점차 저하하고 있고, 공공부문·대기업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서 청년층 고용비중은 오히려 감소

* 취업계수(취업자 수/실질 GDP) : 90년(56.4%) → 00년(36.6%) → 08년(24.1%)

* 고용 탄성치(취업자 증가률/GDP 증가률) : (90)0.33 → (00)0.50 → (08)0.28

<공공행정 및 대기업의 청년층 고용 추이 >

(단위 : 천 명, %)

연 도	전 체		청년층		청년층 비중	
	공공행정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행정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행정	300인 이상 대기업
1993	607	1,818	161	715	26.5	39.3
1996	644	1,910	153	701	23.7	36.7
1999	870	1,603	158	450	18.1	28.1
2002	702	1,630	83	408	11.8	25.0
2005	791	1,917	87	485	11.1	25.3
2008	840	1,866	102	441	12.1	23.6
2009	1,032	1,983	112	417	10.9	21.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 청년층 취업난 속에서 일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일자리 중개시스템 효율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산학 연계형 교육확대 등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등의 정책노력을 지속 경주할 필요

*미스매치 관련 실태조사 자료 : <첨부 1, 2> 참조
<첨 부 1>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 결과>

□조사개요

○09.4.1. 현재 기준으로 1개월간 31,665개소 표본사업체의 상용·기타·외국인 근로자

○조사주체 및 주기 : 노동부 및 반기

□조사결과

○(부족인원)09.4.1.현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18만 명, 인력부족률은 2.1%로 전년동월에 비해 0.7%p 감소

-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16만 3000명, 300인 이상 규모사업체는 1만 7000명

- 제조업(6만 8000명), 운수업(1만 6000명), 건설업(1만 4000명) 순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만 5000명), 운전

및 운송관련직(1만 7000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만 7000명), 기계관련직(1만 6000명) 순 사결과 1·2수준의 직능과, 100인미만, 운수업과 제조업의 미충원율이 높음

○(미충원율) 09년 상반기 인력 미충원인원 조 * 08년 상반기 18.2%→09년 상반기 16.7%

<직능수준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단위 : 명, %)

구분	직능수준별		구분	기업규모별		구분	산업별	
	인원	%		인원	%		인원	%
계	66,347	16.7	계	66,347	16.7%			
1수준	26,209	17.2	100인미만	51,089	18.8%	운수업	6,867	34.1
2수준	23,467	18.8	100~300	7,113	12.3	제조업	22,111	25.3
3수준	15,320	14.5	300인이상	8,145	11.9	전문, 과학및기술	4,200	20.9
4수준	1,351	9.4						

* 1수준은 무경험자, 학력무관, 2수준 2년 현장경력 기능사 등, 3수준은 2년~10년 현장경력 또는 대졸/석사수준, 4수준은 10년 경력자, 기술자 및 박사

○(미충원 사유) 영세기업일수록 해당직종을 적합인력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기업규모가 클 수록 원인으로 생각함.

<사업체 규모별 미충원사유>

(단위 : %)

구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격심한 인력유치경쟁	10.8	7.1	9.3	13.7	18.5
해당직종에 원하는 자 없음	32.2	26.8	25.9	19.9	13.1
근로조건이 구직자와 불일치	16.2	16.8	16.1	17.0	11.1
요구하는 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 없음	16.2	21.4	24.9	25.6	31.6
업무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음	9.4	11.4	11.0	10.5	12.9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음	8.1	7.1	6.1	6.3	9.8
해당 직종 발전전망 없음	1.0	0.6	0.2	0.8	0.5
통근이 어렵기 때문	3.5	6.6	4.5	3.2	0.3
이유없음	2.8	2.2	1.9	3.1	2.3

* 노동부 2009년 상반기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중복응답)

○(부족인원 해소노력) 사업주는 인력부족에 대하여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사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비율이 31.0%

- 300인 이상은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생산설비 자동화, 채용경로 변경 조치를 하고, 10인 미만은 무조치가 많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력 해소노력 실태>

(단위 : %)

구 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48.0	54.8	59.2	64.4	71.4
채용비용 또는 광고비용 증액	12.1	12.3	13.4	16.0	17.2
생산설비 자동화	18.8	25.5	32.2	38.5	39.0
채용예정자 직접적인 인력양성	21.1	26.0	28.8	31.4	39.6
구인방법 도는 채용경로 변경	38.2	41.3	44.3	46.2	45.5
외국인 인력 활용	6.2	9.2	10.7	9.2	4.3
임금(급여) 인상	26.5	26.1	22.5	20.4	19.6
아무것도 하지 않음	31.0	22.4	17.5	14.0	10.8
기타	8.4	7.9	9.2	8.1	9.5

* 노동부 2009년 상반기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중복응답)

<첨 부 2>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미스매치 실태조사>

□조사개요

○09.2.2.~2.9. 중소기업 300개, 서울·경기지역 소재 10개 대학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소기업은 전화조사, 대학생 면담조사)

○조사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중소기업과 대졸자의 희망임금의 차이) 중소기업은 대졸자 초임으로 2,000~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으나, 대졸자는 2,500~3,000만 원 지급받기를 희망

구분	1,500~2000	2000~2500	2,500~3000	3,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	13.3%	61.0%	21.3%	4.4%
대학생	8.0%	27.7%	44.3%	20.0%

*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미스매치 실태조사(09.3.9.)

○(중소기업 및 대학생이 생각하는 미스매치 해소대책)중소기업과 대학생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

-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근로자 능력개발을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도	<대학생>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
①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①중소기업 경영 및 채용정보 공개
②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②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③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③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노력
④우량 중소기업 인증사업 확대	④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⑤대학생 중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 확대	⑤대학생 중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 확대

⑨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1998년 이후 변경내역 등과 남성의 유급휴직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물으심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1998년 이후 변경내역은?

<1> 산전후휴가제도(산전후휴가급여 포함)

○제도개요

-출산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후 90일(산후 45일 보장)의 보호 휴가를 주도록 하고

• 산전후휴가기간 중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135만 원 한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 기간에 대해 고

용보험에서 지원

○변경내역

-53. 5월 60일의 산전후휴가제도 도입(근로기준법)

-01.11월 산전후휴가기간 90일로 확대(최초 60일 유급)

-01.11월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신설(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부담)

-06.1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전후휴가급여 90일 전액 지원

-06.1월 유사산휴가제도 신설 및 급여지원

-07.4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규정 신설

-08.12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도 신설

○활용현황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인원	2	22,711	32,133	38,541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금액	2	22,602	33,522	41,610	46,041	90,886	132,412	166,631	178,477

○향후 개선방안

-산전후휴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임신 유지를 위한 응급상황 발생시 산전후휴가 분할사

용 허용 추진

* 10.7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

○주요국의 사례

<각 국의 산전후휴가제도>

국가명	휴 가 기 간	급 여 수 준	
영국	52주	• 첫 26주간 유급(6주간 평균소득의 90%, 20주간은 상한 있는 정률액) • 다음 26주는 무급	국가보험 (National insurance)
캐나다	15~18주 (주마다 다름)	• 임금의 55%	부모보험 (Parental insurance)
일본	14주	• 임금의 60%	건강보험
독일	14주	• 통상임금에서 법적 공제금(각종 세금, 사회보장보험료)을 제외한 순수임금, 1일 최고 13유로	건강보험

○효과(성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 요인 해소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2>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포함)

○제도개요

-만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기간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 변경내역
 - 88.4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제도 도입(남녀고용평등법)
 - 95.8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부모 중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남녀고용평등법)
 - 01.11월 육아휴직급여제도 신설(고용보험법,

월 20만 원)

- * 01년 20만 원 → 02년 30만 원 → 04년 40만 원 → 07년 50만 원
- 08.1월 육아휴직대상 근로자 자녀 연령 확대(만 1세 미만 → 만 3세 미만)
- 10.2월 육아휴직대상 근로자 자녀 연령 확대(만 3세 미만 → 만 6세 이하)
- 활용현황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인원	25	3,763	6,816	9,303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금액	5	3,087	10,576	28,803	28,242	34,521	60,989	98,431	139,724

- 향후 개선방안
 - 휴직 후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
 - * 일본은 75%를 육아휴직기간동안, 나머지

-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
- * 10.7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
- 주요국의 사례

<각 국의 육아휴직제도>

국 가	휴가 기간 및 종류	급여수준
그리스	○부모 각각에 대해 3.5개월간 육아휴직	○무급
네덜란드	○부모 각각에 대해 3월간 육아휴직(8세 까지)	○무급
뉴질랜드	○1년간 육아휴직	○무급
독 일	○3년간 육아휴직(3세 까지)	○2년간만, 300EUR(06)
미 국	○12주간 출산, 입양 휴가	○무급
벨기에	○3개월 육아휴직(4세 까지)	○정액제, 537EUR
스웨덴	○480일 육아휴직(8세 까지)	○80%
스페인	○3년간 육아휴직(3세 까지)	○무급
아이슬란드	○3개월간 육아휴직(출산휴가, 부친휴가, 육아휴직의 총 9개월은 아동이 18개월이 될 때까지 나누어 사용)	○80%
영 국	○13주간 육아휴직(5세 까지)	○무급
오스트리아	○3개월간 육아휴직(2세 까지)	○무급
이탈리아	○아동마다 11개월을 부모가 공유(8세까지, 입양의 경우 6세)	○3세미만 : 30% ○3세이상 : 무급
일 본	○1년간 육아휴직(1세 까지)	○40%
캐나다	○35주간 육아휴직	○55%
포르투갈	○6개월간 육아휴직(아동 2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	○무급

국 가	휴가 기간 및 종류	급여수준
프랑스	○3년간 육아휴직(입양일 경우 1년, 3세 까지),	○첫째 무급, 둘째부터 2년간 정액, 521EUR
핀란드	○26주간 육아휴직(1세 까지)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휴가	○70% ○정액
호 주	○52주 출산휴가	○무급

○효과(성과)
-육아휴직 및 급여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도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도개요(변경내역 포함)

-08.6월부터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15~30시간 이내)를 도입·운영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 (07.12.21개정, 08.6.22 시행)

-08.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월20만 원)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08.4.30개정, 08.

6. 22 시행)

○활용현황

-08.6월~09년까지 10개사업장 31명 활용

○향후 개선방안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도입 추진

•근로시간 단축비용에 따라 육아휴직급여(50만 원)의 일부를 1년간 지원

* 11년도 시행을 목표로 11년 중기예산에 33억원(고용보험기금) 요구 중으로, 금년 중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예정

○효과(성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방지와 업무숙련도 마모 방지, 소득감소 완화, 고용연속성 보장 등이 가능

○주요국의 사례

<외국의 입법례>

국 가	주요내용
일 본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1~3세 미만의 경우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Flexible Time, 시업 또는 종업시각 변경, 보육시설 설치 등)를 취할 것을 사업주 의무화 △3세 이상~초등학교 입학까지 : 위 조치에 대해 사업주의 노력의무 부여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 임금은 단축 전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결정
스웨덴	△자녀가 8세 될 때까지 유급 육아휴직(480일 중 한 부모 최대 420일 사용 가능)을 전일제와 파트타임제 중 선택 사용 가능 * 하프타임, 쿼터타임, 1/8타임 등 하프타임 2일이 풀타임 1일로 계산
덴마크	△32주 동안 주어지는 육아휴직을 파트타임으로 활용 가능하고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 총액 수급이 가능 * 사용예 : 반일제 근로로 복귀 시 64주 동안 육아휴직 가능
노르웨이	△육아휴직이 전일제,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운영되며 당사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조정

국 가	주요내용
프랑스	△자녀 3세까지 전일제와 파트타임제로 운영 *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시간의 1/5이 단축될 수 있는 파트타임제 운영
중 국	△아동 연령 12개월까지 여성에게는 1일당 1 유급근무시간 동안 아동의 식사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
인 도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파트타임 근무. 일시적인 근무 시간의 변경, 또는 탄력적 근무를 요청할 권리를 갖음 * 가족휴가(family leave) 항목에 포함
싱가포르	△공공부문에서는 파트타임 고용제도(PTES : The Part-Time Employment Scheme) 운용. 일·가족 양립을 위해 주당 11~36시간 사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 가령 매일 일정 시간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3일 혹은 4일만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대 만	△1일 1시간 단축(단축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또는 근무시간 조정 가능

□영아를 가진 남성에 대한 일정기간 강제 유급휴직제도 도입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또한 이와 같은 남성 유급휴직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는?

○육아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과 출산율 제고 등 남성에 대한 일정기간 강제 유급휴직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제도도 부모가 각각 교대로 육아휴직을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부모 총 2년사용가능)

• 한 쪽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그 기간만큼 소멸되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남성 할당기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할 경우 여성이 대부분 육아를 부담하는 현실에서 여성과의 형평성 논란 야기

• 여성 홀별이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추가 유급 할당기간 부여 시 유급의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 기업의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은 시기상조
※평균 육아휴직기간 : 08년 246일(여성), 202일(남성)→ 09년 276일(여성), 215일(남성)

○당분간은 휴직 부담이 비교적 적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중점 홍보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음.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할당하고, 미사용 시 소멸토록 하고 있음.

국가	휴가기간	정부지원	비 고
네덜란드	12월 중 6월	무급	부친의 미사용 시 소멸
스웨덴	18월 중 1월	임금 80%	부친의 미사용 시 소멸
노르웨이	52주 중 4주	임금 100%	부친의 미사용 시 소멸

⑩-1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규정과 1998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변경내역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적용
○공무원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법 제

27조)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3% 미만이면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 실시,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 가능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준용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검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은 적용 제외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매년 1.31.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은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제외

※의무고용률 산정 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중증 1명 = 경증 2명)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적용(법 제 28조의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매년 3.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의무고용률 미달 시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고용 사업주 제외)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다음해 3. 31.까지 납부

※고용부담금은 월 부담기초액(10년 경우 월 530,000원)의 연간합계액으로 하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1명 미만의 단수 버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명당 월 26만5천 원을 가산

※개정된 의무고용률(2%→3%)에 따라 추가되는 고용부담금은 시행일인 10년부터 3년간 1/2 감액

※의무고용률 산정 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중증 1명 = 경증 2명)

<3> 민간기업 및 국가·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적용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주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

※의무고용률 단계적 적용 : (10~11년) 2.3% → (12~13년) 2.5% → (14년~) 2.7%

○민간 사업주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매년 3.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고용 사업주 제외)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다음해 3.31.까지 납부하여야 함.

※국가 및 지자체 근로자는 고용부담금은 부담하나 장려금 제외

※고용부담금은 월 부담기초액(10년 경우 월 530,000원)의 연간합계액으로 하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1명 미만의 단수 버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명당 월 26만5천 원을 가산

※의무고용률 산정 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중증 1명 = 경증 2명)

□1998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변경내용
<1> 정부부분 장애인고용 의무화 【00.1.12, 법률 제616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기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 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 조정

<2>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 확대 및 가산금 제도 시행 【04.1.29, 법률 제7154호】

○의무고용사업주 대상을 종전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제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며 그 금액도 최초 5년간은 2분의 1을 감면

-200~299명 : 06년부터 납부의무발생(07년 최초납부)

-100~199명 : 07년부터 납부의무발생(08년 최초납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감액(09.10.9 법개정으로 폐지)

○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

<3> 고용률 적용제외율 축소·폐지 【05.5.31, 법률 제7568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축소>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의 범위를 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축소

○<민간부문 폐지>

민간부문 적용제외율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서 증가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단계적 감면

<4>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 기준 개선 【05.12.30, 법률 제7828호】

○건설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에 의하도록 함

<5>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도입 【07.7.13, 법률 제8507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당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포함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설립하는 경우 의무고용률 산정 시 자회사 근로자를 모회사 근로자로 인정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률 상향조정 【07.12.27, 법률 제8817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애계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 수가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09.1.1.시행)

<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 【09.10.9, 법률 제9791호】

○1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종전 2%에서 국가 및 지자체와 동일하게 3%로 상향조정하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민간 기업과 같이 장애인 고용의무제* 적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의무고용률 미달시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일반 장애인의 2배수를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 (1.5배→2배로 개정)

⑩-22000년 이후 정부 및 민간부문 의무고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구 분	합계	정 부 부 문					민간부문		
			소계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계	민간기업	공공기관
2000	적용대상인원	2,251,698	274,702					1,976,996		
	고용의무인원	44,975	5,452					39,523		
	장애인	18,499	4,065					14,434		
	고용률(%)	0.82	1.48					0.73		
2001	적용대상인원	2,292,414	274,488	77,859	11,555	137,837	47,237	2,017,926	1,859,848	158,078
	고용의무인원	44,804	5,490	1,558	232	2,757	945	39,314	36,189	3,125
	장애인	22,060	4,420	1,107	73	2,533	707	17,640	14,739	2,901
	고용률(%)	0.96	1.61	1.42	0.63	1.84	1.50	0.87	0.79	1.84

연도	구분	합계	정 부 부 문					민간부문		
			소계	중앙행 정기관	헌법 기관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	소계	민간기업	공공기관
2002	적용대상인원	2,378,485	281,454	78,012	11,925	143,336	48,181	2,097,031	1,970,913	126,118
	고용의무인원	46,490	5,631	1,561	239	2,867	964	40,859	38,382	2,477
	장애인	25,385	4,676	1,216	92	2,645	723	20,709	18,265	2,444
	고용률(%)	1.07	1.66	1.56	0.77	1.85	1.50	0.99	0.93	1.94
2003	적용대상인원	2,390,768	289,158	78,254	12,085	149,496	49,323	2,101,610	1,977,253	124,357
	고용의무인원	46,801	5,830	1,595	244	2,997	994	40,971	38,527	2,444
	장애인	28,139	5,421	1,380	132	2,964	945	22,718	20,655	2,063
	고용률(%)	1.18	1.87	1.76	1.09	1.98	1.92	1.08	1.04	1.66
2004	적용대상인원	3,847,875	297,505	78,010	12,887	155,727	50,881	3,550,370	3,428,192	122,178
	고용의무인원	69,108	5,996	1,585	260	3,122	1,029	63,112	60,731	2,381
	장애인	52,753	6,079	1,528	152	3,326	1,073	46,674	44,222	2,452
	고용률(%)	1.37	2.04	1.96	1.18	2.14	2.11	1.31	1.29	2.01
2005	적용대상인원	4,000,662	305,067	76,480	13,428	163,089	52,070	3,695,595	3,553,762	141,833
	고용의무인원	71,875	6,147	1,556	270	3,269	1,052	65,728	62,952	2,776
	장애인	61,862	6,853	1,647	169	3,755	1,282	55,009	51,481	3,528
	고용률(%)	1.55	2.25	2.15	1.26	2.30	2.46	1.49	1.45	2.49
2006	적용대상인원	5,801,788	812,656	165,145	21,174	238,419	387,918	4,989,132	4,811,370	177,762
	고용의무인원	107,369	16,292	3,327	425	4,774	7,766	91,077	87,593	3,484
	장애인	79,480	12,219	3,223	264	5,381	3,351	67,261	63,422	3,839
	고용률(%)	1.37	1.50	1.95	1.25	2.26	0.86	1.35	1.32	2.16
2007	적용대상인원	5,807,665	822,590	172,640	19,688	247,911	382,351	4,985,075	4,69,6744	288,331
	고용의무인원	107,012	16,497	3,479	395	4,968	7,655	90,515	84,872	5,643
	장애인	89,546	13,142	3,488	311	5,793	3,550	76,404	70,754	5,650
	고용률(%)	1.54	1.60	2.02	1.58	2.34	0.93	1.53	1.51	1.96
2008	적용대상인원	6,035,950	824,164	172,754	20,377	244,067	386,966	5,211,786	4,923,561	288,225
	고용의무인원	111,043	16,526	3,478	409	4,891	7,748	94,517	88,872	5,645
	장애인	104,132	14,468	3,774	341	6,551	3,802	89,664	83,765	5,899
	고용률(%)	1.73	1.76	2.18	1.67	2.68	0.98	1.72	1.70	2.05

* 06년부터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찰·군인·소방·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

⑩-3규정 위반에 대한(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현황

(다음 페이지에 계속)

□98년 이후 고용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천 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현황	부담기초액
		수납률				
'98	83,804,750	79,699,476	95.1	4,099,089	2개소, 6,186	190천 원
'99	77,996,223	73,726,620	94.5	4,269,603	9개소, 47,258	202천 원
'00	67,411,938	62,888,548	93.3	4,523,390	-	207천 원
'01	76,728,638	72,080,882	93.9	4,076,307	81개소,571,449	253천 원 (1% 이상:216천 원)
'02	92,435,304	89,345,105	96.7	3,005,028	9개소, 85,171	316천 원 (1% 이상:273천 원)
'03	107,368,317	104,301,440	97.1	3,066,877	-	392천 원
04	122,570,383	119,158,680	97.3	3,065,964	20개소,345,739	437천 원 (서울2,남부17,부산1)
05	129,924,012	126,408,803	97.3	3,184,882	16개소,330,327	482천 원 ※최초 대비 301.7% 상승
06	140,883,813	136,948,302	97.2	3,849,999	85,511	500천 원 ※1% 미만 50%가산, 중증 50%감액
07	158,597,988	152,032,893	95.9	5,335,924	1,229,171	500천 원 ※1% 미만 50%가산, 중증 50%감액
08	153,351,634	144,090,338	94.0	8,533,871	727,425	500천 원 ※1% 미만 50%가산, 중증 50%감액
09	154,422,999	145,412,763	94.2	4,997,485	4,012,751	500천 원 ※1% 미만 50%가산, 중증 50%감액

* 징수금은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임

* 00~01년 부담기초액은 12월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함

⑪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임시·일용직의 급증,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고용보험 등 실업자, 고용이탈자 등에 대한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부분의 경제전문가가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이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부가 직접 수행하

거나 수집한 실태조사, 용역 등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부가 발표한 정책수단(Action plan)을 주요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일지 형식으로 제출하기 바람.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는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 일자리 창출형 투자 부진, 취약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 중소기업의 과소 고용을 유인하는 불공정 거래 등을 들 수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미흡한 직업능력개발 투자, 인력수급 미스매치, 취약한 사회안전망,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경제성장과 연계된 고용정책 개선방안(별도 송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된 구조적인 원인은

○97년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비정형근로자(비정규근로자) 등이 급증하면서 고용상의 차별과 남용, 임금 및 복지 격차 문제가 대두

○또한 외환위기 시 구조조정 및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 자영업자 규모 : (98) 562만 명 → (02) 619만 명
-양질의 창업보다는 음식업, 도·소매업 중심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아 고용의 질이 저하

* 2007년 연 소득 2000만 원(월 167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 약 226만 명, 총 신고자 307만 명 대비 74% (2008년 국세통계연보)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고용없는 성장’ 문제는 2003년부터 대두(3% 경제성장, 취업자 수 3000명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제1차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2004~2008)」을 수립·추진하였음.

※제1차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별도송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상황 극복에 주력하였고, 금년부터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구조적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안건(별도송부)

① 제1차 :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방안,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방향

② 제2차 :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인문계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

③ 제3차 :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

□기타 외환위기 이후 주요 고용대책은 각 년도의 노동백서에 수록되어 있음.

⑩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예

결위에서 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 관련 모든 예산에 대해 평가·분석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분석자료와 조치내역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지난해 정부 일자리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인턴, 사회서비스일자리,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자리 나누기, 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별도송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며,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음.

⑬ 복지관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해 복지 관련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노동부는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해 추진한 정책수단을 주요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기 바람.

□지역공동체가 무너진 시대에 육아와 보육, 노인 간병 등 복지영역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복지관련 일자리는 복지와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고 봄.

□08년도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방안에 대해 연구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별도송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나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라는 비판이 있어

○우리 부에서는 범 정부적 협력하에 수익모델화를 유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하여 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바 있음(연구보고서 별첨).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

(10.3.5) ·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전략분야별 사회적기업 전환 모델 발굴 등을 위해 부처 간 MOU 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될 경우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확충되고 폭넓은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충될 것으로 판단됨.

(성윤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특히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향후 10년간 해마다 18만 30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국가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사회 전반적 악영향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생산성 저하 → 저축·소비·투자위축 및 재정수지 악화 → 경제활력 저하

-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사회보장비 증대로 세대 간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됨.

② 베이비붐 세대 고용지원 문제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수행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셨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지원,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확대, 취업지원을 위한 중견전문인력취업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확충

- 다만, 이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이외에도 기업의 고용형태·노조의 관행 개선 등이 필요하므로 노동계, 경영계,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 동참이 필요함.

○노·사·정 간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 7, 노사정위원회에 관련 위원회가 발족되어

- 올해 안에 기업의 경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제고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관행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주요의제(안) : ①중고령자 친화적 임금·근로시간·퇴직제도 개선방안, ②직업능력 개발 및 전직지원 등 중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 ③근로유인 촉진을 위한 소득보전 방안, ④기타 중고령자 고용 관련 인프라 확충 및 노사 역할 등

(김용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① 장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적 요인, 계절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청년 전용 일자리 시스템(Job Young)을 오픈하여 우량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DB를 구축, 보다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

- 또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폴리텍 대학 특별과정 운영 등 적합한 직업훈련을 제공, 취업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창업·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그 희망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턴 십제도 등을 운영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여 나가고,

-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강화를 위해 대학과 전문계고에 진로·취업 전문인력인 「취업지원관」채용을 지원할 계획임.

②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효기간 내 사업별 청년실업해소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는 했습니까? 5년동안 추진한 성과는 어떠합니까?

○정부는 청년실업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옴.

- 법제정 이후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대책(05. 1), 청년실업 보완대책(07. 4), 「글로벌 청년리더 양

성계획」 수립(08.4), 「청년고용촉진대책」 수립(08.8), 「청년고용추가대책」 수립(09.3),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대책」(09.12) 등을 수립·시행

○그간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청년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청년층 친화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 확산 방지,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 취약청년층에 맞춤형 취업기회 제공, 청년고용 인프라추진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음.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는 높은 진학률에 따른 고학력화, 고학력과 매칭 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고용 없는 경제성장, 대·중소기업 간 근무여건 격차문제 등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교육·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③ 동법의 유효기간 내 또는 만료이후 정책평가, 성과 분석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의거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04.11~08.4)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10.4~)를 구성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부처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음.

○총리실 주관 2009년 정부업무평가 핵심과제

○최근 5년간 연도별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실적

구분	예산			인원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2005	69,259	59,744	86.3%	21,986	20,588	93.6%
2006	126,924	126,705	99.8%	39,050	40,121	102.7%
2007	155,737	153,813	98.8%	47,517	47,303	99.5%
2008	106,438	79,775	74.9%	42,831	27,118	63.3%
2009	52,099	22,275	42.8%	18,700	8,512	45.5%

⑦ 동 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8. 2. 29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폐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 소속(위원장 총리)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효율적

로 “청년고용촉진 강화”를 선정하여 정책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 그 외 청년실업문제를 매년 노동부 자체 평가에 포함시켜 평가해 오고 있음.

④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한시법인 특별법까지 만들어 5년 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성과분석이나 정책평가가 없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09.10.9)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3의 정책평가 결과 등을 참고

⑤ 동 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조세감면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세감면은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보조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일반기업과 같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조금 규정을 두는 것은 중복 논란이 있어 규정하지 않음.

⑥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비용 또는 일부를 지원한 연도별 실적

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것이었음(08.1.21 안상수 의원 발의).

⑧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법을 개정하여 시한 연장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지난 1.26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① 두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② 폐지된 위원회를 부활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③ 향후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 폐지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쉽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나

- 신설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부처 중심의 책임 행정체제 강화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 구법에 의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을 유인 또는 창출한다는 적극적 개념보다는 실업 해소라는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 고용촉진을 하려는 신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음.

⑨ 청년은 만성실업, 중고령은 고용불안, 생계형 자영업자는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퇴출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우려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 노동부는 올해 청년, 여성, 고령자, 근로빈곤층(생계형 자영업자 포함)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청년) 청년인턴제 등 단기대책은 청년층 고용상황을 감안해 규모를 조정하면서 내실화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

- 청년들이 보다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자 80만 명, 중소기업 6만 개의 상세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일자리 매칭 지원(Job-young 개통)

-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직·창업을 활성화하고, 산학간 협약에 의한 인력 양성, 기업의 채용 수요에 따른 맞춤형 훈련으로 취업능력 제고

- 기타 취업지원관을 활용하여 학교의 취업기능을 확충(진로취업상담, 구직자 DB구축 등)하고 창업·창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조기업이 청년일자lichang출의 방안이 되도록 지원

- 아울러 중소기업 일자리는 무조건 불안한 일자리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범정

부적으로 국민 캠페인도 계획 중

○ (고령자) 실직고령자의 재취업 촉진,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추진

-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확충, 전직지원장려금 등을 통해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

- 특히 노사정위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 조정 등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을 마련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

○ (자영업자) 폐업(예정)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고,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생계유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

- 보증지원 확대(09년 6.2조→9.5조) 및 만기연장, 정책자금 지원(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5000억→1조 원 지원 등), 경영기법 컨설팅 등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 폐업자의 경우 전업자금 지원(1000억 원), 구직등록·「패키지 취업지원」 등을 통한 취업지원, 직업훈련 확대 및 훈련 시 생계비 지원(1인당 최대 월 100만 원, 연이율 2.4%), 긴급복지지원(1,118억 원, 24,830명), 실업급여 임의가입 추진(고용보험법 국회 제출 09년 12월) 등을 지원

⑩ 자치단체장(기초, 광역) 후보공천 시 일자리 목표를 공약하도록 하고 임기 중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지역별 일자리공시제와 관련 지자체장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전시성 정책 아닌가?
 ⑪ 일자리공시제 제도의 도입의 실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 지역 일자리공시제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 유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노동부에서는 지자체의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체를 기반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통계청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고용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 우수 지자체와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흥희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장애인근로자 분석 자료

① 최근 5년간 장애인 직종별·임금수준별·장애유형별 취업자 수

※동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취업 등록된 현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장애인 전체 취업 업종 및 직종과 상이함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을 통해 취업한

□최근 5년간 직종별 장애인 일반고용 취업자 수

(단위 : 명)

연도별	관리직	경영·재무직	사회서비스직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건설·생산직	농림어업직	기타	합계
2005	23	1,431	461	2,845	6,254	35	-	11,049
2006	76	1,302	475	2,736	5,494	52	7	10,142
2007	75	1,586	581	3,319	6,015	50	38	11,664
2008	59	1,738	567	3,726	5,958	89	4	12,141
2009	177	2,041	851	3,797	5,796	86	2	12,750

□최근 5년간 임금수준별 장애인 일반고용 취업자 수

(단위 : 명)

연도별	69만 이하	70~99만	100~119만	120~149만	150~199만	200만 이상	합계
2005	2,365	5,835	1,625	924	177	123	11,049
2006	797	6,351	1,338	1,005	414	237	10,142
2007	1,000	6,912	1,711	1,242	645	154	11,664
2008	806	7,006	1,940	1,706	536	147	12,141
2009	981	6,657	2,437	1,907	634	134	12,750

□최근 5년간 장애유형(등급)별 장애인 일반고용 취업자 수

(단위 : 명)

연도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경증	중증	중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05(11,049)	1650	2998	400	153	210	475	1459	530	141	2182	551	199	101		
06(10,142)	1274	2728	362	164	185	438	1278	457	151	2097	693	181	134		
07(11,664)	1350	3246	364	202	260	559	1394	626	158	2266	787	247	205		
08(12,141)	1419	3483	448	211	310	534	1353	632	170	2302	792	286	201		
09(12,750)	1502	3403	528	236	396	654	1362	641	148	2588	760	300	232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직종별 장애인 일반고용 취업자 수

(단위 : 명)

직종	2008년	직종	2008년
합계	451,572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636	농림어업숙련근로자	6,153
전문가	8,104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71,836
기술공 및 준전문가	16,54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702
사무종사자	46,071	단순노무종사자	224,541
서비스종사자	37,470	기타	526
판매종사자	17,984		

※ 한국표준직종분류를 사용하여 요청한 분류와 상이함

□최근 5년간 임금수준별 장애인 일반고용 취업자 수

(단위 : 만 명)

구분	합계	69	70~99	100~119	120~149	150~	200이상
취업자 수	451,572	120,422	97,526	56,112	47,547	53,689	76,276

□최근 5년간 장애유형(등급)별 장애인 일반고용 취업자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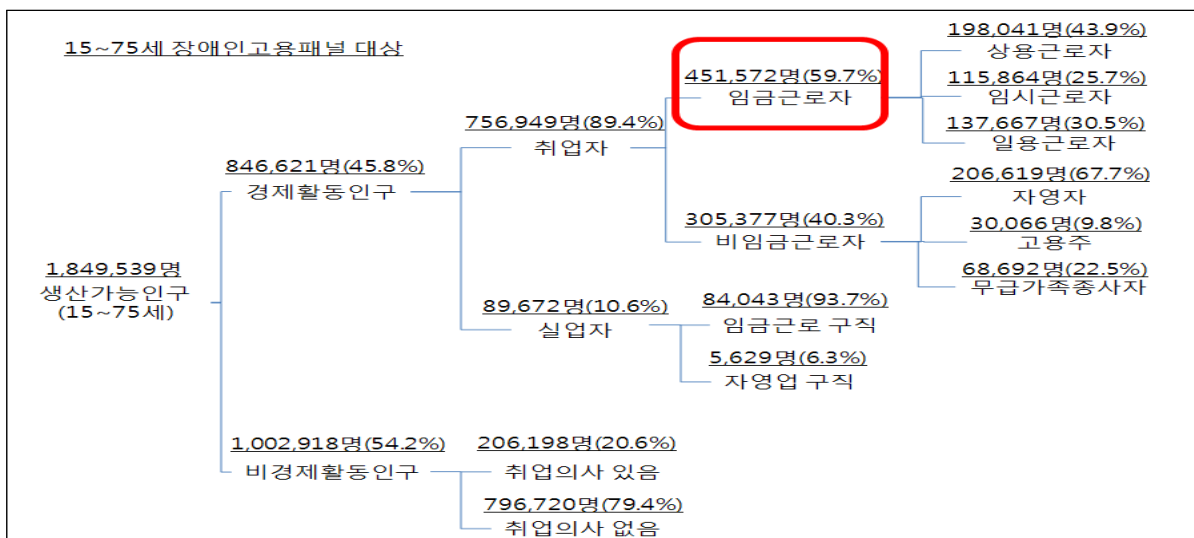
유형	합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121,924	42,169	5,977	11,284	14,316	-	28,675	10,806	8,697
경증	329,648	222,439	9,696	43,229	45,003	3,832			5,449

※ 유의사항

* 동 자료는 2008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동일 등록장애인을 추적조사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패널조사의

특성 상 15~75세, 제주지역 제외, (09년 6월 말 확정·배포)

* 동자료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취업자가 아닌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② 워크넷의 1일 평균 접속자수, 구인인원, 구직인원, 워크넷을 이용한 취업자 수 등을 연도별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이용자 변동 추이

(단위 : 명)

연도	1일 평균 접속자수	구인인원 수	구직인원 수	취업자 수
2004	179,769	841,262	1,510,554	386,154
2005	222,744	866,013	1,686,708	415,022
2006	199,606	915,178	1,872,668	485,285
2007	225,526	1,151,052	2,230,916	593,573
2008	241,576	1,249,837	2,361,669	635,849
2009	269,922	1,456,516	3,256,415	864,755
2010.2	297,079	297,759	528,392	123,476

* 출처 : 워크넷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최영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여성가족부 이관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5개 사업, 총 490억 원(10년도 기준)입니다.

<참고> 사업별 예산내역(여성가족부 이관 사업)
(단위 : 백만 원)

세부 사업 명	10년도 예산
소 계	49,034
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9,705
2.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4,975
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19,800
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400
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2,154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에 있어 방문인력 담당가구 수의 지역별 적정성, 자차 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대책, 임금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가구) 방문인력 1인당 담당가구는 취약계층 가구 수, 방문인력수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1인당 담당가구의 적정화를 위하여 10년부터 평가지표를 1인당 관리가구'에서 1인당 적정방문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량지원) 농어촌 지역에 대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차량 구매를 지원(10년 144대)하고 있으며

-방문인력의 업무상 사고 시 법적 보호를 위하여 4대 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방문인력 인건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 채용기간 등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간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2.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지급이 낮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며, 현 20만 원의 임금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인구 수의 경우 경기는 전체 노인인구의 18.3%, 경북은 8.0%를 차지하나, 정부지원 일자리의 경우 각각 전체 대비 13.9%, 6.9%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 배분은 노인인구 비율이외에도 수요조사 결과,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이나,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지, 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지원단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점진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개선을 기초로 지원단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노인일자리 186천개 중 일정부문에 대해서는 부분적이거나 단가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희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 법인(의료, 사회복지, 사립학교 등)의 자본조달 수단을 확대하여 장기·저리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간 의료채권 제도 도입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할 경우, 비영리 법인의 자금조달 금리가 인하(약 1.3~1.5%)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비영리 병원의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없으며, 제도 도입 시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기	연구용역 제목	기대효과
05.5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의료 효율성 제고
06.8월	의료기관 경영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자금조달비용 감소 경영 유동성 위험 감소 등
08.2월	의료기관 채권제도 및 병원경영지원업 실행방안 연구	"

<의료채권법 관련 현황 및 통계>

□의료채권 발행대상 (2009.12.31 현재)

구분	법인 합계	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합계	1,034	1,858	44	169	373	344	607	20	77	84	140
학교법인	49	148	31	33	11	5	22	8	4	29	5
특수법인	81	145	9	18	8	21	48	4	11	1	25
종교법인	5	5	0	0	1	0	2	1	1	0	0
사회복지법인	92	131	1	1	23	26	65	0	3	0	12
사단법인	54	202	0	0	3	10	142	1	18	0	28
재단법인	85	184	1	21	22	9	92	2	5	3	29
회사법인	44	78	0	0	3	0	64	0	10	0	1
의료법인	624	965	2	96	302	273	172	4	25	51	40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차 설문조사 결과(08.9월) : 병원경영연구소 설문조사

구분	의료채권 발행이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채권 발행이 의료기관 운영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응답수	70개소	10개소
비율(%)	87.5%	12.5%

구분	의료채권 발행의향이 있다	의료채권 발행의향이 없다.
응답수	69개소	11개소
비율(%)	86.3%	13.7%

구분	합계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응답 수	80	5	20	42	13
비율(%)	100%	6.3%	25.0%	52.5%	16.2%

구분	100병상 이하	101~300병상	301~500병상	501~700병상	701~1000병상
응답 수	20	40	11	6	3
비율(%)	25.0%	50.0%	13.8%	7.5%	3.7%

□2차 설문조사 결과(09.2월) : 중소병원협의회 설문조사

- 1) 설문 응답병원 : 62개 병원
- 2) 의료채권 조기발생

구분	합계	1,000병상 이상	999~500 병상	499~300병상	299~100병상	100병상 미만
응답수	13	-	2	-	9	2
비율(%)	100	-	15	-	70	15

3) 의료채권 발행 검토

구분	합계	1,000병상 이상	999~500 병상	499~300병상	299~100병상	100병상 미만
응답수	27	1	6	1	12	7
비율(%)	100	3	22	3	44	25

3) 기타(발행하지 않음, 잘 모름) : 22개

□국가별 의료채권 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미국
채권명	의료채권(채무증권)	사회의료법인채	유가증권
채권성격, 법률	무담보 신용채권(회사채) *의료채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회사채) * 의료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주정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주체	의료기관 개설 비영리법인	사회의료법인 (의료법인중에서 인정)	주정부, 지방정부
발행명의	발행법인명	발행법인명	주정부, 지방정부
투자자 보호 장치	투자설명서작성 제출 및 공시제도 ※일본보다 보수적	공시규제대상지정	국채와 동일
발행실적	없음(법제정 단계)	거의 없음 (07년도 시행)	06년 40조 원(400억 불)

□의료기관 장단기 부채 현황

(단위 : %)

구 분	01	02	03	04	05	06
단기차입(1년 미만)	33.8%	35.2%	36.9%	34.3%	34.2%	36.1%
장기차입(1년 이상)	66.2%	64.8%	63.1%	65.7%	65.8%	63.9%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타인자본 의존 현황

(단위 : %)

구 분	01	02	03	04	05	06	
의료기관	전체병원	60.9	62.9	65.1	65.3	62.9	60.6
	민간병원	61.9	64.5	68.6	67.7	66.5	64.2
제조업	64.6	57.5	55.2	51.0	50.2	49.7	
정보산업	54.1	54.2	53.8	47.8	44.3	43.2	
전문서비스업	60.2	48.8	44.8	50.9	60.9	63.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관련, 복지서비스 공공·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현황, 전망 및 복지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과 주요국 대비 복지서비스업 세부분야 중 우리나라가 취약한 직종과 그 원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9년 현재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고용규모는 99만 8000명으로 전체 산업 취업자 수 2350만

6000명 대비 4.25%입니다.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10.2월 기준 보건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약 102.3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10만 명) 증가

* 타 분야 고용 동향 : 제조업(+4.5만 명), 농림어업(△14.3만 명), 건설업(△8.7만 명) 등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산업 (증감)	22,557	22,856 299	23,151 295	23,433 282	23,577 144	23,506 -72
제조업 (증감)	4,177	4,130 -47	4,057 -73	4,014 -43	3,963 -51	3,836 -127
건설업 (증감)	1,818	1,813 -5	1,833 20	1,849 16	1,812 -37	1,720 -92
보건사회복지업 (증감)	590	639 49	681 42	740 59	842 102	998 156
(비율) B/A*100	2.62	2.80	2.94	3.16	3.57	4.25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낮은 수준입니다.

* 주요국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08년, ILO)

-스웨덴 15.7, 덴마크 18.3, 영국 12.4, 미국 12.5, OECD 9.5, 한국 3.6

* 주요국 대비 복지서비스업 세부분야 중 우리나라가 취약한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 필요

○복지부는 19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2009년 27만 1000명 규모(본예산 기준)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에는 32만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14개, 7만 2000명), 자활사업(6만 5000명), 노인일자리 확충(18만 6000명), 기타(1000명) 등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복지분야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 뷰티산업, U-Health 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과 건강관리 서비스·간병서비스 등의 제도화를 통한 민간시장의 창출 등으로 보건분야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자료(“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참고

2.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대책 중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활성화 및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해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요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09년) 5000명 → (10년) 6000명

○금년에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기존 인건비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시간연장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시간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1인(09년)에서 2인(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시간연장 보육 이용에 대한 부모의 안정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지정(19:30~21:30 반드시 근무)하여 운영하여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시간연장수당 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 10년 4월~12월(9개월)

▷대상지역 : 16개 시도 중, 수요조사를 거쳐 76개 시군구 선정

▷사업내용 : 시간연장보육 근무수당(월 약 30만 원) 지원(총 3,500개반 운영 예정)

○향후 다양한 시간유형 보육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의 유연성 및 시설운영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간연장 보육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사업 세부내역

참고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사업 세부내역		
구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개요 (정의)	- 기준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기준보육시간:07:30~19:30	- 24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4시간:07:30~익일07:30	- 일요일 및 공휴일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부모)	- 시간당 2,400원, 월 60시간 한도 * 소득하위 50%(보육료 100%지원), 소득하위 60%(60% 지원), 소득하위 70%(30% 지원)	- 연령별 월 보육료의 150%지원	- 일 보육료의 150% 지원

구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인건비 지원 기준 (시설)	- 별도 교사 채용, 지정시설로서 19:30 이후 3명 이상의 보육수요가 있는 시설 지원 ▷정부지원 및 직장보육시설 : 월지급액의 80% 지원 ▷간보육시설 : 1인당 100만 원		- 3명이상의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 시 • 휴일근무수당 50천 원(일)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시간연장 보육	시설수	3,910	564	266	1,560	26	1,494	-
	아동수	16,278	2,223	1,096	8,624	48	4,287	-
24시간 보육	시설수	125	23	11	60	-	31	-
	아동수	546	49	69	312	-	116	-
휴일 보육	시설수	152	34	33	53	-	32	-
	아동수	13	-	-	9	-	4	-
계	시설수	4,187	621	310	1,673	26	1,557	-
	아동수	16,837	2,272	1,165	8,945	48	4,407	-

※전국 보육시설 대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비율 : 12.5%

※08.12월 말, 보육통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08예산	09예산	10예산	명세(10기준)
시간연장형교사지원	34,649	36,105	40,763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6,000명

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세부사업내역 (지역선정기준, 규모 등 포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역의 보육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선정기준으로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도에는 국공립보육시설 30개소(국비 27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소규모보육시설 또한 10개소(9억 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에 20인 이내의

소규모로 설치되는 시설로 09년 9개소 설치를 지원하였음(09년 신규사업).

4-1. 체계적인 자활근로 확대의 세부사업 내역 및 10년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활근로 관련 예산은 09년 2,899억 원(추경 제외)에서 10년 3,983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해,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하였으며,(09년 4만 8000명 → 10년 6만 5000명, 3,646억 원)

-취업수급자를 위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45억 원,

* 10년 시범사업 실시 : 부산, 경기, 전북, 인천 4개 지역에서 320명

-근로의욕이 낮은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디딤돌사업' 9억 원,

-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로서 지역자활센터(242개소) 운영비 328억 원입니다.

*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6개소)는 36억 별도예산 편성

4-2. 소규모 자활공동체의 기업화·규모화를 위한 지원내역, 부처 간 협의사항, 협의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자활공동체의 기업화·규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제공 선도기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제공 선도기관 :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투자 및 민간투자를 통해 사회서비스시장을 활성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을 통한 자활사업 기업화>

1. 강원지역 식품생산공동체 네트워크화 및 단일유통망 구축

- 개요
 - 강원 광역자활센터중심으로 강원지역 식품생산공동체 및 사업단 네트워크 형성 및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 강원지역의 로컬푸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에 공급
- 기대효과 :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 달성, 일자리 연평균 20명 증가

2. 청소공동체 프랜차이즈(Inscare 홈케어)를 통해 고품질서비스 제공

- 개요
 - 살균소독, 진드기 제거 등 토탈 홈크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설립·운영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6개 권역 거점 법인 설치 (자활공동체10개 참여)
- 기대효과 : 월매출 2억 원 달성, 일자리 130여 개 창출 가능

○ 자활공동체 중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소규모 자활공동체는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쳐 규모화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련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를 위

해 노동부와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 MOU 체결 준비 중입니다.

4-3. 자활공동체에 위탁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내역과 소관부처, 부처 간 협의사항, 협의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자활공동체에 위탁가능한 정부지원 사업에는 -수급자·차상위 양곡배송사업(복지부), 저소득 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국토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사업(지경부)이 있습니다.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양곡배송사업’에 배송관련 자활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4월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10년 5월부터 해당지역 자활공동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집수리 관련 자활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 부처 간 협의 결과 국토부 사업에 자활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경부 사업에의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4-4. 10년 현재 자활공동체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자활공동체는 10년 현재 1,164개이고, 자활공동체에는 9,4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자활공동체 당 참가인원은 약 8명이나, -주로 사회서비스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중심이며, 돌봄서비스와 청소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2~5명의 영세한 규모입니다.

○ 자활공동체의 업종은 간병(15%), 집수리(18%), 청소(21%), 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7%)으로 대표되는 5대표준화사업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산모도우미·외식·영농·도시락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5-1.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업체 현황, 지원내역(업체, 장애인)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07년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를 통해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

- 지적, 자폐성, 지체, 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따라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분류, 보육도우미(여성) 등의 다양한 일자리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현황-붙임 참조
○아울러 중증장애인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 가산점 30점(중증), 20점(경증) 부여

<2009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중증장애인 참여 현황>

(단위 : 명, %)

장애유형	참여인원(전체)(A)	중증장애인 참여인원(B)	참여비율(B/A)
합계	3,877	2,141	55.3
지체장애	1,751	526	30.0
뇌병변장애	502	410	81.7
지적장애	609	597	98.1
시·청각장애	621	292	47.1
정신장애	179	175	97.8
기타장애	215	141	65.6

참고자료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현황>

연번	사업유형	주요직무	배치기관	장애유형
1	도서관사서보조	도서관도서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	시군구도서관 문화회관	지적장애
2	우체국우편분류	지역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 및 반송처리	우체국	자폐성장애
3	지하철CCTV, 무임권감시단	지하철역 안전사고, 무임승차, 부정무임권 발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CCTV 감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내부장애
4	시각장애인 이동안마센터	개조된 안마차량을 이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이동안마	지역휴게소 터미널 등	시각장애
5	관공서청소도우미	관공서 및 회사 내 계단, 로비, 화장실 등 청소	관공서 공공기관	지적장애
6	지적장애여성 보육도우미	지역사회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로 유아돌봄 및 교육	어린이집	지적장애
7	행복찾기 (문서오타교정)	각종 서적이거나 문서를 교정하는 업무	출판사업체	뇌병변장애
8	영화관입장안내 도우미	영화관 입장안내, floor담당 등의 업무	영화관 문화센터	지적장애
9	청각장애인 시험감독관보조	국가고시 시험감독관 보조를 실시	국가고시 시험장소	청각장애
10	보건소내 클린안마센터운영	전국보건소 내 클린안마센터를 운영	보건소	시각장애

연번	사업유형	주요직무	배치기관	장애유형
11	국·공립, 종합병원 린넨실도우미	병원 내 모든 세탁물 수거와 세탁된 세 탁물의 분류와 분배작업	협약·연계병원	자폐성장애
12	관공서정원관리 도우미	관공서화단을 일정주기로 지속적으로 관리	관공서	정신장애
13	학교급식도우미	초·중·고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세 척, 청소 등의 업무	초·중·고	지체장애
14	공공문화예술기관 매표관리	공공문화예술기관(미술관, 박물관) 대표 관리 및 안내 진행	박물관 미술관	내부장애
15	대공원(동물원 등) 시설관리보조	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에서 동물 관리보조, 안내, 청소 등	놀이공원 동물원	정신장애
16	공공기관 “Happy Call” 안내데스크 도우미	방문객을 맞이하고 해당부서 안내업무	관공서	내부장애

5-2.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0년부터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과제인 장
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전문관리체계는 장애인에게 적합 일자리
발굴·보급,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여자 직업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시도별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 5억(10년), 전문
인력 12명

* 사업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참고자료

<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사업개요

○필요성

-장애인복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일
자리사업을 전문관리하는 체계구축으로 장애인에
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 인적자원 개발, 교
육훈련, 사후관리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함.

○소요예산 : 5억 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사업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인력운영 : 12명(팀장 1명, 전문행정 및 사회
복지담당자 10명, 행정보조 1명)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장애적합형 일자리개발·보급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장애인 및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장애인 적합형 일자리모델 개
발, 장애인행정도우미 및 복지일자리 직무개요서
개발·보급, 특수교육-복지-노동 연계형 일자리
사업 제도화

▷추진실적

① 여성·고령장애인 적합형 아이템공모 및 6
개 유형 선정(10.3.5)

-홀몸어르신안부지킴이, 장애인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요원 등

②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연구보고서발간
(10.3.)

③ 국립특수교육원 MOU체결(10.2.4)

-대전특수교육전환지원센터 등 17개소 대상
사업설명회개최(10.1.28)

○인적자원 개발강화

-10년 행정도우미 및 복지일자리 참여자 소
양·직무교육, 사업전담보조 행정도우미 양성교
육, 16개 시도별 방문교육, 통합정보DB시스템을
통한 인력풀·일자리풀 구축

▷추진실적

① 행정도우미참여자 교육실시(10.2.2~26) : 총
2,407명(참여율 93%), 16개 시도별 방문교육, 만
족도 81점

② 복지일자리참여자 교육예정(10.4.6~4.30)

③ 통합전산망운영 중(~연중)

○사례관리

-사업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일반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184개 연계), 참여자 및 담당자·수행기관에 대한 DB 체계적 관리, 기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모아시스템(노동부 운영)과 연계

▷추진실적

- ① 통합전산망 일모아시스템 연계예정(10.4.5)
- ② 온라인상 ‘장애인일자리카뮤니티’ open·운영(10.2.25) : 150여 명

○전문화·내실화

-사업전담보조 행정도우미 230명 운영으로 지자체 담당자 업무 경감 및 사업 전문성 제고, 정

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 향상,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업무 지원

▷추진실적

- ① 사업전담보조 행정도우미 약 130여 명 운영중(10.2월 현재)

○사업활성화

-일자리창출포럼 개최, 지자체일자리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역담당제운영,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포괄적 지원네트워크 구성·운영

▷추진실적

- ① 전국 6개 권역별 담당자지정(수도권, 경기권, 중부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으로 사업수행기관담당자(232명) 및 참여자(6,620명)를 대상으로 사업관련 상담, 민원안내 등을 제공

□기대효과

구분	09년	10년
신규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일자리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공서 정원관리도우미 외 총 3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단계 ▪ 교육-복지-노동 연계형 일자리 지원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부처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대상 신규 일자리 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장애인,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장애인 등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2건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적합형, 고령장애인적합형 등 생애주기적합형 일자리 ▪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년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 모델*(3개 유형) 현장적용 및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정원관리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국공립병원린넨실도우미 ▪ 특수교육-복지일자리 연계형 신규 일자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년 지원모델개발 실행에 따른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시, 도 선정(총 4개 권역) → 총200개 일자리 신규 창출 → 11년 전국 확대 추진 목표
참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지원체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 사업집행부문 만족도 중 “참여자 교육 훈련의 적절성”영역에서 주민센터도우미, 복지일자리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맞춤형 교육으로 인력개발 및 일반고용 시장으로의 연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소양 교육 및 직무교육 제공으로 사업 종료 이후 민간 분야 유사 직종으로의 원활한 진입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전담보조행정도우미 등 4개 사업 유형 참여자 총 6,620명 교육 지원 목표 ▪ 업무 표준화를 통한 참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2개 유형 이상 직무메뉴얼 개발, 보급

구분	09년	10년
담당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담당자 지원 미흡 -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규 담당자가 다수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업무 과중 호소 * 1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결과 69.9%가 1년 이하 신규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담보조 행정도우미 배치로 담당자 업무경감 및 우수 행정인력 양성 - 10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중 추천에 의해 선발된 우수행정인력 확보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참여자 역량 증진 기회 제공 * 전국 시군구 약 230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 활용도 저조 - 체계적 실적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 기반구축을 통한 체계적 실적관리 및 평가 기능 강화 * 일모아시스템 연동 추진으로 관리체계의 일원화

6-1. 청년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내역, 업무분장, 협력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예산 1,100억 원(국비) 중 360억 원*을 청년사업단 예산으로 편성하고, 전국 145개 대학 등에 사업단 192개소를 설치·지원(3월 말)하고 있습니다.

* 사업효과 : 청년일자리 5,280개 창출 및 이용자 2만 1000명 수혜 예상(예산상)

○또한 청년사업단은 1개 사업 당 1개 청년사업단 운영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사업단 사업수행 조직*으로서 참여기관 내에 사업단장 1명, 중간관리자 1명, 사업관리 인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등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역할 : (사업단장) 사업운영 총괄, (중간관리자) 인력관리·회계 등 실무 총괄, (사업관리 인력) 제공인력 모집, 서비스 품질관리, 대상자 모집 등, (제공인력) 사업단별 제공계획에 따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아울러 청년사업단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운영되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 구성을 권장하고 상호간 제공인력 채용, 경영컨설팅 지원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례 : 대학과 대학, 대학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자율 구성

6-2. 청년사업단의 인센티브 지원기준 및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년사업단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내용의 충실성, 고용창출도 등 객관적인 지표

를 통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청년사업단에 대해서는 연말 기관 포상, 차년도 예산 증액 지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연2회) 및 보건복지부(연1회) 성과평가

7-1.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 마케팅 지원내역과 2010년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국민의료비 추가 부담 없이 의료기관의 수익을 증대하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미흡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09년부터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 04년 400억 불에서 12년 1,000억 불 예상(McKinsey&Company)

(유치환자 수, 07) : 태국 154만 명, 싱가포르 46만 명, 인도 27만 명 ⇔ 우리나라 5.5만 명(09)

○09년에는 전략국가 대상 로드쇼(카자흐스탄 등 6개국, 7회), CNN, Google 등 글로벌 매체 활용한 한국의료 홍보와 더불어, 장기적인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한국의료체험행사(10회, 114명), 외국의료인연수(7개국 37명) 등을 실시하였고 한국의료 대표브랜드(Medical Korea) 및 대표홈페이지(medicalkorea.co.kr)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국가인 중동(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국가 등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및 의료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부간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년에는 09년 사업경험과 유치실적을 토대로 전략국가별로 차별화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유치채널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 한국 의료대표상품 개발계획 및 현재까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핵심역량 구축과 차별화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신규, 46억 원).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을 공모(10.2.16~3.12)하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4개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으며,

-학계·전문가·협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차(서면심의)·2차(발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5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10.3.31) 하였습니다.

※부산(성형/피부), 대구(모발이식), 서울강남(성형/피부), 전남(관절), 전북(로봇)

-향후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에게 우리나라 의료기관 및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료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대표의료기술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2009년도에 공모를 거쳐 66개 의료기관 65개 분야 163개 기술을 대상으로 한 대표의료기술 안내책자를 제작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나라의 대표기술이 망라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 대표의료기술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0.3.19, 한국국제의료협회 소속 의

료기관)

7-3. 2009년까지 해외환자의 국가별 유치내역과 2010년 목표 환자 수의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의료법 27조의2 제3항)

-09.5월부터 해외환자 유치활동이 허용되어, 사업시행 첫해인 09년도 사업실적(환자 국적, 진료과목, 주상병명 등 포함)을 제출받고 있으며 4월 중 최종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9.12.31일 기준 유치 등록기관 1,547개소(의료기관 1,453개소, 유치기관 9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실적 보고(3.2~3.31)

※(참고) 09.1~11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55,324명(등록기관 616개소 응답)

(법률) 등록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시행규칙) 보고내용은 외국인환자 국적, 성별,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외래 방문일수

○10년도 해외환자유치 목표 수는 사업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09년도 목표(5만 명) 대비 40%가 증가한 수치로 목표(7만 명)를 정했으며,

-09년 최종 사업실적을 토대로 10년 목표에 대한 상향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8-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의 활용현황과 성과평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08.6)된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

연도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평균휴직 일수	육아휴직 사용률*
	인 원	지급액	합 계	여 성	남 성	지급액		
2006	48,972	90,886	13,670	13,440	230	34,521	여 216일 남 191일	27.4
2007	58,368	132,412	21,185	20,875	310	60,989	여 221일 남 184일	35.8

연도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평균휴직 일수	육아휴직 사용률*
	인 원	지급액	합 계	여 성	남 성	지급액		
2008	68,526	166,631	29,145	28,790	355	98,431	여 246일 남 202일	42.0
2009	70,558	178,477	35,400	34,898	502	139,724	여 276일 남 215일	49.5

* 육아휴직사용률 = 육아휴직여성사용자/산전후휴가 사용자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수준(월 50만 원)이 낮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대체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2. 주요OECD 국가의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OECD 주요국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수당)가 휴직기간동안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수준이므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습니다.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국가	기간	연장	최대 지급액	임금대비 (%)	사용율
덴마크	32주	8주 무급	DKR 3115/주	90%	
프랑스	첫째 6개월 둘째이상 36개월		가정양육수당 EUR552/월		여성 : 66% 남성 : 0.5%
독일	36개월			67%	
스웨덴	480일	부성할당제 (60일)		80%(390일)/ 0.6%(90일)	여성 : 74% 남성 : 42%
일본	12개월			50%	여성 : 72% 남성 : 0.5%

8-3. 남성에 대한 강제 육아휴직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급여수준이 높아지면 그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맞벌이의 경우 부인 1년, 남편 1년으로 총 2년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의 남성할당제가 있는 국가는 스웨덴(60일)과 노르웨이(6주)가 있습니다.

9.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등 복지관련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견해와 분석내용 및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수립·추진한 정책수단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기인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보건,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통계청) : 8.9% (05) → 14.3%(18) → 20.8%(26)

* 국민의료비 증가율(OECD Health Data 2009) : 19.8%(01) → 8.4%(04) → 12.0%(07)

○실제 보건복지 분야는 최근 일자리 창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 취업자 대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추가 일자리 창출 잠재력도 매우 높은 산업분야입니다.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 (06) 2.9 → (07) 3.2 → (08) 3.6 → (09) 4.2

* 주요국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08년, ILO)

-스웨덴 15.7, 덴마크 18.3, 영국 12.4, 미국 12.5, OECD 9.5, 한국 3.6

<1인당 GDP(PPP \$) 26천달러 시기의 보건·사회복지분야 고용비율 비교>

(단위 : ppp \$,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해당연도	2007	2002	1994	2001	2000	2000
GDP	26,574	26,805	26,686	26,859	26,074	27,761
고용비율	3.16	7.14	9.23	9.17	10.47	16.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3월)

* 1인당 GDP가 유사한 시점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 한국(07) 8.07%, 일본(02) 18.7%, 미국(94) 13.9%, 독일(01) 27.7%, 영국(00) 19.7%, 스웨덴(00) 29.4%

○특히 보건복지분야는 타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창출에 효과적으로 수요 증대에 따른 취업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큽니다.

* 취업유발계수 : 10억 원 수요 발생 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사회복지 32.7, 보건의료 16.7, 전 산업 13.9, 제조업 9.2 (07년)

○이에 복지부는 서민생활 보호와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노인장기요양장제도의 도입, 보육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 등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공공 서비스를 제도화·확충하여 복지서비스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09.12월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 20만 7000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자리 15만 7000명(09.5월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7만 2000명

－향후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서비스의 제도화(간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등),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산업에 대한 투자(뷰티산업, U-Health 산업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입니다.